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556-01

www.humanrights.go.kr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25주년,

우리사회 모든 아동의 인권상황과 그 실천적 조치를 위한 정책방향

일시

2014. 11. 20(목) 9:30 - 16:30

장소

고려대학교 국제관 국제회의실 214호



국가인권위원회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개회사

an opening address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병철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로 채택 25주년을 맞이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단순히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이익의 최우선 고려의 원칙(협약 제3조 제1항), 가능한 최대한의 아동의 생존과 발달 보장(협약 제6조 제2항), 이를 위해 모든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협약 제4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아동의 현실은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3년 한국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60.3점(100점 기준)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GDP 기준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이지만 삶의 질은 최하위를 면치 못하는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현실이 아이들의 삶 속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오늘, 유엔이 정한 '세계 어린이 날'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 모든 아동의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실천적 조치를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아동, 특히

무국적·신분증명 없는 이주아동, 외국인보호시설 보호아동 및 중도입국 이주아동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고,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기준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법률과 제도적 개선사항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토론회는 92년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마음으로 우리사회 모든 아동의 인권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도와 규정이라는 형식적인 논점에서 벗어나 어린이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바꾸고 어떤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기대합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이며 ‘새로운 시대의 새 인물’이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따라서 저는 방정환 선생님의 선구자적 말씀처럼 어린이의 시각에서 어린이의 마음으로 세상이 바뀌어 질 때 우리 사회는 더욱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가 우리 미래 세대들이 더 아름답고 행복한 사회에서 살 수 있는 시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금번 토론회를 계기로 더욱 새롭게 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11. 20.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 병 철**

축 사

Congratulatory address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자스민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주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열정으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5년 전 유엔이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한 날이기에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국가인권위원회와 고려대학교 국제인권센터, 그리고 사단법인 휴먼아시아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최초로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보고관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양희 교수님께서 기조연설자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나라이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위원회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우리 정부에 이주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권고하고 있을 정도로 이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0년 펴낸 보고서를 토대로 현재 전국적으로 1만 7000명의 미등록 이주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자신이 태어나 자란 곳에서 교육을 받고, 치료 받고, 보호를 받으며 꿈을 키워 건강한 어른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는 한국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고 국격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은 2010년 한나라당 김동성의원님을 비롯한 42명의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년이 지난 지금 다시 법안을 20여개의 시민 단체분들과 머리를 맞대 재정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현재 발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청소년과 아동들을 위한 정책에 주력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사회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주아동들이 우리 아이들과 다를 바 없는 한국의 미래 자산이 될 소중한 존재임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4개 섹션의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며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꼭 챙겨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11. 20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자스민**

축 사

Congratulatory address

내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장 오정훈입니다. 오늘 이주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본 회의를 공동주최해주신 국가인권위원회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인권센터, 뛰어난 학계 인사분들, 활동가 여러 분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25주년을 기념하여 우리사회 아동의 인권상황과 그 실천적 조치를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991년도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미등록 또는 비합법적 체류자격으로 인하여 미등록을 포함한 이주아동이 출생과 더불어 건강권, 학습권 등 각종 기본권 영역에서의 소외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2년 통계로 6000명 이상, 그리고 통계에 잡히지 않은 약 1만 여명의 미등록 이주아동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가장 약하고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이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는 현실은 인권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모습이고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2013년에 들어서야 서울 YMCA, 세이브더칠드런, 지구촌 사랑나눔, 공익인권재단 공감 등 16개 아동, 이주민단체가 ‘이주아동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관련법 제정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법안 제정에 신중한 입장이지만 국내 체류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우리 위원회의 정책권고 이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제도 등의 조속한 국내 이행을 논의하기 위한 심도 있는 정책토론회의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이주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관련 아동의 인권사항에 대한 실태를 확인 및 제도적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아동인권 전문가들의 토론 참여를 통해 미래지향적 이주아동인권정책 청사진을 도출하여 정책마련을 위한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회의 준비를 위해 노력해준 휴먼아시아와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인권센터 스태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아동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아동인권의 중요성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 11. 20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오 정 훈**

축 사

Congratulatory address

안녕하십니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 변주선입니다.

오늘은 지구촌 모든 아동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국제사회가 만장일치로 유엔아동 권리협약을 채택한 지 25주년 되는 날입니다. 모든 아동들이 안전하고, 행복하며 충족된 환경에서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총망라해 놓은 것이 유엔아동권리협약입니다. 동 협약은 다른 국제법들이 명시하고 있는 아동들의 권리뿐 아니라, 아동의 특수성과 필요에 맞춘 기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협약 채택 25주년 되는 의미 있는 오늘, 국내 체류 이주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이주아동 정책토론회」가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본 행사 개최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위원장님과 축사를 해주신 고려대학교 김병철 총장님, 국제적으로 바쁜 일정중에도 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해 기조강연으로 함께해 주시는 이양희 유엔미안마인권특별보조관님 그리고 발제와 토론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 목소리 높여 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내외귀빈 여러분,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은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권은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입니다. 즉,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당연히 인정된 기본적인 권리인 것 입니다. 하지만 이주아동이 처한 현실은 모든 아동들이 누리는 권리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 몽골 출신의 미등록 아동의 사연을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싸움을 말리다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돕던 중 미등록 이주아동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단 5일 만에 보호자도 없이 강제퇴거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이주아동들은 신분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생활에서 하루 수십 번씩 장벽에 부딪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모든 아동은 아동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권리를 지닌 주체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아동의 인간답게 살 권리는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을 권리도 가집니다. 이에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는 비준한 당사국 자국의 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아동에 대해서 ‘부모의 출신 및 신분에 관계없이, 출생신고, 보육시설 및 의료시설 이용, 사회보장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자리가 뜻 깊습니다. 많은 아동인권 전문가들과 사회 곳곳에서 우리 아동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우리 이주아동 인권증진을 위한 실제적인 정책 청사진을 도출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중요한 자리에서 함께 노력하시고 모든 아동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관심과 노력을 저 또한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 11. 20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 **변 주 선**



프로그램
Program

●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25주년,
우리사회 모든 아동의 인권상황과 그 실천적
조치를 위한 정책방향

- 일시 : 2014. 11. 20.(목) 09:30~16:30
- 장소 : 고려대학교 국제관 국제회의실 214호

시 간	일 정	프로그램
09:30~09:55	등록 및 접수	
09:55~10:00	행사안내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과장)
10:00~10:05	개회사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10:05~10:20	축 사	이자스민 (새누리당 국회의원) 오정훈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원장) 변주선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회장)
10:20~10:35	기조연설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25주년 - 아동의 권리가 과연 얼마만큼 신장되었는가? 이양희 (前 UN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UN미얀마인권 특별보고관)
10:35~10:45	기념촬영	참석자 기념촬영
10:45~12:00	세션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사회: 박경서 (前 대한민국 인권대사) 발표: 황옥경 (한국아동권리학회 회장) 토론: 이호균 (아동행복포럼 고문) 김경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기획조정본부장)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2:00~13:25	휴식 및 오찬	
13:25~13:30	동영상	국내 체류 이주아동의 인권

시 간	일 정	프로그램
13:30~14:20	세션 2	무국적 아동의 신분증명 보장을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 모색 사회: 안성울 (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과장) 발표: 채현영 (UNHCR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 토론: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14:20~15:10	세션 3	중도입국 이주아동의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사회: 안석모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장) 발표: 성상환 (서울대학교 교수) 토론: 강은이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 소장) 이혜진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전임연구원)
15:10~15:20	휴 식	
15:20~16:10	세션 4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구금적 대안 (Alternative to detention)의 모색과 적용 사회: 서창록 (고려대학교 교수) 발표: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토론: 이하룡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센터장) 정병수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
16:10~16:30	종합토론 및 폐회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국내 이행전략을 위한 종합 토론 (참석자 질의 및 의견개진) 사회: 서창록 (고려대학교 교수) 패널: 이발래 이주인권팀장 (국가인권위원회) 김민경 사무관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및 발표자 등



목 차

Contents

●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25주년,
우리사회 모든 아동의 인권상황과 그 실천적
조치를 위한 정책방향

◆ 기조연설

-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25주년
- 아동의 권리가 과연 얼마만큼 신장되었는가? 1
이양희 (前 UN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UN미얀마인권 특별보고관)

◆ 세션 1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추진상황과 향후과제 13
발표: 황옥경 (한국아동권리학회 회장)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토론문 37
토론: 이호균 (아동행복포럼 고문) / 39
김경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기획조정본부장) / 45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51

◆ 세션 2

- 국제법,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무국적 아동의 확인, 등록 및 기록 71
발표: 채현영 (UNHCR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
- 무국적 아동의 신분증명 보장을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 모색 토론문 83
토론: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 / 85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이경숙 / 89

◆ 세션 3

- **중도입국 이주아동의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동반·중도입국 자녀의 교육지원 수요 분석을 중심으로 -** 93
 발표: **성상환** (서울대학교 교수)

- **중도입국 이주아동의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문** 107
 토론: **강은이**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 소장) / 109
이혜진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전임연구원) / 115

◆ 세션 4

-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구금적 대안의 모색과 적용** 119
 발표: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구금적 대안(Alternative to detention)의 모색과 적용 토론문** 135
 토론: **이하룡**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센터장) / 137
정병수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 / 141

- **붙임자료** 145
 1. 세계인권선언 / 147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154
 3.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국문, 영문) / 176
 4. 아동복지법 / 204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250
 6.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 277
 - 6-1. 미등록 이주아동의 중학교 과정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 / 277
 - 6-2.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권고 / 281
 - 6-3.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접근권 개선방안 권고 / 295



■ 기초연설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25주년

- 아동의 권리가 과연 얼마만큼 신장되었는가?

이양희

(前 UN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UN미얀마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25주년

- 아동의 권리가 과연 얼마만큼 신장되었는가?

| 이양희 (前 UN아동권리위원회 위원장, UN미안마인권 특별보고관)

최근 우리사회를 매우 슬프게 한 지표가 하나 발표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11월 5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3년 한국 아동종합 실태조사>에서 우리나라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OECD국가 중 꼴찌를 했다는 발표를 보고 가슴이 싸늘해졌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대한민국보다 한 단계 윗 순위인 루마니아와의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도 놀라운 결과였다. 우리나라 아동들은 100점 만점 기준에서 60.3점을 기록하였고, 루마니아는 76.6점을 기록하였다. OECD국가 가운데 아동의 삶의 만족도가 우리나라 경제력과 비교했을 때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컸다. 여기서 삶의 만족도는 아동이 자신의 삶을 어떤 수준으로 인지하는지에 대해 국제지표를 사용해 측정한 결과로, 우리나라의 경우 학업스트레스, 학교폭력, 그리고 인터넷 중독 등이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이번 아동 종합실태조사에 처음 도입된 아동결핍지수도 우리나라 아동들이 OECD국가 평균을 훨씬 웃도는 비율인 54.8%로 나타났다. ‘아동결핍’¹⁾이라는 것은 물질적/금전적 결핍 이외에 아동의 성장에 필요한 사회적 기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정의된다. 대부분의 나라가 아동결핍지수가 20%대였고, 아이슬랜드의 경우 1%인데 비하면, 우리나라가 기록한 수치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이번 보고서 내 주목할 만한 것 중 하나로 우리나라 아동의 8%가 먹을 것이 떨어졌는데 돈이 없는 상태인 식품 빈곤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빈곤아동의 경우 식품빈곤의 비율은 42.2%로 나타났다.

사실 오늘은 참으로 뜻 깊은 날이다. 발표의 시작을 이렇게 어렵게 시작할 수 밖에 없

1) 아동빈곤은 물질적 빈곤과 금전적 빈곤의 개념을 넘어서 아동의 원만한 성장과 안녕 (well-being)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적, 사회적 요건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Unicef, 2007).

는 현실이 참 안타깝다. 오늘은 세계 아동의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25년전 1989년 11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되었고, 그 이듬해 국제인권법으로 효력이 발생되었다. 이로써 아동을 복지의 대상이나 부모 또는 후견인의 소유물이 아닌 권리를 지닌 자, 즉 권리의 주체자로서 자리매김 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아동권리협약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아동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그리고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아우르고 있으며 학대, 착취, 법적 논쟁과 관련하여 보호하는 특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동 협약에 비준한 당사국이 아동에게 보호와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해 주었다. 특히 오늘 세미나와 관련하여 아동권리협약 제 2조에서 세계인권선언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비차별 원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천명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 2 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2 조

제1항 협약의 당사국(이하 '당사국'이라 한다)은 아동이나 그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민족적·인종적·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여부, 태생, 신분 등의 차별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아동에게 이를 보장해야 한다.

제2항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나 후견인 또는 다른 가족의 신분과 행동, 의견이나 신념을 이유로 차별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다른 인권규범과 구분되는 특징은 다음의 내용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첫째, 아동은 능력이 계속 변화한다는 점 (Evolving capacity: Article 5)이다. 둘째, 아동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과 권리이다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rticle 3). 셋째는 아동이 의견을 표명할 권리 이다 (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 Article 12). 단순히 의견을 표명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사결정과정에서

가능한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해야 한다.

다음은 아동권리 협약 채택 이후 25년동안의 국제적인 성과에 대해 간략하게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25주년이 갖는 의미

아동권리 협약은 아동권리의 주요한 규범이자 기준이다. 또한 동 협약은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역량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Lee, 2009). 지난 25년동안의 성과를 보면, 2014년 11월 기준 아동권리협약이 비준국이 194개국이 되었고, 두 개의 선택의정서 비준국도 아동의 무력분쟁 참여에 관한 선택의정서(OPAC)가 158개국, 아동의 매매 매춘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OPSC)가 169개국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21세기 들어 가장 주목할만한 성과로는 제 3선택의정서, 즉 개인통보제도의 탄생과 채택을 들 수 있으며, 현재 14개국이 비준을 한 상태이다.²⁾

1993년, 아동권리위원회가 첫 국가 보고서 심의를 시작한 이래로 당사국들의 아동권리 상황을 감독하고 권고하는 역할을 해왔다. 또한 위원회는 비준국이 협약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조항의 해석인 일반논평(General Comment)을 채택하는데, 현재 18개의 일반논평이 나왔다. 최근 유엔 조약기구 역사상 처음으로 CEDAW와 아동권리위원회가 유해한 관행(Harmful Practices)에 대해 공동일반논평을 낸 것도 의미 있는 변화이다. 약 4년이 넘게 시간이 흐르면서 동 일반논평이 채택이 되었는데, 국제사회에서 관심과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넓은 범주에서 성과를 살펴보면, 아동권리협약 채택 이후 국제사회에서 많은 당사국들이 헌법을 개정하면서 아동의 권리를 포함하였고, 법률개정 또는 입법을 통해 당사국들의 법이 아동권리협약과 조화를 이루었다. 아동권리협약 이후 첫 20년 가까이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지만, 최근 4-5년 간에는 약간의 퇴보와 오히려 아동들을 혹독한 처우에 대상으로 변화하는 현상들도 볼 수 있다. 세계 곳곳에서 아동들이 폭력으로 고통스러워

2) 개인통보제도는 협약이 채택되는 과정에서부터 논의가 있었으나, 그 당시 사회적 합의뿐 아니라 위원회 내에서도 필요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었다. 그러던 중 필자가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중에 국제사회에 논의를 이끌어내고 마침내 위원회의 합의와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 인권이사회 결의안으로 채택되었다.

하고 있으며, 아동 성착취와 노동착취 역시 근절되지 않고 있다. 또한 아동은 무력 분쟁 상황 속에서 직접적인 표적이 되면서 희생되거나 또는 징병되어 분쟁에 투입되기도 한다. 그리고 많은 범죄사건 경우에 아동들이 피해자보다 가해자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다(Lee, 2014).

우리나라의 변화

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우리나라의 큰 변화 중 몇 가지를 꼽는다면 첫째로, 세 가지의 유보조항 중 하나가 철회된 점을 들 수 있다. 2007년 민법개정으로 아동의 부모면접 교섭권에 대한 유보조항이 철회되었으며 입양 허가제 관련하여서는 헤이그 국제아동양양협약에 서명으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면서 느린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동의 항고권(제 40조 2-b-v)에 관한 유보조항이 남아있음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둘째, 2004년부터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설립되었고, 물론 그 동안 몇 년간의 공백은 있었지만, 부처 간 아동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있었다는 것은 큰 성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 과가 신설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매년 보건복지부가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은 변화로 들 수 있다. 그러나 독립적인 모니터링기구가 아직 설립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모니터링 센터에서 모니터링 사업을 실시 해왔는데, 우리나라 2차 및 3.4차 보고서를 살펴보면, 아동권리 위원회는 독립적인 아동권리 모니터링 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Child Commissioner 신설 또는 아동옴브즈퍼슨 제도를 설립을 권고하고 있다.

현 주소

국제사회의 기준과 규범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아동들의 삶은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까? 계속 반복되는 아동에게 행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폭력, 대처하는 우리들의 방법/자세에 주목하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나오는 반복되는 권고사항과

UPR에서 나온 권고사항에 그 실마리가 있을 것이다. 황옥경 교수께서 우리나라의 아동 권리 이행사항에 대한 발제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다. 그러나 반드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의 내용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아동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아동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유엔권리헌장, 아동권리협약,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을 충분히 실천한다면 아동의 삶은 당연히 나아지고 아동의 권리 또한 더욱 더 신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리의 과제: Good Governance와 Social Capital

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공공부문, 민간부문, 그리고 다양한 시민사회들이 자발적으로 상호의존하고 협력하는 체계가 형성되었고 실천하고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바로 이것이 거버넌스 Governance이며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굿 거버넌스 Good Governance가 필수로 선행되어야 한다(이양희, 2012).

그렇다면 거버넌스는 무엇인가? 거버넌스는 광범위하며 국가와 국민들과의 모든 상호 작용 과정을 의미한다. 공공부분을 넘어서 민간과 사회적 부분을 모두를 포괄하여 각 행위자들이 공익과 정책을 위한 의사결정과정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 몇 개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거버넌스는 의사결정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문제해결에 필요한 자원을 활용하고 합의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면서 힘의 관계 (power relationship)가 변하여 이해 당사자들의 권위가 배분되는 과정을 뜻한다. 거버넌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이 자리에서 다 할 수는 없으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

3) 이 내용은 2012년 아동권리 포럼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굿거버넌스 모색〉 주제로 발표했던 내용의 일부이다.

1. **Responsiveness and transparency:**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상황에 시의 적절한 반응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아동권리 시각에서 국가의 모든 행동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필요하다.
2. **Responsibility:** 국가는 국민들의 인권 보장, 보호, 그리고 증진의 책임과 의무가 우선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는데 다양한 이행자들(duty-bearers) 포함된다.
3. **Accountability:** 그 어떠한 법적·제도적 기반도 제대로 된 이행 없이는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하므로 국가의 책무성에 대한 분석이 필수이다. 의무 이행자들이 제대로 의무를 다 하지 못했을 때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 힘의 분배가 어떻게 그 사회에서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정확한 분석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전시행정적 또는 포퓰리즘적인 정책과 입법에 대한 감시와 엄격한 평가는 당연하다. 더 나아가 필요한 입법이나 제도의 지연/부재 또한 의무 이행자들의 책무성에 포함된다.
4.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모든 정책과 제도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할 때 아동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아동권리 협약의 4개의 일반원칙 준수가 필요하다.
5. **Equity, inclusiveness, and participation:** 사회의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사회가 앞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기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아동들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시키는 것은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고 나아가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을 가능케 하는 지표이다.

굿 거버넌스를 잘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게 연결해주는 도구 중 하나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다. OECD(2007)는 사회적 자본을 집단 내 또는 집단 간에 협력을 촉진하는 유대관계(networks)로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사회에서 공유된 규범(Norms), 가치(Values), 그리고 이해(Understandings)가 수반된다고 하였다. 즉, 실제 집단 또는 개인 간 연결고리가 된다. 규범이나 이해의 경우 예를 들어 성인이 아동을 해치는 행동을 했을 때 아동을 보호해야 하는 규범이 위반되면서 규범이나 이해가 드러나는 것과 같이, 유대관계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 가치의 경우, 사회가 그들

의 가치가 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사람의 안전과 보안에 대해 존중하는 가치는 모든 사회적 집단에서 핵심이 되는 필수요소이다. 즉, 사회적 자본을 통해 사람들을 신뢰로 연결시켜주며 개인적인 자신감향상과 사회와의 소속감을 느끼게 해준다. Schaefer-McDaniel (2004) 또한 바람직한 사회형성을 위해서 첫째로 사회적 유대관계 또는 상호작용, 그리고 친목 (sociability); 둘째로 신뢰와 서로 혜택을 주고받는 관계 (reciprocity); 셋째로 소속감 또는 지역 애착 (place attachment)을 강조했다. Social capital 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망과 유대관계강화, 사회에 대한 신뢰와 소속감증대에 대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아동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맺는 말

인권과 거버넌스는 상호보완적으로 강화해주는 관계이므로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자, 소수의 의견을 고려할 것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일련의 가치, 수행의 원칙, 그리고 굿 거버넌스가 서로 작동해야 하는 영역에 대해서 명확한 제시가 있고, 여기에 입법의 틀, 정책관련 프로그램, 예산분배, 그밖에 다른 조치들의 개발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구성원 간의 아동권리협약이라는 공동의 규범, 가치, 이해를 기반으로 한 Social Capital이 필요할 것이다. 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사람이 서로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인간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 핵심적인 공동의 규범, 가치, 이해로 기능하며 사람들을 신뢰로 연결시켜주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가능케 하는 중추(linchpin)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끝으로 Eleanor Roosevelt가 세계인권선언문 채택 10주년이 되던 때 연설 중 일부를 인용하면서 발제를 마치고자 한다.

“그렇다면, 보편적인 인권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작은 곳, 그리고 아주 가까운 곳에서부터입니다. - 아주 가깝고, 아주 작아서, 그곳은 어떤 세계지도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곳들은 각각의 사람들의 세계입니다. 그가 사는 곳의 이웃, 그가 다니고 있는 학교나 대학교, 그가 일하는 공장, 농장 또는 사무실들. 그러한 장소에서 모든 남자, 여자, 그리고 아이들은, 차별이 없는 동등한 정의, 동등한 기회, 동등한 존엄성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권리가 그들이 있는 곳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어디에서도 거의 의미를 갖지 못 할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그들을 보장하기 위한 단결된 시민운동이 없다면, 우리는 보다 큰 세계에서의 발전이 헛되어 보일 것입니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법. (2014) 법률 12500호 (2014년 3월 18일 시행).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2089&efYd=20140318#0000>에서 검색.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정책보고서 2013-92).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06294&page=1에서 검색.
- 대한민국 헌법. (1987) 헌법 제10호 (1988년 2월 25일 시행)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efYd=19880225#0000>에서 검색.
- 이양희, 김상원. (2013) 국제아동인권규범의 이행: 아동권리협약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25(2), 311-332.
- 이양희. (20121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굿거버넌스 모색. 2012 아동권리포럼, 서울.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http://www.ohchr.org/EN/HRBodies/CRC/Pages/CRCIndex.aspx>
-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2012).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public of Korea, CRC/C/KOR/CO/3-4. Geneva: United Nations.
- Lee, Y. (2009). *Participation and compliance: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UNICEF, *The State of the World's Children: Special edition* (pp. 50-51). New York: UNICEF.
- Lee, Y. (2010). Introduction: Celebrating important milestones for children and their rights. *International Journal of Children's Rights*, 18(4), 479-482.
- Lee, Y. (2014, July). *Realization of children's Rights: Achievement and challenges*. Keynote presented at LAWASIA 5th Family Law & Children's Rights Conference. Sapporo, Japan.
- Schaefer-McDaniel, N.J. (2004). Conceptualizing social capital among young people: Towards a new theory, *Children, Youth, and Environments*, 14(1), 140-150.

OECD (2007). Human Capital: How what you know shapes your life. Retrieved from <http://www.oecd.org/insights/humancapitalhowwhatyouknowshapesyourlife.htm>.

UNICEF. (2007). *Child poverty in perspective: An overview of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Innocenti Research Center Report Card No. 7. Florence: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er

UNICEF. (2012). *Measuring child poverty: New league tables of child poverty in the world's rich countries*.

United Nations (1948).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Retrieved from <http://www.un.org/en/documents/udh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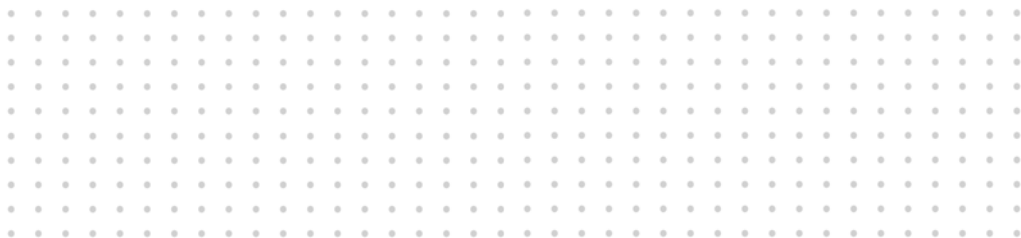


■ 세션 1: 발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추진상황과 향후과제

황옥경
(한국아동권리학회 회장)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추진상황과 향후과제



Ⅰ 황옥경 (한국아동권리학회 회장)

올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하 협약이라 칭함)이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지 25주년 되는 해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비준한 지는 23년째로 그동안 정부는 세 차례에 걸쳐 이행상황에 대하여 4차보고서까지 제출하였다. 2017년 6월 19일까지 제 5, 6차 통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중간평가를 해 볼 수 있는 오늘의 논의는 의미있다.

본 발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의 1차부터 3·4차 통합보고서까지 반복권고 내용이 무엇인지 등의 권고내용을 분석하고 권고의 의미와 한계를 먼저 확인하였다. 또한 우리정부의 이행수준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1차에서부터 3,4차 통합보고서에 이르기까지 나타난 위원회 권고의 변화 추이를 분석·제시하였고 의미를 탐색하였다. 권고에 더 이상포함하지 않는 것과 3·4차 권고에 새롭게 등장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분석과정은 아동관련한 시대별 이슈와 과제를 확인함과 동시에 미래세대 우리사회가 아동양육에 있어서 완수해야 할 책임이 어떠한 것인지를 국제적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여기서 제시하는 이슈들은 협약 이행과 관련한 통계와 분석을 기반으로 그동안 지적되어 왔던 사안들에 대하여 발제자의 인식을 대입하거나 재정리하는 다소 거친 접근을 취하여 얻어진 것이다. 본 발제는 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중심으로 한 협약 이행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아동정책 현안에 대한 논의를 모두 포괄하지 않는다.

1. 위원회의 권고

1) 위원회의 권고

- 위원회의 권고
 - 1996년 1차 권고 32개항
 - 2003년 2차권고 63개항
 - 2011년 3, 4차 권고 89개항

2. 협약 이행 사항

1) 국제협약 비준과 유보조항 철회

- 국제협약의 비준
 - 아동무력분쟁에 관한 선택의정서와 아동매매, 매춘, 아동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선택의정서(2004년 9월 24일)
 - 장애인권리협약(2008년 12월)
 - 여성에 대한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2006년 10월)를 비준

- 유보조항 철회
 - 1991년 11월 20일 협약비준시 9조3항(자녀의 부모면접교섭권), 21조a(입양허가제), 40조2b(v)(아동의 상소권 보장)의 3개 조항을 유보.
 - 유보조항 철회 :
 - 민법의 개정으로 2008년 9조3항의 유보는 철회
 - 21조a(입양허가제)는 헤이그협약 서명과 입양특례법의 개정으로 유보철회

2) 법과 정책의 주요 개편사항

- 법과 정책의 주요 개편사항
 - 법개정 및 제정 :

- 입양특례법(2011년 8월 개정),
 - 민법(2011년 9월 개정),
 - 초, 중등교육법시행령(2011년 3월 개정),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2011년 제정),
 - 가사소송법(2010년 3월 개정),
 - 장애아동복지지원법(2011년 제정), 아동복지법(2011년 개정),
 - 다문화가족지원법(2011년 개정)의 제정
 - 아동복지법(2013.)
 - 아동학대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법(2014.9.29시행) 등
- 정책수립 및 실행
- 2012년 제 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수립
 - 2014년 아동기본계획 수립(예정)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재구성 및 운영재개
 -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및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등

3) 국가인권기본계획에 나타난 협약 이행 사항

-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이행상황 평가는 국가인권계획 수립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기보다 시행하고 있는 아동인권관련 정책을 평가한다. 2013년 인권기본계획에 대한 점검에서 조석훈과 황옥경(2014)은 교육과 아동·청소년분야의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 국민점검단에 의해 국가인권정책 중 아동청소년, 교육보육관련 분야에 대한 인권정책 점검 평가
 - 2013년 법무부 인권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아동권리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보완되어야 할 사안을 정리하였다. 정서·행동발달 장애 등 기초학력미달 학생 지원 방안이 시행되고 있으나 전문적 지원이 부족하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교원간의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서 학부모와 학습자의 신뢰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음.

- 교·사대생 다문화강좌개설 및 현직 교원 대상의 다문화 교육 연수를 확대 등 다문화 학생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교육기회의 보장을 꾀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 제고가 요구됨.
- 방송 및 인터넷 무료 영어학습 환경을 위해 EBS 영어프로그램과 콘텐츠를 개발·제공하고 있으나 재정 여건의 제약을 고려할 때 수요자의 요구 분석을 면밀히 하여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여야 함.
- 학생의 동아리 활동으로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잠재적인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학교 내외 기관간에 유기적 연계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교육부(초등돌봄교실), 복지부(지역아동센터), 여가부(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지만 지역별 실정과 요구를 고려하여 특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Wee 프로젝트 확대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를 통한 상담 치료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원 인력 부족으로 학교의 요구에 대응한 지원에 한계가 있고, 학교 내외 집단의 광범위한 신뢰를 얻는 데는 미흡함.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자체 법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찾아가는 비행예방교육 확대 실시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다소 수동적으로 시행되면서 학생들의 호응과 공감을 크게 얻는 데는 한계가 있음.
- 학교폭력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학교폭력신고 체계 정비 및 피해 청소년 조치 강화, 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학생들의 접근이 어렵고 예술 경험 확대와 또래와의 언어 상호작용 기술 습득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예방차원의 정책지원이 취약함.
- 학교폭력 신고체계 정비, 피해학생 치유 및 가해학생 재활 지원 등이 확대되고 있으나 학교폭력 발생시 가해·피해 가족간의 갈등이 교직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음.
- 어린이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아동보호구역 등 학교안전관리통합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되고 있으나 학부모나 학생의 공감대와 이해를 얻는 데는 한계가 있고 다소 형식적으로 지

정·관리되는 경향이 있음.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학교내 전문적 지원 인력이 부족하고 학부모의 협력과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여건 조성 미흡으로 지속적인 지원 확대가 요구됨.
- 아동의 창의적 체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아동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환경이 이를 뒷받침 해 줄 수 있어야 하므로 아동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의 확대 및 신고의무 불 이행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등을 통한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현행 아동보호제도는 여전히 피학대 아동의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피학대 아동의 발견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음.
-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지방자치단체마다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상황으로 아동보호서비스의 지역 간 편차가 심각함. 아동예산 편성을 중앙정부 업무로 환수하여 아동보호 예산의 지역간 편차로 인해 문제를 해소 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된 아동권리 모니터링 센터가 아동권리침해사태에 대한 조사와 아동정책 모니터링 등을 보다 발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규모 등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함.

3. 위원회 권고, 이행 그리고 한계

가. 이행사항

(1) '일반이행 조치'와 '아동의 정의'

여기서는 아동권리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서 정부가 제출한 1차 보고서부터 3,4차 통합 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가 시종일관 권고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분석·정리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개선되지 않고 오랫동안 해결과제로 남아있는 아동권리 사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표 1〉 ‘일반이행조치’와 ‘아동의 정의’에 대한 권고와 이행사항

Cluster	권 고			이행 사항
	1차, 2차권고	1차~3·4차에 대한 지속적인 권고	3, 4차 추가 권고 내용 ¹⁾	
일반 이행조치와 아동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보조항 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접교섭권과 입양허가제유보조항 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조치: 협약의 전반적인 조항을 이행하는 국내법규 불충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태관련법률이 아동최상의 원칙에 합치하도록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일치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예: 무상보육의 전면 실시 등) 국내법의 지속적인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관련 정책과 프로그램 ‘조정기구’ 설립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행동계획 채택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활동 재개 • 그러나 권고에서 명시한 바의 ‘필요한 권한과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확보한 적절한 관련기구를 수립’에는 못미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이행모니터링 • 독립적인 이행점검 : 센터의 법적지위 규정 • 모니터링의 독립적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분한 독립적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위원회로 이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분배’, ‘재원할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원할당 : OECD 국가에 맞는 예산 분배. - 아동간 격차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아동예산 평가 - 아동권리를 준거로 한 예산분배 평가 - 영향평가 및 예산 효과 평가 - 예산수립과정의 투명성 및 참여제도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수립과정의 투명성 및 참여제도 보장 미시행 • 영향평가 및 예산효과평가 미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적인 통계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실태조사 실시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원조 2015년까지 국민총생산 대비 0.7% 목표달성 • 기업과 아동권리연계 - 아동노동권 침해 기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 이행
아동의 정의	혼인가능연령 남아평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법개정을 통하여 이행

출처: 황옥경(2012).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사항 점검, 유엔아동인권센터 세미나 자료집, 유엔아동인권센터의 내용을 재구성함

1) 3, 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관련 추가권고 내용 임

- 아울러 이러한 작업은 3·4차의 권고에 포함하지 않는 내용을 역으로 추적함으로써 권고 이행 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혼인가능연령의 남녀평등(1차권고), 여아의 고등기회 확대(2차) 등과 같은 권고이다.

- ‘일반이행조치’와 ‘아동의 정의’클러스터의 권고내용을 보면, 조정기구와 모니터링, 재원할당, 통계수집, 협약 홍보 등에 대한 위원회의 지속적인 권고가 있다. 그러나 조정기구인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2013.12.재구성 및 활동이 재개되었으나 위원회의 권고인 ‘필요한 권한과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확보한 조정기구’라고 보기 어렵. 모니터링기구는 민간기관 위탁 운영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 그 업무가 이관되어 향후모니터링 기구의 역할이 어떻게 정리될지 주목된다.

- 일반이행조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모니터링, 통계시스템구축, 협약 홍보 등이 부분적으로는 이행되고 있으나 필요한 권한과 충분한 인적,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확보한 조정기구 등이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 수준의 부분이행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특히 정부는 그동안 국책연구기관과 민간기관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를 위탁운영하는 형태를 취하였는데 이러한 방식의 운영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
 - 법적근거 미비로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법적지위보장이 안되었다.
 - 이견이 있지만 조사권과 독립권 등의 모니터링기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본래의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였다. 조사권미비로 권리침해사례를 발견하여도 개선을 건의하는 수준의 모니터링 활동에 그쳤다.
 - 민간위탁이므로 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 연간 1억여원에 불과한 저예산으로 모니터링의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웠다.
 - 예산부족과 연관된 것으로 모니터링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 예산수립과정의 투명성 및 참여제도 보장이나 영향평가 및 예산효과 평가 등이 정

부부처의 일부 성과지표 등을 통해 평가되고 있으나 모든 아동관련 정책을 망라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 수립의 투명성이나 효과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더우기 3·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권고 사항에 새롭게 포함된 것이 국제원조 참여와 아동권리와 기업활동과정 연계에 대한 권고인데 이와 관련한 가시적인 정책적 노력이나 변화가 보이지는 않는다.
- 아동을 사회의 시민으로 인식하고 이들이 성인보다 무능하지 않으며 발달이 완성되는 그 어떤 연령에 도달하는 순간 인간으로서의 ‘인권’을 누릴 수 있다는 시각을 벗어나는데 협약에 대한 홍보와 교육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 협약에 대한 우리국민의 인식 수준은 여전히 미약하고 심지어 아동관련 종사자들조차도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협약에 대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정책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 일부 직군은 직무연수과정에서 아동권리 협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시기와 교육시간이 적절한 것인지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2) ‘일반원칙’과 ‘시민적 권리와 자유’

- ‘차별금지’, ‘아동견해존중’, ‘표현과 결사의 자유’, ‘체벌금지’등의 반복권고가 있다.
- ‘일반원칙’과 ‘시민적 권리와 자유’영역의 이행사항은 확대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를 제외하고 대부분 부진하다.
- 우선 ‘모든 형태의 체벌 금지’에 대한 지속적인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인권조례’등을 통해 체벌금지를 제도화하였을 뿐이다.
- 출생등록과 관련한 지속적인 권고 역시 무색하다. 작년한해 동안 거의 200여명에 달하는 무호적 아동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혼인과 비혼인 상태의 부모 모두

부모의 자의적 결정에 의해 출생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 현 제도와 입양특례법 등으로 출생등록을 기피하는 등으로 인하여 무호적 아동의 탄생을 방치하는 상황이다.

〈표 2〉 ‘일반원칙’과 ‘시민적 권리와 자유’에 대한 권고와 이행사항

Cluster	권고			이행 사항
	1차, 2권고	1차~3·4차에 대한 지속적인 권고	3, 4차 추가 권고 내용 ²⁾	
일반원칙 (2,3,6,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별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수자차별금지추가 - 자살위험용인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연령차별 소외 UPR 심의 중 정부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조사 및 검토하고 있을 언급 이주아동권리보장, 비혼청소년부모 등 차별을 금지하는 입법조치 취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해존중’, ‘견해존중’과 관련한 정보제공, ‘영향평가’에 대한 지속적인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견해존중에 대한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견해 존중을 위하여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서울, 광주, 경기 등 아동청소년의회 구성활동 등 지방자치단체수준의 이행
시민적 권리와 자유 (협약 7, 8, 13-17, 19, 37조)	무국적아동방지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생등록’ 등 아동탄생 기록과 국적 소유에 대한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의 완전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표현과사의자유’ - 학교 위원회의 운영참여 - 결사와 표현의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형태의 차별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형태의 차별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형태의 차별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인권조례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력에 대한 포괄적인 권고 지속됨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상황에서의 아동폭력 금지 법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접근 	

출처: 황옥경(2012).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사항 점검, 유엔아동인권센터 세미나 자료집, 유엔아동인권센터의 내용을 재구성함

2) 3, 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관련 추가권고 내용 임

(3) '가정환경과 대안양육'과 '기초보건과 복지'

- '가정환경과 대안양육'과 '기초보건과 복지'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가 보다 구체화되고 확대되었다. 특히 건강과 보건서비스 관련내용이 상세하게 추가 권고 되었다. 정신건강 관련하여 우울, 자살 등의 예방을 위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위원회는 청소년보건과 관련하여서도 대중매체를 통해서 술과 담배, 인터넷 중독의 위험에 대한 정보와 교육 캠페인을 증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 이러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은 여전히 모호하고 포괄적이다. 건강검진 결과의 추적 관리 체계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과 관련한 학교 교육제도 등과 연관된 후속 조치 등이 취약하다.
 - 보건복지부(2014)의 아동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의 기본조건에 대한 참여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아동결핍지수'가 54.8%로 나타나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아동은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정기적 취미활동(음악·스포츠·동아리 활동 등)의 결핍률이 52.8%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대체로 여가활동 및 각종 여가향유를 위한 인프라 관련한 항목의 참여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아동의 스트레스 및 우울 수준도 2008년 조사 때 보다 증가했다.
 - 9~17세 아동의 스트레스 수치는 2.16(4점 만점), 우울 수준은 1.25로 5년 전 2.14, 1.21 보다 다소 상승했다. 아동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는 숙제, 시험, 성적 등 학업과 관련된 항목이 높게 나타났다.

〈표 3〉 '가정환경과 대안양육'과 '기초보건과 복지'에 대한 권고와 이행사항

Cluster	권고			이행 사항
	1차, 2권고	1차~3·4차에 대한 지속적인 권고	3, 4차 추가 권고 내용 ³⁾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협약 5조, 18조(paras. 1-2), 9-11조, 19-21조, 25조, 27조 (para. 4) 및 3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가정 양육의 양육안전성에 대한 권고 • 입양절차와 입양이후 아동권리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안양육의 질에 대한 정기점검 • 대안양육의 아동학대 보호절차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특례법 개정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가족 폭력에 대한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권과 자유클러스터로 이동하여 권고 	
기초보건과 복지 (협약 6조, 18조(para. 3), 23조, 24조, 26조, 27조 (paras.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대상 무료이용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2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동지원 세부권고 내용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입법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과 보건서비스 권고 내용 확대 (저소득층의 건강보건서비스, 소아의료서비스 내용추가) • 정신건강, 정책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보건 권고 추가 (대중매체를 통한 음주흡연, 유해음식, 등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섯다운계 등 관련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사회보장과 생활 수준 : 평등과 형평성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등과형평성 보장 접근 	

출처: 황옥경(2012).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사항 점검, 유엔아동인권센터 세미나 자료집, 유엔아동인권센터의 내용을 재구성함

한편, 대안양육가정에서 성장하는 아동의 안전과 보호 그리고 양육의 질에 대한 사후점검 등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2014.11월 입양아동이 입양부모의 학대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양특례법은 사전가정방문 서비스를 통해 입양가정의 양육 안전성을 확인하고 사후서비스를 통하여 양육의 질을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3, 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관련 추가권고 내용 임

입양과 위탁가정 등의 아동에 대한 사후서비스 지원을 체계화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게 대두하였다.

(4) '교육'과 '특별보호조치'

- '교육'은 사교육과열과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권고가 1차부터 3·4차에 대한 권고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포함되었다.
- '교육'에서 눈에 띄는 권고로는 여가, 문화 및 오락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이다.
 - 앞서 언급한 바대로 보건복지부(2014)의 아동실태조사 보고에서 우리나라 아동은 유니세프의 14개 결핍지수 중에서 정기적 취미활동(음악·스포츠·동아리 활동 등)의 결핍률이 52.8%로 여가활동 및 각종 여가향유를 위한 인프라 관련한 항목의 결여수준이 높았다.
 - '주 3일 이상 30분 이상' 운동을 하고 있는 아동은 34%에 불과했으며 31.2%는 하루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인터넷 및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해서는 초등학교생의 16.3%, 중고생의 9.3%가 고위험군으로 밝혀졌으며 중고생의 경우 중독 고위험군이 2008년(1.3%)에 비해 7배 이상 증가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12월 교육부와 법무부에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를 권고하였고 2012년 이주민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이주민권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법무부 등 10개 관련 부처에 정책 수립·시행 시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내용에 대하여 교육부와 법무부는 권고를 전부 수용하여 부모가 단속된 경우라도 아동의 해당학기 마무리 등을 위해 보호 일시해제 등 제도를 허용하였고 교육공무원을 비롯한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보건소 의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상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강제 퇴거대상자 등을 발견할 때 출입국 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는 '공무원통보의 무의 적용을 유보 또는 면제'하는 권고를 수용하여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였다.

〈표 4〉 ‘교육’과 ‘특별보호조치’에 대한 권고와 이행사항

Cluster	권고			이행 사항
	1차, 2권고	1차~3·4차에 대한 지속적인 권고	3, 4차 추가 권고 내용 ⁴⁾	
교육 (교육, 여가 그리고 문화 활동: 협약의 28, 29, 3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교육경쟁 우려 • 공교육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 문화 및 오락활동 보장 • 학교점근성 평등관련 정 보수집 • 다양한 형태의 왕따와 괴롭힘에 대한 조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가 문화 및 오락에 대한 저조한 관심과 실행 • 학교폭력에 대한 지속적 제도 개선
특별 보호조치 (협약의 22, 30, 38, 39, 40, 37 (b)-(d), 32-3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괄적 개혁(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사법 기준의 이행/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사법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전문법원설립 - 소년사법체계의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친화조사실 운영 등 일부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착취권고 내용의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적착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대상 성폭력방지 조치 - 아동성범죄자에 대한 형사사법시스템내에서 재제치보 - 성범죄자의 형사책임 면제 없이 재할노력 지속 - 인신매매, 성착취 피해자위한 다언어 서비스와 재활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입법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아동의 권리 보장에 관한 포괄적 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아동의 교육받을 권리 정책/ 전략 -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과 국내법 개정 장려 • 비호신청과 난민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제공 - 사회지원조 및 교육기회제공 - 담당자 난민권리 훈련 - 난민, 보호신청자 아동 구금 금지 - 송환시 아동의 권리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이후 법일부 개정 등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노동에 관한 권고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섯다운제 등 관련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신매매 관련 권고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등과형평성 보장 접근

출처: 황옥경(2012).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사항 점검, 유엔아동인권센터 세미나 자료집, 유엔아동인권센터의 내용을 재구성함

4) 3, 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관련 추가권고 내용 임

나. 위원회 권고의 한계와 정부 이행 특징

(1) 위원회 권고의 한계

- 위원회는 국내 아동 삶의 실제적인 개선을 위한 현실적인 필요와 요구를 권고에 비교적 구체적으로 반영하였다. 특히 조정기구, 모니터링기구, 예산 편성의 확대 및 효과성 평가, 아동참여 기구 마련, 아동보건과 건강, 공교육 정상화, 이주아동, 장애아동, 소년사범, 어떠한 형태의 폭력적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차별 금지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권고를 해 왔다. 정부는 아동정책을 수립·실행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하였고 어떤 정책 분야에서는 유보조항을 철회하거나 법 개정 등을 통하여 이행을 완료하거나 상당한 진전을 이루기도 하였다. 아동실태조사 실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재구성, 모니터링 기구의 존속,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아동참여 기구의 구성 및 운영, 그리고 장애아동관련한 입법, 입양특례법의 개정 등이 이러한 맥락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위원회의 권고는 국내아동정책의 변화를 촉발하는 요인으로서 중요하게 기능하고 있다.

- 그러나 위원회의 권고가 우리나라 아동정책의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왜냐하면 위원회의 권고가 국내 아동의 삶 및 아동정책 상황의 현실을 민감하게 반영하는데 제도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5년 주기마다 보고하고 보고 심의가 2년정도 소요되었던 전례를 본다면 현재 지금의 아동관련 사안에 대해 위원회가 권고하는데 일정부분 한계가 있다. 국내에서 정치적, 사회적 요구에 의해 수립 시행되고 있는 주요 아동정책과 관련한 내용이 위원회의 권고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언제나 있다.
 - 이의 예는 몇 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를테면 무상시리즈 즉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과 관련한 국내의 이견과 논란 심지어 관련자간의 첨예한 대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권고는 없다. 조기개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정부의 핵심 아동정책과제에 포함된 드림스타트의 경우 조기개입과 관련한 권고를 보기 어렵다.

- 물론 저소득계층 아동의 의료서비스 등의 권고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드림스타트의 확대여부 아동복지 서비스 전달체계간의 기능과 역할의 조정문제가 중요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이슈가 되고 있다. 취약계층 아동의 기회의 공평성과 관련하여 2000년 중반부터 정부에 의해 핵심 아동정책으로 추진되어 왔다.
- 취약계층아동의 조기개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2000년대 중반 우리나라 아동관련자간의 핵심쟁점이었다. 조기개입기반은 아동권리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 등 어느 영역의 권리와도 관련되는 우리나라 아동정책의 핵심주제가 된다.
- 이와 같은 예를 또 찾을 수 있다. 방과후 돌봄의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 방과후 보육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학교 방과후 돌봄과 지역아동센터 등 다양한 방과후 돌봄 인프라를 가지게 되었다. 이는 방과후 보육과 관련한 학교와 지역아동센터의 확대로 인한 역할 중복과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역할조정이 제시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방과후 보육관련 내용은 그동안 권고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간의 연계와 역할분담 등 서비스 전달체계의 정립의 시급하고도 절실한 필요성에 대한 국내의 요구 역시 권고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 대중매체의 아동권리 침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웹진의 무분별한 정보제공 및 SNS 등을 통한 아동권리 침해 요인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 역시 권고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학교 내 아동권리 상황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도 취약하였다. 사실상 그동안 학교에서 아동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란 여전히 어렵다. 특히 학교간 과잉교육경쟁으로 예체능 교과목을 저학년 시기에 몰아서 이수하는 등의 아동인권 침해 소지가 상당하였지만 이와 관련한 권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 학생선수 및 청소년연예인 등의 권리가 근래 우리사회에서 아동권리의 우선

적인 이슈가 되어 이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 수립으로 이들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기도 하였다.

- 이와 같이 위원회의 권고가 국내 아동관련 정책 수립과정의 정치상황과 현실적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 먼저, 5년 주기의 이행상황 보고 체계와 무관하지 않다. 물리적 시차로 인하여 국내 아동과 관련한 국내 현실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
 - 또 다른 이유로는 위원회의 권고가 보고내용을 근거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즉 현재의 3, 4차 이행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는 결국 1차 보고서에 대한 이행 내용과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차후 이행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이전 보고서에 대한 개선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정부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점에서의 가장 핵심 쟁점과 논란 그리고 중요 이슈가 만일 위원회의 권고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었다면 이 내용을 국가 보고서에서 제외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만일 위원회의 권고를 중심으로 정책 수립 및 보완을 하게 되면 실제 아동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영역에 대한 정책 대응이 느리거나 미진할 수 있다. 권고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 인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대중매체의 아동권리 침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유아를 중심으로 한 가족생활을 자극적인 자막을 사용하여 공개함으로써 시청률 상승을 도모하는 방송, 아동에 대한 부분별한 언론의 취재, 우리나라 아동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접속하하는 한 웹진의 홈페이지에서 비민번호나 아이디 등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쉽게 볼 수 있는 성행위 동영상 장만, 웹진의 무분별한 정보제공 및 SNS 등을 통한 아동권리 침해 요인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중매체의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지침 및 교육 훈련 등의 제공, 모니터링 활동 등의 정책개선이 활발하게 논의 되지 않고 있다.

- 위원회의 권고는 우리나라 아동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지만 이 권고

가 바로 우리나라 아동정책의 최우선순위를 권고하는데 한계가 있다.

- 정부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의 권고와 더불어 아동관련 현안을 모두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2) 정부 이행의 특징

- 1차, 2차 3·4차 통합보고서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정부이행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아래의 내용은 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중심으로 한 협약 이행의 특징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의 아동정책 현안을 모두 포괄하지 않는다.
 - 첫째 정부의 이행은 포괄적, 부분적, 그리고 형식적이다. 정부의 위원회 권고 이행이 대부분 표피적이다, 형태와 모양은 따르는데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대체로 부실하다. 일반이행조치에 해당하는 아동권리가 정부의 아동정책 개발 및 보완과정을 통해서 충분하게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재원할당과 예산의 공개수립 및 효과 평가, 그리고 통계수집 체계가 확고하지 못하고, 조정기구와 모니터링 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인적, 기술적, 물적자원 역시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들 정책을 실행하는데 소요되는 최소의 비용조차 그 효과를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입양특례법을 개정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통해 입양이 가능하게 되었지만 엄격한 가정방문조사와 사후서비스 지원 미비로 입양가정의 양육어려움이 발견되고 있다. 장소를 초월한 어떠한 유형의 체벌금지에 대해 1차부터 3·4차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권고 받았지만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체벌과 출생등록 등은 1차부터 3,4차까지 줄곧 드러나고 있는 아동권리침해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조치 역시 드러나지 않는다(황옥경, 2012).
 - 둘째 지방자치단체 차원이 권고사항 이행이 다양하다. 지방자치단체는 특히 아동 참여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의회 등의 방식을 통해서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 셋째, 아동통계 생산이 가능한 통계수집 방식을 바꾸지 않았다. 실태조사를 통하여 아동 삶의 단상을 확인하고 통계자료를 축적해 나가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다. 향후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예산의 효과를 평가하는 등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5년 주기로 되어 있는 인구통계조사의 경우 18세 미만으로 아동인구변화추이 추적하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계자료 생산방식의 변화 역시 필요하다.
- 넷째 새로운 권고에 대한 정부의 정책 대응이 미진하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3,4차 통합보고서에 대해 이주아동의 권리, 아동노동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정부정책 개발 등은 미진하다. 이외에도 ‘국제협력’, ‘아동권리와 기업’, ‘출생 등록’, ‘망명신청아동 및 난민아동’, ‘국가행동계획’ 등의 주제는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는 사안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황옥경, 2012).
- 다섯째, 아동관련 국내 현안과 유엔의 권고 사이에서 아동의 인권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선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지를 알 수 없다.

4. 향후과제

- 위원회의 권고내용도 살펴보고 정부의 이행상황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도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아동의 웰빙을 성취하기 위한 국가의 아동양육 이념과 목표 그리고 실천전략을 확인하기 어렵다.
- 권고 중심의 정책수립은 앞서 지적한 이유로 인하여 현안에 대한 민감한 정책 접근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으며 그렇다고 위원회의 권고를 도외시하면 우리나라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와 현안이 정부정책과 이행에서 소외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동시에 우리나라 아동의 필요와 요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의 웰빙을 위한 최우선적인 환경이 무엇인지 숙고해야 한다.
- 그렇게 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첫째, 국가차원의 아동정책 아젠다를 수립하고 아동정책의 중장기 틀을 개발해야 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 아젠다 없이 위원회의 권고와 사회적 이슈에 따라 아동정책을 수립하면 위기개입 수준의 아동정책을 실행할 뿐이다. 이제까지의 우리나라 아동정책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 왔다.
 - 아동정책을 권고에 대응하고 위기상황에 대한 문제중심적 접근을 탈피해야 한다.
 -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인권을 보장하는 국가 아동정책의 아젠다와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 비전을 아동의 현실과 미래인간상을 고려하여 수립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정책 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나 구체적인 실행과제가 제시되어야 한다(황옥경(2009)).
 - 이것은 비용대비 투자효과를 거두는데도 유용한 접근이다.
 - 올해 아동실태조사를 근간으로 한 아동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바 기대가 크다.
 - 아동에 대한 실태와 변화추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수준의 측정지표가 선정되어야 한다. 2014년 발표된 아동실태조사의 측정변수들이 국가수준의 측정지표이며 향후 조사에서도 이 변수들이 측정되는 것인지 분명해야 할 것이다.

- 둘째,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요구된다.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하던 모니터링 센터가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산하로 편입되었다. 모니터링 기구가 어떤 형태로 조직, 구성, 그리고 기능하게 될 것인지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민간위탁 운영의 한계를 뛰어 넘어 위원회의 권고처럼 물적, 인적, 기술적 자원의 충분한 투입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아동권리 옹호활동이 가능한 모니터링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구로 아동개별 인권침해사례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기구로서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아동권리모니터링 활동에 대한 기대가 있다.
 - 위원회의 권고대로 아동권리 전문가를 두고 아동권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조

사 등의 권리침해에 대한 모니터링을 활발하게 전개 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대한 물적, 인적, 기술적 자원 투입으로 아동권리 모니터링 중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황옥경과 오동석, 2013).
 - 모니터링은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아동권리과가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 셋째, 모든 정책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의 실시이다. 무엇보다 영향평가는 정책을 결정하기 이전 사전평가가 강조되어야 할 것을 핀란드와 스웨덴은 강조한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아동영향평가는 아동최선의 이익에 근거하며 아동의 참여를 기반해야 할 것을 명시한다. 각각의 국가는 영향평가 과정의 다양성을 전제하면서 각기 6단계와 5단계로 나누어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영향평가는 정책을 결정하기 이전에 빠를수록 좋으며 정책의 협약이행과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정확하게 예측 평가한 이후 정책으로 수립해야 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넷째, 지속적으로 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의지가 요구된다. 대표적으로 출생등록 제도의 개선을 통한 무효적 아동 존재 가능성 배제, 비밀입양이나 매매 등의 위험 등이 해소되어야 한다. 또한 어떠한 종류의 체벌을 금지할 것을 정부차원에서 명문화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아동의 연령규정 정리, 공교육 개선 중 예체능 교과와 저학년 몰아서 하기로 인한 운동부족과 예능활동 편식 등의 인권침해 개선을 위한 적극적 실천노력이 필요하다.
- 다섯째, 정책의 질적 수준 재고가 요청된다.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형식적 수준의 정책입안과 실행을 벗어나야 한다. 정책의 종류를 여러 가지이지만 정책 본래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단위 정책의 세밀한 실행과정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고 필요한 재원을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연간예산이 과연 충분한 것인지 입양특례법의 사전가정방문조사와 사후서비스 지원 체계, 무상보육의

요건, 위탁과 조손가정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등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고 충분한 것 인가와 같이 아동정책 전반의 ‘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여섯째, 예산의 효과분석을 통한 예산 조정이 요구된다. 현 아동정책이 아동권리의 관점에서 수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아동관련 예산분석이 필요하다. 예산의 규모뿐만 아니라 예산의 적절한 배분 및 효율성, 효과성 검토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아동관련 연구에서는 예산이라는 방대한 작업의 어려움상 아동관련 예산의 분석 연구는 시도되지 못하고 있다. 종종 사회복지예산 대비 아동관련예산의 규모나 외국과의 아동복지비의 비교정도로 수행되고 있다.
- 일곱째, 아동권리교육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일반국민의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은 낮다. 국민 누구나 누군가의 부모이거나 누군가의 아동과 관련되어 있다. 아동권리 보장의 실현은 아동권리의 이해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교육과 홍보는 다른 어떤 정책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협약이행에 있어서 권리교육과 홍보는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아동관련 직군 별로 다르게 되어 있는 아동권리 교육규정은 개선되어야 한다.
- 여덟째, 놀이와 여가시간과 놀이공간의 확보를 위한 정책에 초점을 둘 수 있어야 한다. 놀이와 여가의 절대부족 특히 왜곡은 심각한 아동발달의 위기를 가져온다. 3·4차 통합보고서에 새롭게 권고된 놀이와 여가 활성화의 필요성은 최근 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났다. 과도한 학업과 게임 등으로 우리나라 아동은 오락과 휴식 그리고 운동시간이 절대 부족하다. 도시화와 산업화는 아동의 놀이와 여가공간을 잠식하였고 과도한 학업경쟁은 놀이시간을 빼앗아 갔다. SNS와 IT관련 놀이와 여가형태는 다른 형태의 아동놀이와 여가의 블랙홀이 되었다. 놀이와 여가 개선을 위한 국가차원의 대대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권고내용에 포함하고 있지 않은 국내 아동현안을 국가아동정책 아젠다에 따라서 실행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해야 한다. 이를테면, 아동정책 현안

으로 부각된 지방자치단체에 따른 정책과 예산의 편차를 해소 등 이다. 아동복지 예산이 지방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아동복지 서비스의 예산과 지원이 다르다. 지역에 따라서는 편차의 규모가 상당하다. 아동복지서비스 예산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간 편차를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 그리고 아동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과 핵심 사례관리 체계의 수립은 시급하다. 아동사례관리 체계의 미비는 아동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것이다. 위기아동의 위험 예방과 일반아동의 건강한 발달 지원을 위하여 아동 사례관리의 핵심주체가 마련되어야 하고 아동복지 서비스 전달체계간의 역할과 기능조정을 통하여 업무와 예산의 효율성을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관련 기관의 연계체계 구축요구가 지난 10여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참고문헌

- 조석훈과 황옥경(2014). 법무부 국가인권기본계획 이행 평가에 대한 내부자료
- 황옥경(2009). 아동삶의 진전상황, 아시아 아동권리포럼 자료집, 아시아 아동권리포럼.
- 황옥경(2012).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사항 점검, 유엔아동인권센터 세미나 자료집, 유엔아동인권센터
- 황옥경과 오동석(2013). 아동기본법 연구, 국제아동인권센터



■ 세션 1: 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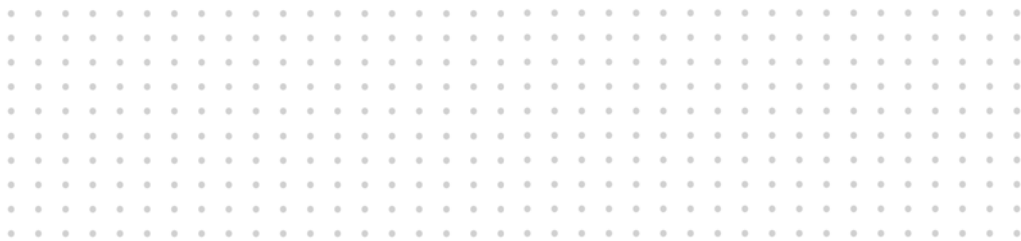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토론문

이호균 (아동행복포럼 고문)

김경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기획조정본부장)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추진상황과 향후과제

▮ 이호균 (아동행복포럼 고문)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25주년을 기념하면서 협약의 국내 이행 추진상황과 향후과제를 점검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다. 발제자는 우리나라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부터 받은 세 번의 권고내용들과 그 이행 사항을 여덟 가지 클러스터별 도표로 잘 정리해서 제시하면서 설명을 덧붙여주었다.

발제자는 위원회의 권고중심으로 국내 이행 추진상황에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하므로 국내의 아동정책 현안에 대한 논의를 모두 포괄하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차, 제2차 및 제3,4차 우리나라 국가보고서에 대해서 위원회가 검토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총 184개항에 달한다. 물론 이 중에 반복적으로 권고한 사항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방대한 양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발제자가 혼자서 짧은 시간에 추적하는 일은 만만치 않은 작업이므로 이행상황을 구체적으로 다 다루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발제자는 국가보고서를 5년 주기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고, 유엔이 심의하는 기간도 2년 정도 소요된 전례로 인하여 위원회의 권고에 한계가 있음도 지적하면서 위원회의 권고가 우리나라 아동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에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상기시키고 있다. 발제자의 지적은 물론 당연하다. 5년 주기로 제출하는 국가보고서에 우리나라 아동상황을 모두 담아내지 못하기도 하거니와 국가보고서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제출하는 민간보고서 또한 60쪽 정도로 제한을 받고 있기도 하며, 위원회가 심의하는 과정이 길어지기도 하므로 현 시점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 누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협약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하여 각

국가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제시하는 권고사항만큼이라도 성실하게 실천해 나가려는 의지와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아동정책이 협약의 정신을 잘 반영하면서 국내 상황에 맞추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하면서 토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1. 자료수집 체계의 일원화

위원회는 협약의 전 분야를 아우르면서 민족, 성별, 나이, 지역 및 사회·경제적 배경별로 구분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체계를 설립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각 부처별, 기관별로 다양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동·청소년 관련한 법에서 규정하는 연령이 중첩되거나 차이가 나므로 실태조사 결과 또한 중첩되거나 누락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협약은 아동을 “아동에게 적용되는 국내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4조에서 “성년이 되는 나이를 19세”로 정하고 있어서 “19세에 이르지 아니한 자”가 아동에 해당한다. 그러나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의 자’로,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에서 24세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정책의 수립은 정확한 현황과악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연령의 다름으로 인하여 자료수집과 정책수립에서 중복과 누락의 여지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3년 단위로 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에 ‘한국의 아동지표’, 2009년 ‘아동·청소년백서’를 발간하였다. 또한 2011년 전부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5년마다 아동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2013년에 아동종합실태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실태조사 결과가 최근 ‘2013년 아동·청소년행복지수’로서 발표된 바 있다.

아동과 관련한 정책에 관계된 정부 부처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만이 아니라 교육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다양한 부처가 해당된다. 미국의 경우 11개 정부 산하 22개 기관에서 생산되는 자료들이 아동지표(America’s Children: Key Indicators of

Well-being)로서 매년 발표되고 있다. 이 지표들은 인구영역(3개 지표), 가족 및 사회환경(12개 지표), 경제상황(4개 지표), 건강(6개 지표), 신체적 환경과 안전(12개 지표), 행동(7개 지표) 및 교육(11개 지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950년부터 생산 가능한 통계에서부터 2013년 통계까지 포함하고 있다. 연방아동가족통합통계포럼(Federal Interagency Forum on Child and Family Statistics: www.childstats.gov)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부처별 실태조사 및 현황을 토대로 우리나라 아동상황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확정하고 통합적으로 지표가 생산되어야 하며, 이를 근거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2. 정책조정 역할의 강화

아동과 관련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기구를 설립 및 운영하라는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4년 10월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설치 근거조항이 마련되었다. 2004년 12월 제1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개최되었고 2007년까지 4차의 회의가 있는 후 MB정부에서는 전혀 개최된 바가 없다. 약 5년 8개월만인 2013년 7월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재구성되고 2014년 2월에야 제5차 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0개 부처의 장관 및 10명의 아동권리 및 아동복지 민간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아동·청소년 관련한 정책의 조정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부처별 권고사항 이행여부 등을 더욱 효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연방 아동가족통합통계포럼과 같이 전 정부를 아우르는 통합된 지표를 생산하는 역할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의 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위원회로서 연간 1회 정도의 회의밖에 수행하고 있지 않다. 아동정책조정위원회가 정례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아동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상설화된 사무국의 설치가 시급하다.

지역단위에서의 아동권리 상황 이행점검을 위해서는 중앙단위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결정사항 등이 정책에 반영되는지 여부의 모니터링 및 지역차원의 정책의 조정과 이행을 독려할 수 있는 조정기구의 설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 아동예산의 국고 환수 및 영향평가의 실시

- 경제발전 정도 및 OECD 수준에 좀 더 걸맞도록 협약이행을 위해 배정된 재원 수준을 검토하고 증가시킬 것
- 아동권리를 충분히 실현하고 지역당국 및 지리적 위치에 따른 아동간의 격차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아동권리 관점으로 재원배정을 평가할 것,
- 이를 위해 분야별, 지방자치단체별로 예산 필요 정도를 총괄적으로 평가하고 아동권리 관련 항목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지속적으로 다루는 분야에 대해 재정배분을 설정할 것
- 국가예산을 수립하는 데 있어 아동권리접근법을 활용할 것, 즉 예산 내 아동을 위한 재원의 배분 및 사용을 추적하는 체계를 도입하여 아동을 위한 투자의 가시성을 제공할 것, 또한 분야별 투자가 어떻게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부합하는 지를 가늠하는 영향평가에 이 추적체계를 활용하여 투자효과에 있어 여아 및 남아 간의 차이를 측정할 것
- 재원배정의 효과를 감시 및 측정할 수 있도록 결과기반 예산수립을 도입하는 유엔권고안을 따를 것
- 아동을 포함하는 공개대화를 통해 예산수립과정의 투명성 및 참여도를 보장할 것
- 사회적 약자 우대 조치를 필요로 하는 빈곤 혹은 취약계층 아동, 예를 들어 난민 또는 이주노동자의 자녀를 위한 전략적인 예산 방안을 수립하고, 경제위기, 자연재해 또는 다른 긴급상황에서도 이 예산을 지킬 것
- “아동권리를 위한 재원-국가의 책임”에 관한 2007년 일반논평에서 도출된 위원회의 권고안을 고려할 것

아동예산과 관련한 위원회의 권고는 너무나 방대하고 고차원적이어서 우리나라가 권고를 받아들이기에는 무척 곤혹스런 상황에 있다고 하겠다. 2005년 아동관련 예산 중 ‘아동복지시설 운영’, ‘가정위탁 양육지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결연기관 운영’,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입양기관 운영’,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및 ‘아동급식지원’ 사업이 지자체 사업으로 이관된 바 있다. 지자체별 재정자립도에 우열이 있고, 아동예산의 차등이 심하여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서비스 질이 달라져야하는 것은 협약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인 ‘비차별의 원칙’에 배치하는 정책이다.

아동관련 예산이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는데 어떻게 기여를 하는지 영향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현황에 근거한 지표를 토대로 아동정책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전략적 목표하의 세부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측정이 가능한 목표치가 설정되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아동정책에 대해서만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는 없지 않은가? 무상급식,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등 정치의 포퓰리즘적인 정책보다는 정책의 우선순위에 입각한 선별적인 예산의 배정, 그리고 아동예산은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예산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4. 독립 모니터링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이 2014년 8월 27일자로 개정되어서 위원회 조사국 내에 아동·청소년인권팀이 신설된 것을 환영한다. 그동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굿네이버스에 위탁되어 운영되던 아동권리 모니터링 업무를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맡아서 더욱 활발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의 아동·청소년인권팀 주요업무 제3호에는 ‘아동복지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내의 아동·청소년 대상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항의 조사 및 직원조사와 구제’를 그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4호에서는 제3호와 관련한 조사, 구제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사항 연구, 권고 및 의견표명을, 제6호에서는 제3호에 따른 조사 대상 기관 관련 다수인 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업무를 볼 때에 아동복지시설과 학교내 인권침해에 치중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 바깥의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문제는 그 대상이 아닌 것인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자체의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이 학교내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게 되어 있어서 그 업무의 중첩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매우 궁금하다.

주요업무 제2호에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아동·청소년 관련 국제인권조약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 모니터링, 권고 및 의견표명이 있어서 각 부처별 유엔의 권고사항을 어떻게 이행하는지 객관적인 차원에서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다만 그동안 7년이나 사용해온 한국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의 명칭은 그냥 사장될 것인지 궁금하다.

최근 보건복지부에 의해 발표된 2013 아동·청소년행복지수에 의하면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도가 100점 만점에 60.3점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점하였다고 한다. 또한 아동결핍지수에서도 54.8점을 기록하면서 가장 결핍이 큰 나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스트레스 요인은 학업, 학교폭력 및 인터넷 중독으로 발표되었다. 학교폭력 해소와 인터넷 중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과도한 교육경쟁을 우려하였듯이 대학입시 중심과 이로 인한 성적의 서열화를 방지하는 교육정책의 개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방

안들에 대한 정책제안이 부족한 것 같다. 아동을 행복하지 않게 하는 스트레스 요인이 실태조사 결과 명백하게 밝혀진 만큼 교육제도 개선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효과적인 이행 방안 - 실제적인 현장 실천 프로그램의 확산



Ⅰ 김경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기획조정본부장)

지구촌 모든 어린이를 위한 약속, 유엔아동권리협약 25주년을 맞아 한국의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제안하는 발표에 덧붙여, 아동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데 효과적인 현장 실천 프로그램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어린이와 어른 모두 아동권리에 대해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인식과 태도가 변화되어 실생활에서 능동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과 연계된 **참여형 아동권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이 필요하다.

둘째, 대부분의 한국 어린이들이 누리지 못하는 진정한 배움과 놀이의 가치를 회복하고, 어린이들이 어린이답게 맘껏 뛰놀며 자랄 수 있도록 **잊혀진 권리, 놀 권리를 지켜주는 전면적인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

셋째, 아동권리 실현에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는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기업, 출산 관련 의료기관 등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CFC)’, ‘권리 지킴이 학교(Rights Respecting Schools)’, ‘아동권리와 경영원칙(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CRBP)’,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Baby Friendly Hospitals; BFH)’ 등 **구체적인 현장 적용 프로그램을 확산**해 나가면 의미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1. 실천 지향적인 아동권리교육 강화

아동권리 교육은 어린이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아동권리에 기반한 접근법과 아동권리협약의 조항을 가르치고 배워, 어린이와 어른 모두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국가와 전 지구촌 차원에서 이를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어

린이는 자신의 권리를 알고 주장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고, 어린이의 권리를 지켜주어야 하는 의무주체(정부, 개인, 기관 등)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배우는 것을 권리로 인식하고(learning as a right), 권리에 대해 배우며(learning about rights), 권리를 존중 받으며 배우고(learning through rights),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행동하는 것을 배운다(learning for rights). 아동권리 교육은 단순히 아동권리협약을 가르치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으며, 이에 대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아동권리협약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한국 정부에 반복해서 권고하고 있다. 2011년 10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3차 권고에서, 한국 정부가 교과목에 인권 관련 내용을 일부 포함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협약에 대한 아동·일반 대중·아동 관련 종사자의 낮은 인식 수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1996년 1차 권고와 2003년 2차 권고에서도 학교 교육과정에 아동권리와 인권 관련 교육을 포함시킬 것, 아동 관련 종사자에게 협약에 관한 적절한 교육을 할 것, 협약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 제고를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 등을 권고했다.

학대와 방임,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따돌림, 사이버괴롭힘 등 아동 문제가 더욱 심화되면서,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아동권리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어린이와 어른 모두 가정·학교·지역사회·국가·지구촌 차원에서 어린이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아동권리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어린이들이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서로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도록 존중과 공감에 중점을 둔 아동권리 교육이 필요하다.

영국과 캐나다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조항과 원칙을 학교 운영 전반에 적용하여 서로의 권리를 지켜주는 학교를 ‘권리 지킴이 학교(Rights Respecting Schools; RRS)’로 운영하는 것은 학교 차원에서 아동권리 교육을 강화하고 구체적으로 아동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다. ‘권리 지킴이 학교’는 권리를 존중하는 가치들이 학교의 리더십과 운영의 근간을 이루고, 학교 전체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대해 배우며, 학생들이 세계 어린이의 권리도 지켜주는 지구촌시민으로 자라나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가족해체, 학교 공동체 붕괴 등 아동문제의 근원인 가정과 학교에서 부모와 교사 등 아동 관련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어린이들이 교육받은 내용

을 일상생활에서 적용하기 위해서는 교사뿐만 아니라 부모와 지역사회도 함께 이해해야 한다. 더욱이 주 5일제 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활성화로 교육의 장이 학교에서 가정과 지역사회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아동 권리 교육의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2. 건강한 놀이 문화의 확산

대부분의 한국 어린이들은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놀이와 여가를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 어린이의 인격 존중과 인성 발달을 도외시한 채 성취한 강요하는 경쟁적인 교육 구조와 과도한 교육열은 사교육과 선행학습으로 이어져 놀 권리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 어린이들은 놀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놀이 유형도 인터넷 게임과 TV 시청 등에 제한된 상황이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 교육의 극심한 경쟁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하며 어린이의 놀 권리를 증진하도록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경쟁적인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교육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인격과 재능,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마음껏 개발할 수 있는 교육, 인권과 자유, 이해와 평화의 정신을 배우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진정한 교육이 절실하다.

놀이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으로든, 스스로 내켜서 하는 것이 참된 놀이이다. 어린이는 바깥에서 맘껏 뛰놀면서 몸도 맘도 건강하게 자란다. 놀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마음을 표현하는 법도 배운다.

하고 싶은 공부를 맘껏 하며 어린이답게 맘껏 뛰놀 수 있도록, 배움과 놀이의 진정한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놀이문화를 확산해야 한다. 놀이 시간 및 공간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

3. 구체적인 현장 적용 프로그램 확산

1)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 CFC)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이다. 아동친화도시 만들기는 1996년부터 UNICEF와 유엔인간거주센터(Human Settlements Programmes)가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시작돼 약 30개국 1,300여 개 도시로 확산되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2013년 국제적인 ‘아동친화도시’의 9가지 기본 요건에 한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안전’ 요건을 더하여 10가지 원칙을 정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를 한국 최초의 ‘아동친화도시’로 임명하였다.

아동친화도시 프로그램을 각 지역사회단체 차원에서 적용해 나간다면 어린이들이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기본원칙〉

1. 어린이의 참여	어린이에게 영향을 끼치는 정책의제에 대해 어린이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어린이들의 적극적인 참여 (예: 어린이 의회)
2. 아동친화적인 법 체계	어린이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입법, 법적 틀, 절차 등 마련 (예: 어린이 조례)
3.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전체 도시 차원의 전략	아동권리협약에 의거하여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전략 개발
4. 아동권리 담당 부서 또는 조정 체계	어린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도시의 조직구조를 개발
5. 아동영향 조사와 평가	법, 정책 등이 어린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집행 전후와 집행 단계에서 조사하고 평가
6. 아동 관련 예산	아동을 위한 적절한 예산을 배정하고 분석
7. 정기적인 아동현황보고서	아동과 그들의 권리에 대한 자료 수집과 충분한 모니터링 실시
8. 아동권리 홍보	아동권리에 대한 일반시민의 인식과 아동의 인식을 제고
9. 아동권리 옹호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영리단체를 지원하고 옴부즈퍼슨 위촉이나 위원회 등 독립적인 기구의 개발을 추진
10. 아동을 위한 안전 조치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

2) 아동친화기업 - 아동권리와 경영원칙 (Children's Rights and Business Principles: CRBP)

‘아동권리와 경영원칙’은 2012년 유니세프와 세이브더칠드런, UN글로벌컴팩트가 런던에서 공동발표한 국제기준으로 아동노동 철폐, 아동의 보호자에게 적당한 일자리 제공, 제품과 서비스에서 아동권리 보장,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마케팅 및 광고 사용, 아동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사회와 정부의 노력 지원 등 기업이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10개 항을 담고 있다.

‘아동권리와 경영원칙’은 아동의 권리와 삶의 질에 끼치는 기업의 영향을 이해하고 고민하기 위한 포괄적인 틀을 제공해 준다. 아동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대개 아동노동을 예방하거나 금지하는 데 초점을 두어왔다. ‘아동권리와 경영원칙’은 아동노동을 예방하거나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이 아동에게 끼치는 다양한 방식의 영향에 대해서도 강조한다. 기업은 서비스, 마케팅, 유통 관행 등을 비롯하여 국가 및 지방정부와의 관계, 지역사회 투자에 이르기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아동에게 영향을 끼친다.

2013년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세이브더칠드런, 한겨레경제연구소와 함께 경영활동이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해 주는 ‘아동친화경영 우수사례’ 기업을 일터, 시장, 환경 및 지역사회 부문별로 선정하였다.

〈아동친화기업의 10가지 요건〉

1. 아동권리 존중의 책임을 다하며, 아동권리를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2. 모든 기업 활동과 사업 관계에서 아동노동 철폐에 기여해야 한다.
3. 연소근로자와 부모, 양육자에게 적당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4. 모든 기업 활동과 시설에서 아동의 보호와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5. 제품과 서비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아동권리를 지원해야 한다.
6. 아동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마케팅과 광고를 사용해야 한다.
7. 환경과 토지의 취득, 사용과 관련하여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해야 한다.
8. 안전보장조치에 있어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지원해야 한다.
9. 긴급상황의 영향을 받는 아동을 보호하도록 도와야 한다.
10. 아동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지역사회와 정부의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3)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Baby Friendly Hospitals: BFH)

WHO와 UNICEF가 주창한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 프로그램은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의료기관을 격려하고 인정하여, 아기들이 엄마젖을 먹으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는다.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이 지켜야 할 성공적인 엄마젖 먹이기 10단계는 아래와 같다.

〈성공적인 엄마젖 먹이기 10단계〉

1. 병원은 의료요원을 위한 모유수유 정책을 문서화 한다.
2. 이 정책을 실행하기 위하여 모든 의료요원에게 모유수유 기술을 훈련시킨다.
3. 엄마젖의 장점과 젖먹이는 방법을 임산부에게 교육시킨다.
4. 출생 후 30분 이내에 엄마젖을 빨리기 시작한다.
5. 임산부에게 엄마젖을 먹이는 방법과 아기와 떨어져 있을 때 젖분비를 유지하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친다.
6. 갓난 아기에게 엄마젖 이외의 다른 음식을 주지 않는다.
7. 엄마와 아기는 하루 24시간 같은 방을 쓴다.
8. 엄마젖은 아기가 원할 때마다 먹인다.
9. 아기에게 인공 젖꼭지나 노리게 젖꼭지를 물리지 않는다.
10. 엄마젖 먹이는 모임을 만들도록 도와주고 퇴원 후 모임에 참여하도록 해준다.

한국에서는 대부분의 분만이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므로 출산 직후 의료기관에서의 모유수유 권장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모유수유를 권장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이 없어 의료기관들이 모유수유 권장 사업에 소극적이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임명하는 ‘아기에게 친근한 병원’도 의료기관들이 경영적 측면에서 이득이 없어 재평가를 기피하거나 철회하여 2009년 44개에서 2014년 현재 32개 병원으로 줄어들고 있다.

출산 직후 의료기관에서부터 모유수유에 대한 교육을 잘 받고 성공적으로 모유수유를 할 수 있도록 모유수유를 권장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책 마련이 필요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국내 이행 평가와 향후 추진방향

▮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11년 10월 7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권고사항 발표 후 우리나라의 후속조치 계획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7년 6월 19일 유엔아동권리협약 제5·6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둘째 정기적으로 권고사항에 대한 부처별 이행조치계획을 확인·취합 예정이고, 셋째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유엔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 권고사항을 홍보할 예정이다.

본 토론자는 첫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한 실천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둘째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한 실천적 지원방안

1. 일반이행조치(협약 제4조, 제42조, 제44조 6항)

1) 위원회의 기존 권고사항

① 국가인권위원회 내 아동권리 분과위원회의 설립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아동권리 분과위원회를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국

가인권위원회에는 상임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아동권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각종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심의하는 기능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② 체벌의 전면적인 금지

2011년 3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 8항에서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여 신체에 고통을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교실 뒤 서 있거나 팔 들고 서 있기, 팔굽혀 펴기, 운동장 돌기 등을 제시한바 있다.

그런데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하여 신체에 고통을 가하지 않은 방법의 범위가 불명확하다. 또한 도구나 신체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이 이를 이용하는 방법에 비해 더 안전하거나 덜 고통스럽다고 할 수 없고, 심각한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심리적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 즉 도구나 신체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체벌이 안고 있는 인권 침해적이고 비교육적인 요소가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아동복지법 제2조에 의하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부모나 학교와 학원의 교사에 의하여 아동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 체벌은 명백한 아동학대이므로 전면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아동에게 신체적·심리적 고통을 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대안적인 훈육 방식에 대한 모색과 이를 실현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조정

① 아동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새롭게 구성되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아동복지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 아동복지법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 ①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5.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2. 아동 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
- ④ 위원회는 제2항제4호에 따른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아동 업무와 청소년 업무의 통합

아동 업무와 청소년 업무의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동과 청소년으로 구분되어 분리되어 있는 정부 부처를 통합하고, 관련된 법령들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아동 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기본법은 아동복지법이다. 이에 반해 청소년 업무는 여성가족부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기본법은 청소년기본법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 아동 업무와 청소년 업무는 2개의 정부 부처가 2개의 기본법에 근거하여 진행되는 기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 한 가지 예가 연령의 구분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초기에 아동 업무와 청소년 업무를 통합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가족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 여성가족부를 여성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기존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던 보육 업무와 청소년 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었다. 아울러 기존의 아동 관련 법률들과 청소년 관련 법률들을 통합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처음으로 통합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었고, 아울러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의 통합 법안을 포함하여 아동과 청소년 관련 법률들을 통합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후 여성부가 여성가족부로 다시 명칭이 변경되면서,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업무가 여성가족부로 다시 이관되었다. 그 결과 아동과 청소년 관련 법률들을 통합하는 작업은 중단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원래는 보건복지부가 아동 업무와 청소년 업무를 모두 관할하고 있었는데, 여성가족부가 만들어지면서 보건복지부의 청소년 업무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업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중단되었던 아동과 청소년 관련 법률들을 통합하여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3) 자원의 할당

① 아동 예산의 증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조는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아동을 위한 예산 할당이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아동 관련하여 사용되는 예산과 사용되는 항목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가용자원의 최대한도까지 아동관련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달성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실효성 있는 아동복지가 실행되기 위한 아동복지 예산의 획기적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고, 적어도 OECD 평균 수준인 GDP 대비 아동복지 예산을 2.3% 이상으로 증대하여야 할 것이다.

2. 시민권과 자유(협약 제7조, 제8조, 제13-17조, 제19조, 제37조)

1) 출생신고

① 출생신고 관련법 개정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에 의하면,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하며, 가능한 한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아야 한다. 2. 당사국은 국내법 및 관련 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아동이 이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국적 없는 아동의 경우 보다 특별한 보장을 해야 한다.

따라서 아동의 출생신고 관련법을 개정하여, 모든 아동의 출생이 신고되도록 하고, 출생신고에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가 정확히 명시되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 자녀 등과 같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

① 사립학교 관련법 개정

특정 종교재단에서 설립한 학교나 시설에서 의무적인 종교행사 참석이 지속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2010년 4월 대법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제 종교교육은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와 사립학교의 교육의 자유가 충돌할 경우 양측의 권리는 모두 존중되어야 하며, 학교는 종교수업을 거부하는 학생을 위해 대체과목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특정 종교재단 설립 학교에서 강제 종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4조 3항에 의하면,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는 사립학교 관련법을 개정하여 아동의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가 전적으로 존중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특정 종교재단에서 설립한 학교나 시설에서 아동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대체 프로그램 개발 등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3) 학대 및 방임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폭력

① 아동학대 예방법의 제정

우리나라에서도 아동학대 예방법(Child Abuse Prevention Act)의 제정이 필요하다. 2000년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함께 아동학대와 관련된 규정들이 아동복지법에 포함되게 되었다. 2000년 이후 거의 매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아동학대 관련 규정들이 개정 또는 신설되고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예방법을 제정하고, 아동복지법 상의 아동학대 관련 조항들을 포함하여 아동학대의 정의, 신고, 대처 및 예방 등을 포함하는 아동학대 관련 법 규정들을 포괄적으로 담아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신설되는 아동학대 예방법에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가정, 학교와 학원 등에서 체벌의 전면적인 금지 조항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②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확대

현재 우리나라에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광역시·도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시·군·구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총 50여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각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8명 내외의 아동보호전문상담원이 아동학대의 신고, 대처 및 예방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모든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군·구에서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학대의 신고, 대처 및 예방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반드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③ 아동폭력 금지 노력

정부에서는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체벌, 학대, 방임, 학교폭력, 성폭력 등)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국가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아동에 대한 폭력 유형별로 별도의 정부 부처가 별도의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기 보다는,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국가전략을 수립하고, 모든 상황에서 모든 형태의 아동에 대한 폭력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④ 방임과 정서학대의 예방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아동학대 유형 중 방임과 정서학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방임과 정서학대의 사후대처와 사전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재학대신고 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학대 피해아동 및 가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황보고서는 교원, 의료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제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비신고의무자의 신고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아동학대 유형 중 방임과 정서학대의 예방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마련하고, 재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 피해자 및 가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비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신고의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및 신변보호 강화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3. 가정환경과 대안돌봄(협약 제5조, 제9-11조, 제18조 1항 및 2항, 제19-21조, 제25조, 제27조 4항, 제39조)

1) 가정환경상실아동

① 시설평가제도의 개선

아동복지법 제52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중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평가지표는 A. 시설 및 환경, B. 재정 및 조직운영, C. 인적자원 관리, D. 프로그램 및 서비스, E. 아동의 권리, F. 지역사회 관계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아동복지시설 평가지표에 서비스의 질, 관련 전문가들이 아동권리 등에 대해 받는 정기적으로 교육, 아동에게 제공되는 돌봄의 유형에 대한 평가내용들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② 가정위탁의 활성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제2차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보호자 없이 생활하는 소년소녀가정을 위탁가정으로 대체하고, 대안양육 확대 및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대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에서는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소년소녀가정을 위탁가정으로 전환하였고, 그 결과 위탁가정보호 아동의 수는 소폭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의 소년소녀가정세대를 조부모가 양육하는 대리양육 가정위탁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또한 대리양육 가정위탁의 양육능력이나 환경에 대한 적절한 사정과정 없이 소년소녀가정세대를 무조건적으로 대리양육 위탁가정으로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친인척위탁가정 및 일반위탁가정을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한데, 실질적으로 친인척위탁가정 및 일반위탁가정의 아동 수는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대안양육체계로서 가정위탁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가정위탁 후 사

후관리로서 위탁아동과 위탁가정에 대한 상담 등 역량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포함하여 전국적으로 18개소에 불과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입양

① 국내 입양의 활성화

2007년 이후 국내입양 아동 수가 국외입양 아동 수를 앞서고 있지만, 이것은 국외입양을 정책적으로 제한하는 정책(해외입양쿼터제 등)의 결과로서 국외입양 아동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결과이다.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대부분 국외입양에 의존하고 있다.

기존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2011년 8월 4일 전부 개정된 「입양특례법」으로 2012년 8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입양특례법」의 주된 내용은 국내입양의 활성화와 국내입양 우선추진 등 국내입양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입양특례법」의 여러 부분에서 국내입양 활성화가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국내 입양의 활성화는 지속적인 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 입양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등을 포함하여 입양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 국내에서 입양되어 성장될 수 있도록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② 중앙입양원의 역할 증대

그동안 입양 관련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입양기관별로 관리하는 정보가 기관 간 상호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입양희망 부모와 입양아동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입양아동이 자신의 정보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친부모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2009년 중앙입양정보원을 설립하고 2011년 6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입양특례법 제26조에 근거하여,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중앙입양원이 설립·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입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

하여 필요한 조직과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고, 아울러 입양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입양특례법 제26조(중앙입양원의 설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 활성화 및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중앙입양원을 설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중앙입양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③ 중앙입양원을 설립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중앙입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필요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2. 입양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
3.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연구
4.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 중앙입양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장애, 기초 보건 및 복지(협약 제6조, 제18조 3항, 제23조, 제24조, 제26조, 제27조)

1) 장애아동

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협력

장애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과 기존의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의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② 장애아동 통합교육·보육 실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서는 발달주기에 따른 장애아동 통합교육·보육 전면실시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생애주기(life-cycle)에 입각하여 장애아동 특수교육 정책과 구체적인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수교육의 전반적인 질 향상을 위해 특수교육 양성·배치와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를 조속히 확대해야 할 것이다.

2) 정신건강

① 아동의 정신건강 증진

위원회의 권고의 의미는 우리나라에서 최근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자살에 대해 많은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첫째, 아동의 정신건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기초로 하여 국가 차원의 아동정신건강 관리정책을 개발하고, 아동의 정신건강의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시스템 개발에 투자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자살위험감지 및 자살방지를 위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및 충분히 상의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보장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② 아동정신건강 서비스 확대

정부에서는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하여 조기발견 및 조기 개입을 해야 하며, 유병율이 증가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경우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된 아동중심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정신건강 검진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감소와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선별검사 결과로 인해 아동이 낙인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청소년 보건

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협력

위원회의 권고의 의미는 아동과 청소년의 흡연, 음주, 인터넷 중독, 낙태 등 아동과 청소년의 보건에 관련된 광범위한 권고안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위의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아동 업무 담당)와 여성가족부(청소년 업무 담당)의 긴밀한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② 정보와 교육 캠페인 확대

담배, 알코올 및 인터넷 중독이 야기할 수 있는 건강상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정보 및 교육 캠페인의 확대가 필요하다.

③ 성교육 프로그램의 체계화

학교 교육과정 내 성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4) 사회보장과 생활수준

① 헌법 34조의 개정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제34조에서 국가는 여성, 노인,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회에서 지적한대로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한 국가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헌법 제34조의 4항을 ‘국가는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로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②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구체적이고 의무적인 아동복지재원 배정관련 조항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 빈곤을 줄이고 모든 아동의 생활수준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에서 평등과 형평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③ 빈곤아동에 대한 대책 강화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확대, 드림스타트사업(Dream Start Project) 추진, 디딤씨앗통장(Child Development Account: CDA) 도입 등을 통하여 빈곤아동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는 도시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어 도농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고, 드림스타트사업은 전국 230여개 모든 시·군·구에서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디딤씨앗통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 예산에 따라 수혜자의 범위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 전체 빈곤아동 수와 급식지원대상 아동 수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되어 있지 않다. 특히 급식지원정책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의해 시행되고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급식지원비가 현실적 물가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2011년 7월 『아동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구분이 모호하고 관련 예산 및 지원체계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는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고, 도농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농촌 지역의 지역아동센터의 수를 확대하고, 드림스타트사업을 포함하

여 시·군·구 차원의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서는 절대적·상대적 아동빈곤율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실태파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급식지원 부처의 이원화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급식지원 비용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II. 우리나라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

1. 아동복지의 비전: 아동권리의 보장

‘아동권리의 보장’을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비전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 CRC)의 비준 국가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유엔에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 비준국가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협약 당사국으로서 매 5년 마다 협약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의무가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7월 제3·4차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는 2011년 9월-11월 국가보고서를 심의하고 권고사항을 발표하였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은 총 94개로서, 관련 부처와 기관은 12개에 이른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 원칙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무차별의 원칙으로서, 아동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국적 등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차별받지 않고, 협약에 규정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둘째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으로서,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의 보장 원칙으로서, 모든 아동은 생명에 관한 고유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당사국은 아동의 생존과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가능한 한 최선의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넷째 아동의 의사존중의 원칙으로서, 아동의 의사와 견해를 존중하고 수준 높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권리(Child Right)는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생존권으로서, 아동이 생명을 유지하고 최상의 건강과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이다. 즉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 등이 이에 속한다. 둘째 보호권으로서, 아동이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고문,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아동에게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이다. 셋째 발달권으로서, 아동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권리이다. 즉 정규적·비정규적 교육을 포함하여 교육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과 양심과 자유를 누릴 권리 등이 이에 속한다. 넷째, 참여권으로서, 아동이 자기의 나라와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들에 대해 발언권을 지니며, 단체에 가입하거나 평화적인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이에 속한다.

따라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준국가로서,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비전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가지고 있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보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2.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의 강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사회복지의 기본 방향은 지역사회에서의 사회복지실천이었다. 즉 사회복지 예산의 지방 이양과 시·군·구 단위의 민·관 협력체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복지 전달체계의 구축에 따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실천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아동복지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이명박 정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정부 지원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는 교육의 기능만을 수행하던 기존의 공부방의 역할에서 더 나아가, 지역사회 빈곤아동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희망스타트사업은 이명박 정부에서 드림스타트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추진되었다. 희망스타트사업과 드림스타트사업은 지역사회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집중적인 사회투자의 개념에 입각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보건복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지역사회 아동의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미국의 Head Start, 영국의 Sure Start와 유사하게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민간기관인 어린이재단이 중앙일보와 함께 시작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발전한 We Start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역사회에서 아동 중심의 사전예방적 통합 서비스 지원체계를 도입하고, 빈곤아동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능력 등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3. 아동학대의 예방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에 대한 조항들이 추가되었고, 그 결과 아동학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전달체계가 구축되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었고, 이후 모든 광역 시·도와 많은 수의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많은 외국의 경우처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특히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동안 아동복지법에 아동학대에 관련된 많은 조항들이 추가되었고, 현재 40여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하는 아동보호전문상담원들의 노력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대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과 성인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후대처를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광역 시·도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시·군·구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연계체계를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시·군·구 단위에서 아동보호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즉 시·군·구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

관이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와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즉 지역 사회의 의료, 정신의료, 법률, 경찰, 교육 및 사회복지기관들과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우리 모두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예방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현재 아동학대에 대한 법조항들은 아동복지법에 포함되어 있는데, 아동학대의 사후대처와 사전예방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학교와 교사를 활용한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하다. 교사는 신고의무자로서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아울러 학교는 피해아동과 가정에 대한 정보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공유하고 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학교의 정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 및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정서적 지지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하다. 아동과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학대가 이미 발생한 가정에 대한 개입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을 예방하고, 아울러 아동학대 발생위험이 높은 위험집단을 선정하여 이에 대한 집중적인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4. 아동양육시설의 기능 다양화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하면, 아동양육시설은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현재 270여개의 아동양육시설에서 17,000여명의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다.

아동양육시설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대한 전통적인 시설보호 양육체계에서 벗어나,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시설 환경의 구축 및 지역사회 아동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에 맞는 기능 다양화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아동양육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시·도와 시·군·구에서는 아동양육시설이 기존의 집단생활시설 형태의 운영에서 벗어나 가정형 소수사 형태로 전환·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도와 시·군·구에서는 아동양육시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특성 및 아동육구에 적합한 이용시설의 기능을 추가하여 기능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아동양육시설의 기능에 방과후 보호, 아동상담, 일시보호, 가정위탁, 입양, 급식, 프로그램 제공 등의 기능을 추가하는 아동양육시설의 기능 다양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동양육시설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양육 기능에 덧붙여 지역사회 아동을 위한 종합서비스시설로 운영할 필요가 있거나 운영이 가능한 시설을 적극 지원하고, 필요한 예산, 인력, 시설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5. 예방적 아동복지의 실시

기존의 문제가 발생한 후에 개입하는 사후개입적 아동복지에서 문제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사전예방적 아동복지로 우리나라 아동복지의 중심축을 옮겨야 할 것이다. 사전예방적 아동복지는 아동이 가정에서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양육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크게 소득지원과 서비스의 제공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첫째, 소득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저소득가정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서비스의 제공은 보육서비스, 아동상담과 가족상담,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실종아동의 보호, 지역사회 아동보호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다양한 아동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아동복지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아동복지는 ‘모든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개인, 가족, 집단, 지역사회의 문제와 욕구에 대해 역량강화적인 문제해결 접근방법으로 개입하는 종합적인 전문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1조에서는 아동복지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는 아동복지의 기본 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2조 4항에서는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항은 아동권리의 보장과 아동복지의 증진이 함께 추구되어야 하고, 나아가 이를 위해 아동은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즉 아동권리와 아동복지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할 공동 목표인 것이다.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이 된 우리나라는 협약의 이행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복지 체계에 커다란 변화를 주고 있다. 특히 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우리나라 아동복지에서의 아동권리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한 아동복지 관련 법률들의 제정과 지속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아동복지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아동복지 정책의 수립과 실시와 더불어, 아동복지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기관, 입양기관, 어린이집 등 우리나라의 모든 아동복지 실천현장에서 아동권리의 실제적 보장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함께 노력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2010). 제58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3·4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회기 제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 대한민국정부(1999).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제2차 국가보고서.
- 대한민국정부(2008). 제3·4차 유엔아동권리협약 통합 국가보고서.
- 유엔아동권리위원회(201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결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권고사항.
-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2010). 제3·4차 유엔아동권리협약 민간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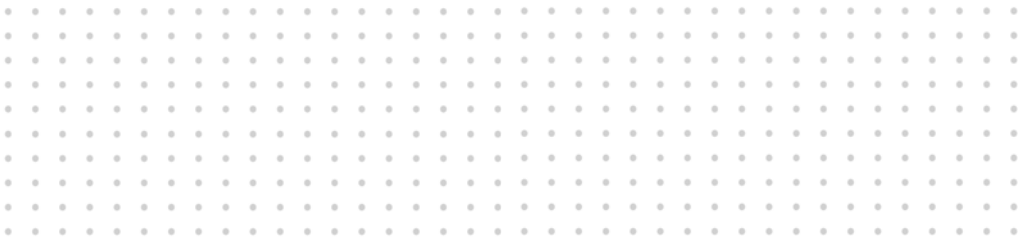
■ 세션 2: 발표



국제법,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무국적 아동의 확인, 등록 및 기록

채현영

(UNHCR 한국대표부 법무담당관)



이주아동 정책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2014년 11월 20일

국제법,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무국적 아동의 확인, 등록 및 기록

더크 헤베커
유엔난민기구 대한민국 대표부 대표



전 세계의 무국적자 현황



- 유엔난민기구의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약 1,000 만명의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 무국적자가 있는 것으로 예상됨.
- 유엔난민기구가 2013년 75개국에서 취합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말 기준 전 세계적으로 약 350 만명의 무국적자가 있으며, 이 중 약 45%는 아시아에 거주함.
- 대한민국의 수치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이와 관련된 조사에 의하면,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 무국적 이주민들과 자녀들의 지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2

전 세계 무국적자의 1/3이 아동이며, 이들 대부분은 이주민이 아님.



3

국제법상에 있어서의 무국적자의 정의



“어떠한 국가에 의하여도 그의 법률의 시행상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는 자.”

-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조 제1항
- 대한민국은 1962년 8월 22일 위 협약에 가입함.

무국적 아동 이주민들의 보호에 있어서 주요 우려점들



보호 우려

1. 무국적 신분에 대한 인정 불가
2. 기록이나 문서가 없어서, 어떠한 국가와의 연관성도 증명할 수 없음
3. 신분 증명 부재
4. 외국인 보호소 수감, 의료시설 및 교육 기회로의 접근이 어려움
5. 국적을 가질 권리를 향유할 수 없음

해결책

- 무국적자 심사 절차 시행
- 출생등록과 출생증명서의 발급
- 신분 및 여행 증명서 발급
-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주요 권리와 보호를 포함한 합법적 신분 또는 이민 지위
- 국적의 인정이나 귀화를 용이하게 함

5

출생등록 과 출생증명서의 발급



- 출생등록이란, 국가의 행정절차에 따라 아동의 출생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아동의 존재에 대한 영구적이며 공식적인 기록임. 출생등록은 국적이나 이민 지위를 부여하지는 않으나, 아동의 법적 신원을 수립함.
- 출생증명서란, 출생 등록을 입증하는 국가에서 개인에게 발행하는 문서이며, 부모의 이름, 출생일, 출생장소 및 부모의 국적을 포함함.
- 차별없이 그리고 국적이나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는 것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 7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4조에 규정된 의무임.

6

무국적자의 신분 및 여행 증명서 발급



- 신분 증명서는, 유효한 여행 증명서가 없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무국적자들에게 발급되어야 함. (제 27조,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 여행 증명서는,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무국적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영역 밖으로 여행하는 목적으로 발급되어야 함. (제 28조,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 아시아 지역의 많은 1954년 협약의 체약국 및 비체약국들이 위와 같은 증명서의 발급 절차를 수립함. (브루나이, 다루살람, 싱가포르, 태국 등.)

7

무국적 심사 절차와 합법적 지위



- 무국적 심사 절차는 이주의 맥락에서 무국적자를 확인하고 신청인이 어떠한 국가에 의해서 그의 법률의 시행상 국민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무국적자로 확인된 신청인들은 안정적인 합법적 신분을 부여받아야 하며, 이는 신분증명서와 차후 귀화가능성을 포함함.
- 무국적 심사 절차는 프랑스(1952), 이태리(1970년대), 스페인(2001), 라트비아(2004), 헝가리, 멕시코(2007), 몰도바, 그루지야, 슬로바키아, 필리핀(2012), 터키와 영국(2013)등에서 도입하였음.
- 무국적 심사 절차는 1954년 협약의 체약국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이주의 맥락에서 무국적 아동의 보호를 용이하게 함.

8

감사합니다.



Forum on the Rights of Migrant Children in the Republic of Korea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Seoul, November 2014

International Law and the identification, registration and documentation of stateless children in the Republic of Korea

Mr. Dirk Hebecker
UNHCR Representative to the Republic of Korea



Statelessness across the world



- UNHCR estimates 10 million non-refugee stateless persons globally.
- UNHCR reported in 2013 around 3.5 million stateless persons globally at end 2013, with baseline data in 75 countries. Over 45 percent reside in Asia.
- No figure is reported for the Republic of Korea. Research indicates that there is a population of non-refugee stateless migrants and their children, whose status has often not been recognised.

2

Over 1/3 of the world's stateless are children although the vast majority are not migrants



3

Definition of a Stateless Person in International Law



“A person who is not considered as a national by any state under the operation of its law.”

Article 1(1), 1954 Convention on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The Republic of Korea acceded to the Convention on 22 August 1962

Key protection risks for stateless child migrants



Protection risk

Solution

1. No recognition of their stateless status	Statelessness Determination Procedure
2. No record or documentation showing a link to any State	Birth registration and the issuance of birth certificates
3. No proof of identity	Identity and travel documentation
4. Immigration detention, lack of access to healthcare, education	Legal or Immigration status including key rights protections
5. Prevented from enjoying the right to a nationality	Facilitating recognition of nationality or naturalisation.

5

Birth Registration and the issuance of birth certificates



- **Birth registration** is the official recording of the birth of a child through a state's administrative process. It is a permanent and official record of a child's existence. Birth registration does not grant nationality or immigration status, but does establish a child's legal identity.
- A **birth certificate** is a personal document issued by the state to prove birth registration, including the parents' names, date, place of birth and parents' nationality.
- Birth registration of all children *without discrimination and regardless of their nationality or legal status* is mandated by CRC, Article 7 and ICCPR, Article 24.

6

Issuance of Identity and Travel Documentation to Stateless Persons



- **Identity papers** should be issued to any stateless person in the Republic of Korea's who does not possess a valid travel document (Article 27, 1954 Convention)
- **Travel documents** to be issued for the purposes of travel outside the territory to stateless persons lawfully staying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28, 1954 Convention)
- Many 1954 Convention States Parties and non-signatory States in the region have established such documentation regimes (e.g. Brunei Darussalam, Singapore and Thailand)

7

Statelessness Determination Procedures and Legal Status



- SDPs aim to identify stateless persons in a migratory context and examine whether an applicant is treated as a national by any State under the operation of its law.
- Applicants identified as stateless should be granted a secure legal status, including identity documentation, with the prospect of subsequent naturalisation.
- SDPs have been established in France (1952), Italy (1970s), Spain (2001), Latvia (2004), Hungary, Mexico (2007), Moldova, Georgia, Slovakia, Philippines (2012) Turkey and United Kingdom (2013).
- An SDP is the most effective way for States to realize their obligations under the 1954 Convention and can facilitate the protection of stateless children in a migration context.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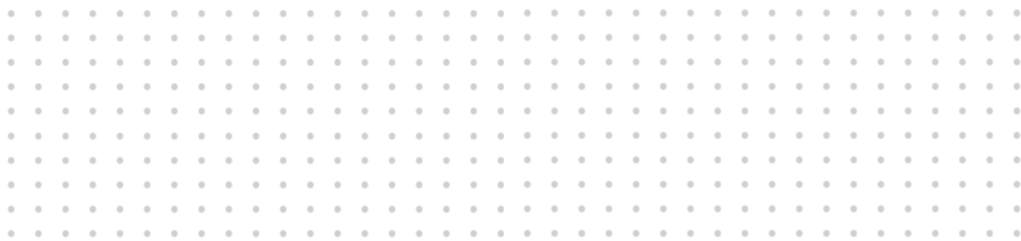
■ 세션 2: 토론



무국적 아동의 신분증명 보장을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 모색 토론편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무국적 아동의 신분증명 보장을 위한 제도적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 김희경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장)

현재 국내에 무국적 아동이 얼마나 있는지는 실태조사가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탓에 그 정확한 숫자가 알려져 있지 않다. 법무부 통계를 보면 2014년 7월 기준 흔히들 ‘불법 체류’라고 부르는 미등록 외국인 수는 18만 7천명이고 이 가운데 약 1.5% 수준인 2천~3천명이 18세 이하 아동일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실제로 미등록 외국인의 숫자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일부 단체에서는 미등록 이주 아동의 숫자가 1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추산하기도 한다.

아동이 무국적자가 되는 이유는 태어나면서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고 국적을 부여받지 못해서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국제이주가 활발해진 최근에 발생한 일만은 아니다. 얼마 전 경인일보가 연재한 기획시리즈 ‘국적 없는 아이들’을 보면 무국적 3대의 이야기도 나온다. 부모의 대를 이어 무국적자의 불안한 삶을 사는 이주노동자가 결혼하여 낳은 아이 역시 무국적자인 것이다. 1세대 미등록 아동이 성장하는 20년 간 한국사회는 아무 것도 변하지 않았다. 지금 이대로라면 숫자가 더 늘어난 무국적 2, 3세대는 1세대의 삶과 비슷한 궤적을 밟게 될 것이다. 그래도 좋은지, 한국사회가 대답해야 할 차례다.

신분증명의 필요성

한국이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 인간의 출생을 공적으로 기록하는 출생등록은 모든 신분확인 기초다.

신분확인이 되지 않은 아동은 성장하면서 필수적으로 누려야 하는 건강권, 교육권을 향유할 수 없다. 병원 치료 혜택을 받지 못할 뿐더러 국적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도 좀처럼 갈 수 없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입학은 가능하지만 취학 통지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학교를 보내야 할지 알 수 없으며 학교장 재량이기 때문에 입학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다. 학교를 다녀서 초중등 의무교육을 마쳐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출생신고조차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학력이 자신의 것임을 입증할 공적인 방법이 없고 취업도 불가능하다. 나이도 증명하기 어려워 미성년자가 어른에게 해당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우려도 있고,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될 위험도 높아진다.

신분 불안정을 피하기 위한 편법 대응책도 늘었다. 한국 국적법은 외국인이라도 고아일 경우 한국에서 출생하면 국적 취득을 인정해주는데 아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아이를 버려 고아로 만드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외국인 아기도 늘어났다. 또는 가짜 입양을 보내거나 호적을 위조해 브로커들이 적발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이주아동의 출생신고는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해주는 증명에서 더 나아가 이주아동이 건강권과 교육권을 누릴 수 있는 전제가 되어야 한다.

미등록 이주 아동의 출생신고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종종 미등록 이주아동까지 왜 한국사회가 돌보아야 하느냐는 반론을 듣는다. 우리가 아동에게 양육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할 때 그 양육과 보호의 책임은 부모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에게도 책임이 있고, 이는 아이가 미등록 이주아동이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국사회의 일원이 되었다. 미등록 이주 아동의 체류 자격은 아이의 책임이 아니다. 그런 아이에게 언제 어느 곳에서 살든 아동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건강권과 교육권의 행사를 박탈함으로써 체류의 책임을 묻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국사회가 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되레 한국사회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출생등록제 도입의 검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한국정부에 대한 제3·4차 최종권고에서 이주아동에 대한 출생등록 보장을 권고한 바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에서도 프랑스, 아일랜드, 멕시코 등 9개의 국가가 대한민국의 출생등록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하였다.

한국에서 출생신고 사항을 정하는 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국민’의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등록과 증명을 관할하는 법이고 이주아동의 경우 ‘국민’이 아니므로 이들을 위한 출생등록제도가 없다.

그러나 국제인권법 상 출생등록은 국적부여와 별개이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이 제정될 당시 합의된 내용으로 국적부여는 국내법에 의거한 최고의 인정(recognition)이며, 출생등록은 기본적인 권리로서 국적부여와 별개일 수 있다는 점이 논의되었고, 실무적으로 국적과 출생등록은 분리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제7호에서도 아동의 생존, 발달 및 모든 아동을 위한 질적 서비스에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발의를 준비 중인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에서 주장하는 출생등록 또한 국적과 연계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세이브더칠드런이 2013년 발표한 『이주배경아동의 출생등록』(이하 출생등록 연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난민 아동뿐만 아니라 난민 신청자 자녀들, 미등록 이주아동들 또한 자국 대사관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강제추방의 두려움 때문에 자국 정부에게 출생등록을 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이러한 아동들은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나 구청이 발급한 출생신고 수리증명서를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증명서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 발급 증명서와 구청 발급 신고수리증명은 신분을 증명하는 공적 자료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이브더칠드런이 발표한 출생등록 연구에서는 출생신고 수리증명을 보완, 발전하여 ‘특종신고편철’ 내 또는 이주아동을 위한 별도의 ‘등록부’ 규정을 두어 출생을 증명해주도록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이 제정되고 그 안에

출생등록의 필요성에 대한 기본 조항이 포함된다면 그에 따라 국적 부여와 직접 연계되지 않은 공적 출생증명 제도의 마련이 가능해지리라고 기대한다.

이주아동의 출생이 등록되기 전에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공무원의 통보의무 조항이다. 통보의무 조항이 적용될 경우 자녀의 출생신고를 위해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출생등록 뿐 아니라 이주아동권리보장기본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모든 권리들이 통보의무조항에 가로막혀 실현 불가능한 종이 상의 권리에 불과하게 될 위험이 있다. 이주아동의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하고 권리 실현의 보장을 위해 아동의 교육, 의료접근권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통보의무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국제법,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무국적 아동의 확인, 등록 및 기록”에 대한 토론



Ⅰ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이경숙

오래 전에 한나 아렌트가 지적한 바와 같이 무국적자들은 ‘작은 권리’의 담지자들이 아니라 ‘권리를 가질 권리’에서조차 배제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인권의 지평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대상이다.

최근 법무부에 국적·난민과가 설치되는 등 제도적인 개선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한민국에서 무국적자는 여전히 정책과 담론, 통계상으로 ‘실재하지 않는 존재’들이다. 주류 정책과 담론에서 소외되어 있으며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그들이 다양한 인권 침해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무국적자들은 신분 증명 부재로 인해 국민이나 외국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향유하기 어렵다.

발제문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무국적자들 가운데서도 좀 더 주목해야 하는 대상은 아동들이다. 주지하다시피 전세계 무국적자의 1/3은 아동이다. 그리고 그들의 상당수는 비이주민들이다. 무국적 아동들의 경우, 공적인 보육 및 교육, 그리고 의료 및 복지 기회로부터 전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무국적 아동과 관련한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실태 파악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어떠한 국가에 의하여도 그의 법률의 시행상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는 자”를 무국적자로 규정하는 국제 규범과 달리 국내법상 무국적자의 정의는 불분명하다.

한국에서 결혼하는 난민 가족 가운데 약 30%가량만이 자국 대사관에 혼인 신고를 하고 출입국 사무소에 그들 자녀들의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난민들의 자녀 대부분은 무국적자로 추정된다. 그러나 난민과 연관되지 않은 무국적자의 경우 실태 파악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발제문이 지적하다시피 “수치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난민에 해당하지 않는 무국적 이주민들과 자녀들의 지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들이 존재”함은 분명하다. 아마 그들 중에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 가족의 자녀들이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추론된다. 그들은 ‘무국적자’ 지위를 인정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식적인 무국적자는 아니나, 출생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실제적으로 무국적자에 해당하는 위상을 갖는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비난민 무국적자 아동의 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은 2013년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 수행한 ‘외국인근로자 가족의 인권 상황 실태 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우리 센터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대한민국에서 근로에 종사하는 구성원이 포함된 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 가족’을 규정, 경기도내에 거주하는 168가정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 바 있다. 조사 대상 가족 가운데 54.8%는 미등록 상태였다. 자녀와 동거하는 것으로 응답한 132가정 가운데 절반 이상이 미등록 지위를 갖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데, 그들 자녀 가운데 58.3%는 한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응답되었다. 그들 대부분은 정보의 부족이나 신분 노출 위협 등으로 인해 시기를 놓쳐 미등록이나 무국적 상태에 빠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발제문은 무국적 아동 이주민들의 보호에 있어서 주요 우려점들을 “무국적 신분에 대한 인정 불가, 기록이나 문서가 없어서, 어떠한 국가와의 연관성도 증명할 수 없음, 신분 증명 부재, 외국인 보호소 수감, 의료시설 및 교육 기회로의 접근이 어려움, 국적을 가질 권리를 향유할 수 없음’ 등으로 정리하였다.

실질적으로 무국적 상태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에게, 이러한 우려점들은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현실에 다름 아니다. 특히 ‘의료 및 교육(과 보육)’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조사에 응한 외국인 근로자 가족 자녀들의 40.5%만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19.8%만이 시·군에서 보육료를 지원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학령기 아동 가운데 36.0%가 공교육을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2.7%는 자녀 입학 시 교육청이나 주민센터로부터 입학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답해주었다. 학교 측으로부터 자녀 입학 거부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는 응답자도 21.7%에 달했다. 응답자의 60.1%는 시·군에서 제공하는 무료접종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국적자 및 무국적 아동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등록 제도를 개선하고 무국적 발생 사유를 최소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 조사는, 그와 더불어 실질적인 무국적 아동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무국적이거나 미등록 지위 여부와 관계없이 그들을 공적인 사회 서비스 체제에 포용할 수 있는 조치의 시행이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그와 관련 보육 및 교육, 의료 등에서 대상 아동의 출입국 지위 및 국적여부를 묻지 않고 ‘모든 아동’을 서비스 대상으로 규정하는 보편적인 서비스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더불어 미등록이나 무국적 아동 발생 방지를 위한 외국인 아동 등록제도의 개선 방안이 모색될 수 있어야 한다.

주목할 것은 무국적자를 포함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일반 아동과 다를 바 없는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법제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료예방접종 실시, 초·중·고등학교 입학 허가, 교육비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선례들이 다른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해나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발제문이 제안하는 바와 같이 무국적자들에게도 “출생등록과 출생 증명서를 발급”하고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주요 권리와 보호를 포함한 합법적 신분 또는 이민 지위”를 인정하는 일이다.

대부분의 국가 보조금 지급은 전산시스템 등록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급자의 신분 식별을 위한 고유 번호 부여없이 교육 및 의료를 포함한 사회 보장 서비스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등록 비정규 체류자들의 경우 신분의 노출 등을 극도로 꺼린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출입국 지위와 관련없는 사회 보장 등록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 일 수 있다. 교육부가 시행중인 성별과 생년월일만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 자체 관리 번호를 부여함으로써 포괄적인 예방접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방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보육 아동에게 고유식별번호를 부여 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하고 있다.

무국적자 아동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등록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등록 여부와 관계없는 사회 서비스 이용 권리 보장 방안이 동시에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고유번호 부여는 필수불가결한 방안이다. 이 고유번호가 반드시 서비스 이용 등 권리보장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무국적 아동의 지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어야 함은 분명하다. ‘권리를 가질 권리’에서 조차 배제된 무국적 아동들에게 ‘작은 권리’나마 보장해줄 수 있는 고유한 사회보장 식별체제, 그것이 어떤 방식이 되어야 할까는, 지금부터 고민해야 하는 쉽지 않은 주제다. 그러나 결코 미뤄질 수 없는 절박한 주제임에도 분명하다.

참고문헌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13. 『경기도 외국인근로자 가족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3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13. 『2013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다문화정책심포지엄 - 외국인근로자 가족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자료집.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14. 『외국인 인권 관련법 제개정을 위한 전문가 공청회 -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발달권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자료집.
-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2014. 『외국인 인권 관련법 제개정을 위한 제2차 전문가 간담회 -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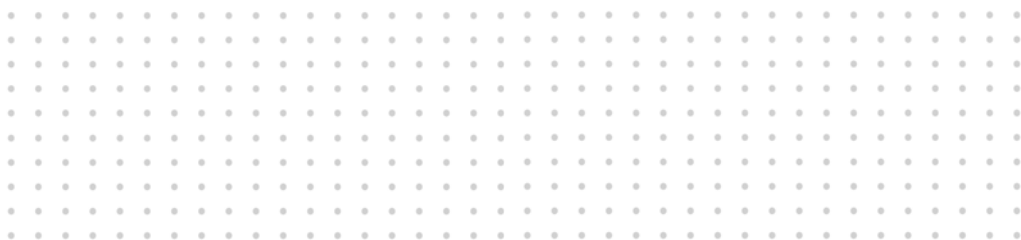


■ 세션 3: 발표



중도입국 이주아동의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동반·중도입국 자녀의 교육지원 수요 분석을 중심으로 -

성상환
(서울대학교 교수)



중도입국 이주아동의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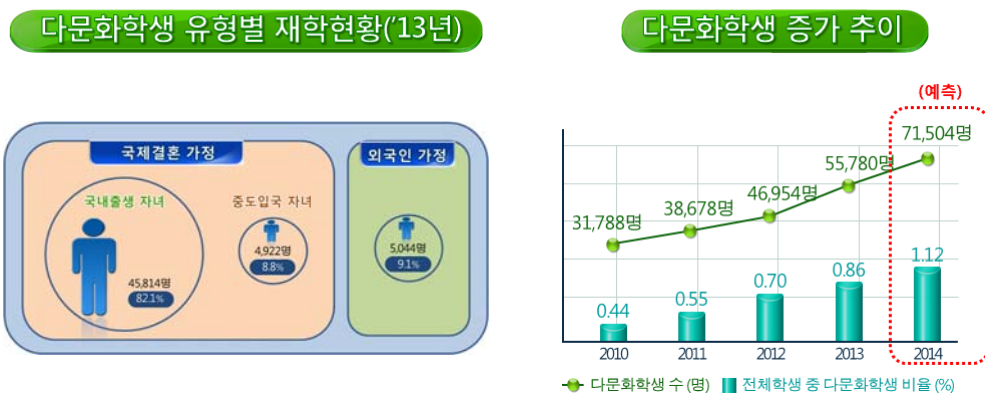
- 동반·중도입국 자녀의 교육지원 수요 분석을 중심으로 -

| 성상환 (서울대학교 교수)*

1. 도입

2014년 교육부는 다문화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올해에 전체 학생수 대비 1%를 상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3년 통계에 의하면 그 중 동반·중도입국 자녀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정자녀의 일부분으로서 그 취학아동수가 약 5,000명에 이르고 있다(아래 2013 교육부자료). 혹자는 실지 미취학아동이나 청소년을 고려하면 동반 중도입국아동들이 만 명을 훨씬 넘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표 1〉 다문화학생 유형별 재학현황과 다문화학생 증가추이



* 서울대학교 독어교육과 교수, 전 중앙다문화교육센터 소장: sseong@snu.ac.kr

〈표 2〉 '12~'13. 다문화학생 수 현황(학교급별: 교육부자료)

(단위: 명)

구분	2012년도				2013년도			
	초	중	고	계	초	중	고	계
한국출생	29,303	8,196	2,541	40,040	32,831	9,174	3,809	45,814
중도입국	2,676	986	626	4,288	3,065	1,144	713	4,922
외국인자녀	1,813	465	348	2,626	3,534	976	534	5,044
계	33,792	9,647	3,515	46,954	39,430	11,294	5,056	55,780
(비율)	(74.1%)	(19.7%)	(6.2%)		(70.7%)	(20.3%)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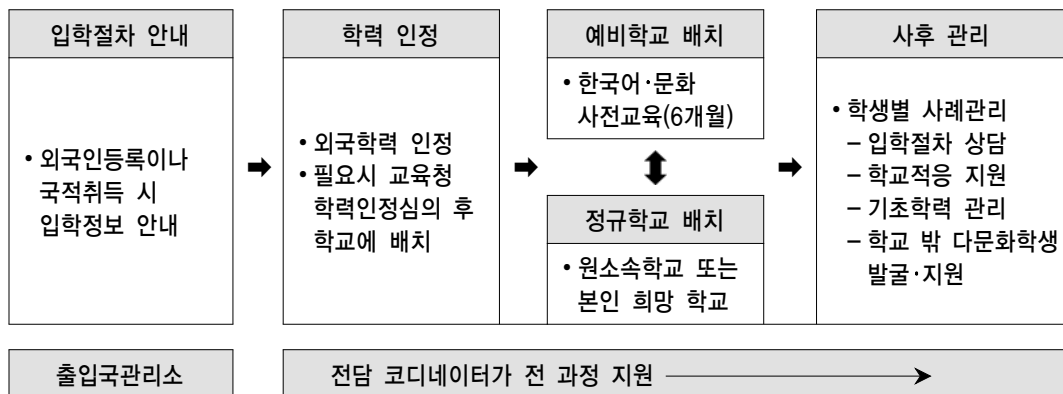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의 경우, 결혼이주자부모를 통해 한국에서 출생한 학생들과는 매우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어 동일한 방식의 교육프로그램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에 적합한 형식의 교육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원하는 교육지원에 대한 정확한 수요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성상환 외 2010 참조)에서는 동반·중도입국 자녀의 현황파악을 다양한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동반·중도입국 자녀가 소속되어 있는 다문화가정자녀를 위한 대안학교나 또는 일선학교의 특별학급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담당 교사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동반·중도입국 자녀가 입국초기 한국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문화교육의 수요를 파악하였다.

2. 중도입국 이주아동에 대한 교육지원 수요분석

본 연구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내용은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2010년도 말 연구를 진행할 당시에도 기존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에서 다문화가정실태조사,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의 현황을 파악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명확히 제시한 자료가 없어 주어진 연구기간동안 기존 연구 자료에서 나타나는 부분으로, 동반·중도입국 자녀의 현황을 유추하여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현재도 정확한 통계는 산출하기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오성배외 2013 참조). 따라서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을 바탕으로 그들의 실태를 살펴보는 것이 교육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에 있어 최우선시 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무부와 교육부의 역할분담을 통한 부처 합동공조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2010년 당시 법무부에서는 외국인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특별귀화 신청자 및 부·모의 생년월일 등을 파악하고 제공하고, 교육부에서는 NEIS를 바탕으로 동반·중도입국자녀의 재학여부를 조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법무부에서 특별귀화 신청자 자료를 시·도교육청에 전송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NEIS 교육업무시스템을 통해 학교의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을 파악해서 전송을 한다. 마지막으로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의 전송자료와 NEIS 서버탐재자료의 확인 작업을 통해서 동반·중도입국자녀의 재학현황을 확인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하였다. 이를 통해 2012년 초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계체제를 제시하였다(교과부 2012년 「다문화학생 교육 선진화 방안」 보도자료).

〈표 3〉 <다문화학생 입학 지원 절차>



교육부는 2012년에 다문화학생(특히 중도입국자녀)이 정규학교에 배치되기 전에 사전 적응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비학교를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었고 이에 따라 다문화학생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예비학교에서 6개월 정도의 한국어와 한국문화 등 교육을 받고 정규학교로 입학이 가능하게 되었다. 당시 예비학교를 전국적으로 (11)3개교(서울, 부산, 광주)에서 (12) 26개교로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예비학교들은 지속적

으로 증가하여 13년 52개교에서 14년 80개교로 늘어나 중도입국학생 등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을 집중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4년에는 학력서류 구비가 어려운 중도입국 학생에 대해 원활한 학력심사가 이루어지도록 7개 언어의 학력심의 평가지를 개발·보급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표 1>에 나타나듯이 출입국관리소에서 외국인 등록, 국적 취득 시부터 입학 절차 안내가 강화되고, 전국교육청에 다문화 코디네이터를 두어 입학 상담부터 학교 배치, 사후관리까지 입학의 전 과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다문화 코디네이터는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학교 밖 다문화학생을 적극 발굴하고 학교 입학을 지원하는 등 역할도 담당하게 되었다.

또한 다문화학생의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2012학년부터는 서울, 충북 지역에 직업 교육 대안학교인 다솜학교가 운영되고 2013학년도부터는 인천 지역에서도 추가로 운영이 되고 있다. 또한 다문화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주말이나 방학 등을 이용하여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교육 지원기관'을 종전 3개 기관에서 2014년에는 10개 기관으로 확대하기로 되어있다(참고: '13) 부산정보관광고(요리), 경기신흥대(미용·요리·자동차정비), 서울다솜학교).

동반·중도입국 자녀들 가운데에는 학령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중등의 경우 입학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가 쉽지 않다. 대부분의 한국의 일선학교가 13세 이후 입국하는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의 교육에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더 불어 다수의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이 법적으로 한국 국적을 얻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어 이러한 경우 학교교육을 원활하게 받는 것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한다. 한국에서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님으로 중도입국청소년이 고등학교에 대한 진입장벽이 어려울 경우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오성배 외, 2013).

또한 지금까지는 주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 지원이 이뤄진 것에 반해 초·중등 간의 교육 지원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중도입국아동들의 진학률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문화예비학교와 지역의 거점학교를 제대로 연결하여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서는 인근학교와의 연계 등의 활동을 바탕으로 거점학교 참여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의 선택 가산점을 통해 거점학교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함께 요구된다.

두 번째,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의 경우 일반다문화가정자녀들과는 특성화되고 차별되는 교육프로그램의 추가 개설이 요구된다.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의 경우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가정 학생들과는 매우 다른 차이를 보인다. 또한 동반·중도 입국을 한 연령에 따라라도 학생들마다 학교 교육에 적응하고 생활하는 것에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이들의 경우 모국에서 학교교육을 받고 온 경우도 있고 한국에 오기 전 이미 국가정체성이나 자아정체감이 모국에서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형성되고 발달되었기 때문에 한국에 온 초기 입국 당시 혼란감과 불안이 높아진다. 초등학교 학령을 기준으로 13세 이전에 한국에 온 동반·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단기간의 사회화 교육과 다문화교육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안정감을 되찾고 생활에 적응을 손쉽게 하는 반면에, 13세 이후의 학생들의 경우,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생활하는 것에 있어 매우 더딘 움직임을 보인다고 한다. 또한 이들 가운데에는 어머니가 한국으로 먼저 결혼을 통한 이주를 한 경우 상당기간 세심한 가정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며 심지어 본국에서 공교육을 받지 못하며 방치된 경우도 보고되고 있다. 이렇게 입국 후 쉽게 한국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새로운 사회에 대한 불안감과 혼란감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은 채 떠돌거나 가정 내에서 가사일을 도우면서 사회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이 동반·중도입국 자녀는 기존에 다문화가정자녀들로 국한시키던 결혼이주자나 노동이주자 자녀 중 한국에서 태어난 학생들보다 보다 더 폭넓은 관점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체성 형성과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이미 모국어가 적용된 학생들에게는(대부분은 중국에서 온 아이들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이중언어교육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동반·중도입국자녀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령에 따른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이 재편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교육프로그램이 일정한 연령에 해당하는 학생을 기준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편적인 틀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동일하게 할 경우 동반·중도입국들이 교육과정에 맞춰 적응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동일한 다문화가정자녀라 하더라도 각각의 연령과 특성에 따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동반·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모국에서의 언어와 문화를 이미 습득하고 그것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비해서 교육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가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동반·중도입국자녀를 위한 취학 전 예비과정 운영(안)의 예시이다.

〈표 4〉 동반·중도입국자녀를 위한 취학 전 예비과정 운영(안)

(교육과학기술부, 2010)

- 프로그램: 한국어교육, 정체성 함양교육, 교과학습 및 생활문화교육, 개인·가족 상담 등

영역	내용
한국어교육	기초한국어
	학교생활을 위한 한국어
교우관계 및 정체성	교우관계 형성 프로그램(초·중등)
	정체성 향상·상담 프로그램(초·중등)
생활문화	진로지도
	현장학습
	교과지도
가족상담	가족단위 상담 및 교육

- 교·강사: 다문화교육 예비학교 교사 등을 과정 책임교사로 지정하고, 교사자격 소지자, 이중언어 강사, 대학생 등이 보조

- 운영시간: 예비과정 전담교사 배치가 가능(교육청에서 발령 대기 교사 활용/ 기간제 교사 채용 등) 하고 유휴 공간 등이 있는 경우, 전일제로 운영
 ※ 교육인력 및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방과후 과정으로 운영

- 장소: 다문화교육 예비학교 내 다문화교실 등 유휴교실에서 운영

- 교재: 중앙다문화교육센터·교육청 개발 자료 등 활용

- 학적(소속): 학생은 전·입학을 통해 거점/중점학교 또는 거주지 인근 학교에 학적을 생성하고, 예비과정에 참여

- 과정규모: 1개 과정(학급)은 20명 이내로 운영

- 교육기간: 1-6개월 범위 내에서 운영(학생의 수준 및 적응 속도 등 고려)

더불어 연령이 13세 이상인 학생들의 경우, 특히나 자기정체성이나 관계형성능력의 차원이 더욱 중요시 되는 역량으로서 이를 위한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현재 대부분의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주로 영어교육을 집중적으로 함으로서 이중언어교육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주로 이중언어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안적으로 이뤄지는 교육과정일 수 있다. 따라서 동반·중도입국자녀들의 이중언어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언어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이중언어교사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반·중도입국자녀의 경우 한국어가 미숙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사소통 및 학습 지원을 위해 한국어와 출신국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지원인력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와 경기도교육청은 연계를 통해 고학력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교육하여 중점학교 등에 이중언어 강사를 배치하고 있다.

오성배(2010)는 한국어가 부족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경우 한국어 습득과 한국 학교생활의 적응을 위한 디딤돌 학급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러한 디딤돌 학급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및 학습 수준에 맞추어 1:1 맞춤형 수업 진행을 기본으로 하며, 각 단계에 따른 교육과정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외국 거주 경험 유무, 한국어 능력차 등 다양한 특성을 지닌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준별 교육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무학년별 운영’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도 하였다. 이때 무학년제는 학생의 입국시기와 학업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년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중도, 동반입국자녀들의 경우 대개 동연배의 아이들보다 낮은 학급에 진입하는 경우 외국의 경우처럼 학생의 학업성취능력에 따라 월반제도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동반·중도입국자녀들의 인성함양과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미술, 음악, 체육 활동 등을 통한 예체능 교육을 일반 한국인학생들과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한국인 학생들과의 융화와 협력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동반·중도입국자녀들의 경우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진로지도에서 직업교육으로의 체계적인 연계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다문화학교 등의 설치가 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독일과 같은 외국의 경우 많은 이주민들의 자녀들이 실제로 일찍 전문계 고교(Berufsschule)를 통한 기술직업교육을 받고 취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 기업체들과 연방정부간의 체계적인 이중적 연계구조가 정착되어 있다. 이러한 외국사례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한국 실정에 알맞은 취업과 연계되는 프로그램 개발 또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취업준비 전문계고교로 진학하여 기술직업교육을 받는 전체 학생숫자를 채용을 전제로 하는 해당 기업들과 매년 조정하고 있다.

네 번째는 동반·중도입국 자녀를 둔 학부모 교육도 절실히 요구된다. 조혜영(2007)의

경우 다문화가정(외국인근로자가정) 부모교육과 자녀교육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다(2009, 이재분 외, 양계민 외, 2011). 이는 최근에 부모의 재혼을 통해 동반·중도입국 하는 자녀가 증가하면서 한국에서 재혼한 부모를 따라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한국 사회에 온 동반·중도입국 자녀의 경우 처음 접한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불안과 더불어 재혼가정이라는 새로운 환경 적응의 어려움이 중복되어 아직 정서적으로 성장이 미숙한 자녀들에게 매우 큰 스트레스를 주게 된다. 따라서 이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녀 뿐 만 아니라 동반·중도입국 자녀를 둔 부모 또한 함께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또한 이주해온 해당 부모는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한국어교육이나 진로교육에 속수 무책인 경우가 많다. 자녀의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부모교육과 더불어 자녀의 학교입학과 진로, 사회화를 위해 부모가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대부분 동반·중도입국 자녀를 둔 가정의 경제적 여건이 여유롭지 못하여 맞벌이를 하면서 자녀의 교육과 관련한 정보를 얻을 만한 연계망을 찾기가 쉽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동반·중도입국 자녀를 둔 부모에게 학생들의 편입학 방법이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알 수 있는 사전지식을 제공하고, 재혼가정을 이룸에 있어 부모의 역할이나 가정환경의 형성들에 대한 부모교육을 한다면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의 입국초기 한국사회에서의 사회화가 원활하게 잘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특히 한국에서 만나게 되는 새 부모와의 관계설정이 잘 못될 경우 가정 밖으로 전전하게 될 확률도 높다고 본다. 따라서 동반·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역시 자녀교육과 더불어 부모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다섯 번째로는 동반·중도입국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들의 경우 모국에서의 사회화가 거의 다 형성된 상황에서 새로운 사회로 이주를 오고, 부모의 재혼을 통해 입양을 온 경우가 많은 만큼 청소년기의 자녀들의 경우 심리적, 정서적 불안이 보통 아이들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동반·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교사의 배치가 시급하다. 일반학교에서 동반·중도입국 자녀를 특별 관리할 전문적인 교사를 배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한국의 경우 또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상담교사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동반·중도입국 자녀의 교육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요구된다. 현재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는 대안학교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학교들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규학교와는 학업의 수준에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대안학교를 통해 동반중도입국아동이나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장기적인 해결방안은 될 수 없다.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위탁형 대안학교’를 제안해 볼 수 있다. 이는 학생의 원적은 일반학교에 두고, 일반학교에서의 정상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간 동안에 해당학생에 대해 ‘위탁형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과 학교의 입장을 모두 고려하는 방안이라 생각한다. 이는 2009년 11월에 개정된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¹⁾을 바탕으로 하여 2010년부터 이러한 수요와 논의를 바탕으로 공립 다문화 대안학교 설립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있었다. 이는 시·도 교육청이 연계하여 동반·중도입국 자녀 등 학교의 진학과 적응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2013년 3월 개교한 초중고통합 기숙학교인 인천 한누리학교로 결실을 맺었다. 공립형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은 한국어 및 사회·문화의 이해, 다문화교육, 각 교과 등 초기 적응 지원을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다. 학생선발은 교육청 관내 및 전국 단위에서 유동적으로 선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공립형 대안학교를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과 특히 동반·중도입국자녀들의 생활과 학습 측면에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일반학교로의 편입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의 경우에도 어떤 형태로든지 중등학교를 마치게 해서 졸업장을 주든지 졸업학력을 인정해주어야만 이들의 사회통합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이들을 위한 대안학교나 위탁학교의 경우에도 중등학교인 경우 체계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하거나 직업학교나 전문계 학교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반드시 운영할 필요가 있다.

1)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 (2009년 11월)

- 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위한 학력인정 대안학교 설립 인가 기준 완화 등을 완화
- 설립주체가 교지, 교사 임대한 경우에도 설립 인가가 가능하도록 완화
- 대안학교 설립주체로서 지자체 등을 포함하여 공립 대안학교 설립이 가능

3. 동반·중도입국자녀 다문화교육 모델 제시

지금까지의 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동반·중도입국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표 5〉 동반·중도입국자녀 교육지원 단계별 모델 제시

주요 활동	활동명	주요 내용	
현황 파악 단계	동반·중도입국자녀 현황파악 조사	법무부	- 특별귀화 신청자 자료를 추출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연계하여 전송
		교육과학기술부	- 동반·중도입국자녀 재학현황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 - 연계 프로그램 개발과 협조요청 - 법무부를 통해 전달받은 특별귀화 신청자 자료를 각 시·도 교육청으로 전달 - 조사 관련 안내 및 조사결과를 중합
		시·도교육청	- 학교에 NEIS의 관련 통계 전송 요청 - 학교 전송자료와 시·도 교육청 NEIS 서버자료 확인 작업을 실시 - 시·도별 동반·중도입국자녀 재학현황 취합 및 보고
		학 교	- NEIS를 통해 학생현황을 시·도 교육청으로 전송
정부 지원 단계	거점/중점학교 지정운영	- 초·중등학교가 연계될 수 있는 거점/중점학교 지정이 필요 - 시·도교육청에서는 인근학교와의 연계 등의 활동을 바탕으로 거점/중점학교 참여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등의 선택 가산점을 통해 거점/중점학교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함께 요구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 동반·중도입국자녀의 경우 일반학교 진학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여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을 지원 - 기존학교의 통·폐합 등에 따른 폐교 등을 활용 - 생활 및 학습 측면에서 동반·중도입국자녀들이 사회화 과정에서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 - 공립형 다문화 대안학교 설립에 있어서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해 교육청의 학교 설립 계획을 검토하여 적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학교 부지비, 건축비 등에 있어 인센티브 지원을 검토	
	직업교육 특성화학교 설립	- 현재 운영하는 마이스터 고등학교 시스템이나 직업전문고등학교를 적용/연계하여 동반·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입학과정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서울 다솜학교 등을 확대) - 중장기적 시각에서 기업과의 연계 방안 추진 검토(독일의 2중적 체계: 연방정부와 기업체가 협의하여 매년 교육인원과 취업총수를 미리 조정하고 예산을 상호 지원함) - 직업교육을 택하더라도 차후 동일계열 등 대학으로 진학할 수 있도록 교육진로를 연계해야 함	

주요 활동	활동명	주요 내용
	이중언어 강사 양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반·중도입국자녀의 경우 한국어가 미숙하여 일상생활 및 학교생활에 있어 의사소통과 학습지원이 필요한 가운데 한국어와 더불어 출신국 언어에 대한 교육의 동시지원이 필요. 이러한 출신어능력을 대학진학 시 우대해 줄 필요가 있음 - 현재 부족한 이중언어강사의 수급과 자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중언어강사 양성에 있어 활동지원이 요구 - 이에 따라 한국어 및 출신국 언어구사능력을 갖춘 인적 자원을 선발하고 한국어와 출신국 언어, 동반·중도입국자녀를 위한 맞춤형 교육지도법, 학교 실습 등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이중언어 강사 양성에 대한 보완과 강화가 동시에 필요 - 다문화가정여성을 이중언어강사로 양성하는 프로그램 진행 중
학교 교육 단계	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신국에서 교육을 받고 온 경우 한국사회에서의 교육과정을 연령에 맞춰 적용할 경우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 - 무학년제를 바탕으로 하여 학생들의 인지수준에 적합한 차별화된 교육과정이 필요
	예체능 통합교육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반·중도입국자녀들의 자존감을 향상하고 인성함양을 위해 음악, 미술, 체육 등을 바탕으로 하는 예체능 통합교육을 강화함으로써 학생들 간의 협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마련
	상담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반·중도입국자녀의 경우, 이주를 통해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오거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이에 대한 상담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에 따라 학교별로 상담교사 배치가 요구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반·중도입국자녀의 상급학교 진학 시 진로지도를 통해 직업교육으로서의 연계 방안 모색 - 직업중등학교와 취업을 연계함. 이후 대학진학의 루트도 열어 주어야 함. 다문화특별전형(출신국 언어 구사능력을 우대)
가정 교육 단계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점/중점학교 등을 활용하거나 지역 다문화지원가족센터 등과 연계를 통해 동반·중도입국자녀 가정이 주로 재혼이나 입양이 이뤄지는 것을 감안하여 프로그램을 형성하고 진행 - 상담프로그램의 경우에도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가족 구성원 전체가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
	자녀교육 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반·중도입국자녀의 경우, 주로 이주를 한 이후에 입양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새로 정착하거나 아동기와 청년기를 일부로 주로 출신국에서 보내고 온 이후에 이주를 하기 때문에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사회화 과정에 어려움을 겪음. 따라서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됨

인권교육에서도 교육권의 입장에서 동반·중도입국자들에 대한 교육지원은 사실상 다문화사회로서의 교육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왜냐하면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가졌는가에 상관없이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살아갈 사람을 교육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다문화교육이 아니라 그냥 국민교육이기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한국에 왔더라도 쉽게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자녀들이 한국의 교육은 물론 본국의 교육까지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다문화적 교육 역량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기, 10대에 늦게 한국에 도착한 중도입국자녀나 청소년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국에서 정착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통해 건강한 직업생활과 사회활동을 하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지극히 중요하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동반·중도입국 자녀들의 문제는 서서히 우리도 그러한 교육 역량을 갖춰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 김승권, 김유경, 조애정, 김혜련, 이해경, 설동훈, 정기선, 심인선, 2009.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여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p.103-120.
- 문지영, 2009.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사이에서 : 프랑스의 이민자 통합 정책. 다문화사회연구 제2권 1호.
- 성상환, 김명정, 2010. 다문화가정 동반·중도입국 자녀 교육 수요 및 지원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 양계민, 조혜영, 2011. 중도입국청소년 실태조사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오성배, 2010. 인천 공립 다문화 대안학교 설립 타당성 조사 및 운영 방안 연구, 인천광역시 교육청.
- 오성배 외, 2013. 중도입국 청소년 지역별 지원 실태에 대한 분석. IOM 이민정책연구원.
- 이순태, 2007.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외국인의 출입국 및 거주에 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p. 107.
- 이유진, 2009. 캐나다의 이민자 통합정책 레짐에 대한 연구 : 온타리오 주를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제2권 1호.



■ 세션 3: 토론



중도입국 이주아동의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문

강은이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 소장)

이혜진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전임연구원)



중도입국 이주아동의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편

Ⅰ 강은이 (안산이주아동청소년센터 소장)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법적 다문화가족의 증가뿐만 아니라, 다양한 체류유형을 배경으로 한 다문화가족, 이주배경 가정이 증가되면서 그 이면에는 가족구조의 형태 또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별 또는 이혼으로 인한 재혼가족의 증가, 동포비자로 입국하는 재외동포가족 증가, 유학 및 이민가정 증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난민가정까지 다양한 형태의 이주배경을 가진 가정의 증가는 가족 속에 다양한 형태의 이주배경을 가진 자녀들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이 중에서 본국에서 일정기간 성장한 후 부모에 의해 중도에 한국으로 입국하는 아동들을 중도입국 자녀라고 하는데,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의 정의도 법적정의와 현장에서의 정의가 다르고 입국 유형도, 입국 사유도, 입국 시점 나이도 각기 다르지만 이에 대해 미처 준비되지 못한 채 이들을 맞이하고 있는 현장에서는 다양한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최근 본 센터가 위치한 안산시에도 중국(중국동포 또는 한족)을 중심으로 한 이주자녀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고려인 동포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권역의 동반·중도입국 이주 자녀들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부분은 미성년자녀로서 가족동반비자로 입국하지만 동포들의 근로비자 유형에 따라 단기비자로 함께 입국하여 생활하는 중도입국 아동·청소년들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이야기 한 것처럼 우리 현장은 이 아이들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와, 준비를 마치기 이전에 아이들은 증가하고 있고, 방치되고 있으며, 그 상태로 성장하고 있다.

현재 본 센터에서 운영 중인 ‘레인보우스쿨’의 경우 급격히 증가되는 아이들을 위해 추가반을 신설하고도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있고 일부 아이들은 일정 기간 대기해야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과는 달리 지역사회 차원의 정책이나 인식 등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 일례로 올해는 전년도 대비 경기도에서 지원해준 중도입국청소년 적응지원 사업 예산이 60% 가까이 삭감되기도 했다.

중도입국 청소년들은 그들 스스로가 이주의 주체이지만 자의에 의한 이주보다는 상황에 떠밀라고 타의에 의해서 이주를 선택해야만 했던 아이들이 많이 있다.

그러다보니 이주에 대한 동기부여, 한국사회에서의 적응에 대한 절실함과 적극성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또한 대부분이 재혼가정이 많은데 이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반기고 품어주어야 할 가정이 오히려 더 불안한 경우들이 많아서 많은 아이들이 한국사회에서 피해자가 되고 더러는 범법자가 되어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아이들이 이주의 과정은 불안했을지라도 자기이해의 시간을 통해 다시 Re-Start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건강하고도 현명한 선택을 통해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도록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 역할을 제시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이 질문에 답해보아야 한다.

-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가.
- 다문화청소년들을 향한 우리 사회가 가진 상(像)은 무엇이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아이들을 정주와 동시에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키워내는 동시에 글로벌인재로서 유엔아동권리에 대한 합의이 정신을 바탕으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합의가 없다면 현장은 갈수록 어려워질 수 밖에 없고, 아이들을 돕고 함께 성장하는 지지체계는 무너질 것이다. 이에 대해 사회가 감당해야 할 목표와 결과치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어 서비스를 예로 들어보자. 한국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다문화 청소년들을 (혹은 중도입국 청소년들) 이 사회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냐에 따라 서비스의 내용과 방식은 달라진다.

한국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주민’으로 바라보면 한국어만 가르치면 된다.

하지만 한국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으로 바라본다면 내용은 완전히 달라진다.

청소년들은 아직 다 자란 게 아니다. 청소년들은 발달과정 속에 있다.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이 한국어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즉, 이주배경으로 인한 어려움 이전에 발달과정에서 청소년이기에 겪는 어려움이 공존하는 것이다.

본 기관에서 진행 중인 중도입국청소년 예비학교 ‘레인보우 스쿨’을 이용하는 A학생은 예비학교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생님들, 센터 실무자들 모두와 매우 친근하게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학생이 센터를 이용한지 1년이 되어가는 최근에서야 새아버지에게 심한 신체적 학대를 당하고 있었고 이를 발설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 아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하는지, 어떤 꿈이 있는지를 생각해볼 기회조차 없이 한국사회 적응을 위한 한국어습득과, 새로운 가정, 새로운 문화에 일방적으로 적응하기만을 강요당하고 있다.

B라는 친구는 한국에 입국한지 3년 만에 본 센터를 찾아왔다. 지난 3년 동안 아빠가 다른 이복동생을 돌보는 양육자로만 살아와야했기 때문이다.

청소년이라는 시각은 여러면에서 중요하다.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접근, 지역사회에 대한 접근, 장기적인 접근, 통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어 뿐만 아니라 성장기 청소년들이 겪는 다양한 고민들과 어려움을 공유하고 부모를 만나며, 불공평한 제도에 대변해주며, 지지적으로 함께 해줄 누군가와 서비스(시스템)가 필요한 것이다.

발제자께서 제시한 교육모델의 경우 현장에서 수많은 이주아동과 가족들을 상담하고 사례관리하는 현장의 경험과 비추어보았을 때 모든 영역에서 깊이 공감하고 지지한다. 특히 학교중심, 학교재학 학생중심이 아니라 학교 밖 아동들과 가족체계에 대한 고민과

대안이 있어서 더욱 반갑다. 결국 아동 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가족 나아가 지역사회의 관점에서의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동반·중도입국 아동들의 경우 초·중등 입학이 가능한 아이들은 크게 무리 없이 공교육에 편입되고 있다. 이런 경우 레인보우 스쿨이나 예비학교(학급)의 경우 6개월 정도만 다녀도 크게 무리 없이 적응하게 되는 사례가 많다. 다만 발제자의 지적처럼 고등학교의 경우 매우 큰 장벽으로 진입이 어려워지고 있고 이주 당사자인 아이들의 심리적 불안이나 두려움도 상대적으로 매우 커진다. 인문계는 더욱 그러하고 그나마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 입학의 문이 다소 열려있지만 이 또한 학교장 재량에 전적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거부하면 그 문은 그대로 닫히고 만다.

몇몇 대안학교 또는 위탁형 학교의 경우 조건이 의외로 까다롭거나 너무 멀어서 다시 부모와 떨어져야 하거나 정원이 차서 들어가지 못하는 등의 문제들이 발생한다. 결국 아이들은 기술을 배우거나 비숙련공 노동자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기술을 익히는 과정역시 필기시험이 합격해야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데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필기 시험 합격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다.

그나마 있는 몇몇 기술과정은 중국어 필기시험이 있는데 이 또한 1년에 한번이라 떨어지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한다. 결국 성년이 되기 전에 국적을 취득해야 하는 아이들은 자신의 꿈과 재능은 살펴볼 틈도 없이 국적취득 과정에 모든 시간을 투자해야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이에 발제자의 대안 제시에 다음의 몇 가지 대안을 첨언하고 한다.

- 아이들의 체류유형별, 최종학력별, 희망진로유형별, 연령별에 따른 각각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진로지도가 가능한 훈련된 전담코디네이터 양성 또는 교육과정 개발 필요.
- 학대, 방임, 갈등, 빈곤 등의 문제에 대해서 가족에 대한 접근체계 수립 필요
-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법적 정의와 현장에서의 정에 대한 간극을 명확히 하고 정책 및 서비스 실천 대상에 대한 개념정의의 합의 필요.
- 고등학교 취학 가능한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위한 지역사회 내의 연계체계 고민 필요. 아이들이 가족을 다시 떠나지 않고 함께 살면서 진학할 수 있도록 하되, 인문계

고등학교가 가지는 한계를 인정하고 특성화고등학교의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과정 수립.

- 성년의 나이가 가까운 청소년들의 경우 한국국적취득에 대한 최소한의 준비기간 보장 체계 마련 필요. 가령,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경우 연령과 상관없이 최소 3~4년 동안의 가족동반비자로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 등.
- 재혼가정이 많다보니 아이들의 독립에 대한 의지는 높은 반면, 준비되어진 것은 없어서 위험한 아르바이트나 열악한 근로환경에 놓이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건강한 독립을 위한 가이드 제시 필요.
- 이를 위하여 필기시험이 없는 자격증과정에 대한 리스트정리, 검증된 실습지 선정과 참여기업 및 개인에 대한 체계적인 인센티브 부여, 자격증 과정에 대한 다양한 언어로 된 가이드 제작.
- 전문 상담 및 사례관리, 학대 및 위기상황 대처시스템 필요.
- 한국어 중심에서 예·체능, 사회성 발달, 성교육 프로그램 등 통합적 지원을 통한 건강한 성장 지원 등이다.

중도입국 이주아동의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편

■ 이해진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전임연구원)

본 발표문은 동반·중도입국 아동들의 교육지원 수요를 파악하여 현 교육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동반·중도입국 아동들에 대한 교육지원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현황파악이 부족하고,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입학이 곤란하기 때문에 초등·중등 간의 교육지원 연계가 필요하며, '일반'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비해 더욱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여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알맞은 특성화되고 차별된 교육프로그램이 추가적으로 개설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정체성 형성 및 심리적 안정을 보강할 수 있는 교육·상담프로그램 및 이중언어교육 실시, 한국학생과의 예체능교육 통합운영 등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며, 운영방식으로는 학생의 연령과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 실시, 학생의 학업성취능력에 따라 탄력적으로 학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교육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동반·중도입국 아동 교육지원에 대해, 현황파악단계(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학교), 정부지원단계(거점/중점학교 지정운영,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 직업교육 특성화학교 설립, 이중언어강사 양성 지원), 학교교육단계(차별화된 교육과정 운영, 예체능통합교육시행, 상담프로그램 운영, 직업교육프로그램 운영), 가정교육단계(학부모교육프로그램, 자녀교육프로그램, 집단상담프로그램)으로 각 단계별로 모델을 잘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본 발표문에 대한 토론자의 의견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학교 교육 관련 - 보다 세부적인 방안이 필요

- 예비학교 1~6개월 교육, 특급학급 편성시간 등: 6개월, 100시간 등으로 상한선을 설정하지 말고, 학생의 해당 학생의 능력 및 특성에 맞춘 기간 설정이 필요.
- 학부모 교육: 학부모 교육이 절실하지만, 현실적으로 학부모 교육을 행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 예를 들어, 학교교원이 가정방문을 하려면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은 타 기관과 연계하여 협업이 필요. 그러나 타 기관과의 협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지역사회다문화교육협의회(가칭)과 같은 협의체를 형성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정보교류 및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함.
- 한국어, 한국사, 한국문화 등 학교 수업에서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한국어 지식 이외에도 학습한국어 교육 보장: 한국어를 이해한다 하더라도,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력(입시)위주의 수업내용을 따라가기 어려움.
- 직업교육과 진학: 직업교육과 병행하여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해당학생들에게 진로상담 및 진학을 위한 교육 지원 필요.

2. 학교 교육 외부 - 교육과학기술부 지원정책은 주로 학교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탈학교 아동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 외부에서 이뤄져야 할 사회적인 서포트에 대해서는 학교 중심의 정책은 한계를 가짐.

- 학교 교육과 관련된 경우 이외에는, 대부분의 일반 아동·청소년 사회복지 서비스 내용에는 한국국적자 여부, 출입국관리법상 등록/미등록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됨.
- 사례1): 중도입국 아동(초등학생, 방문동거체류자격)의 방과 후 보살핌 가능 한 곳은 있는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외국국적자이므로 한국어지도대상자가 아니라고 거절당하고, 글로벌아동센터에서는 외국국적아동은 지원을 못한다고 하고, 지역아동센터는 받아줄 수는 있지만²⁾, 외국국적자라서 ‘일반아동’ 범주에 들어가므로, 이용료

1) 김민정·정지윤(2014), ‘외국국적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사회권과 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역 내 관련 제도 보완에 관한 제안’, <수원의제21, 이주민인권분과>, 《2014년 지속성보고서》(미간행)의 내용을 참조했다.
 2) 지역아동센터는 ‘일반아동’ 수가 일정 수 이상이면(운영매뉴얼, 60% 이상 우선보호아동 비율 유지), 평가에 영향을 받는다 면 난감해함.

를 내야 한다는 대답이 돌아옴.

- 중도입국 아동이 한국국적을 취득할 계획이 없는 경우 및 다양한 성인 외국인이 동반한 자녀들 대부분의 경우,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거주.
- 지역사회, 한국사회에서 이주아동으로서의 권리(교육권, 사회권 등)의 향유가 어려움.
- 이주아동 인권 보장의 규범적 내용은 여러 국제인권규약에서 구체화되어 있으며, 한국 정부는 규약상의 권리를 모든 이주아동에게 보장할 적극적 의무를 부담한다. 국제인권규약상의 국가의무에 비추어 보면, 현재 이주아동과 관련한 정책과 법률의 내용은 매우 소극적임.³⁾

3. 모든 이주아동(청소년)가 향유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 학교 내외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교육지원체계가 필요
- 국적, 등록/미등록을 불문하고 모든 이주아동(청소년)이 교육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
- 다양한 이주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 및 서비스 확충을 위해 지역사회의 관련 기관들이 주축이 되어 정기적인 네트워킹과 협업.
- 각 교육청에서 지역사회의 모든 이주아동을 수렴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거점센터(컨트롤타워) 역할 담당.

3) 신은주(2013). '이주아동의 교육지원 방안 연구', "청소년시설환경"11(1), p.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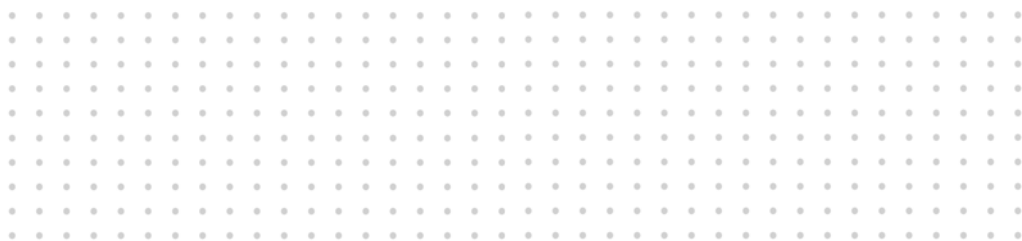
■ 세션 4: 발표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구금적 대안의 모색과 적용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구금적 대안의 모색과 적용



▮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

1.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만들어진지 25주년을 맞아 한국의 이주아동구금 문제를 논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가장 야만적인 제도가 뭘까 생각하면 저는 이주구금제도가 떠오르는데 그 중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인 이주 아동의 구금이야 말로 장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2. 시급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말하고 나니 2년 전인 2012년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이주아동구금에 대해 Day of General Discussion에서 한 표현이 생각납니다. “아동을 그들의 체류 자격 때문에 구금하는 일은 시급하게expeditiously 그리고 완전히completely 멈추어야 합니다.”
3. 이주아동이 범죄를 저지른 것 때문이 아니라 체류자격 때문에 구금되는 경우가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2011년 한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보고서 심의를 할 때 ‘future detained’라는 제목의 민간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는데, 그 때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주아동구금 통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구금된 이주 아동의 수〉

연령	화성외국인보호소	청주외국인보호소
17	4	10
16	5	7
15	1	1
14		
13	1	1
1		1
총계	11	20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구금된 이주 아동의 평균 구금 일수〉

연령	화성외국인보호소	청주외국인보호소
17	6.5	21.4
16	11	11.2
15	13	5
14		
13	4	3
1		2
총계	8.6	8.5

4. 위 통계에는 나오지 않지만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외국인보호소 방문 조사를 하면서 청주외국인 보호소에 난민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중국 출신의 5살 여자 아동이 어머니와 함께 23일 동안 구금이 되었는데, 그 아동은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과열에 시달리고 있어 입술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구금된 중국 여자 아이를 만나고 나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이주아동구금 현황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고 2011년 9월에 있었던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정기적인 사법심사와 구금의 상한도 없는 이주구금은 자의적인 구금일 뿐 아니라 이주아동의 경우에도 부모가 체류자격이 없다는 예외 없이 구금을 하는 것은 유엔고문방지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자유권규약상이 보호하는 여러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심의에도 참여하여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로비도 하게 되었습니다.

5. 그 후에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이주아동구금 이슈에 대해 아주 포괄적이고 상세한 권고를 하였는데, 조금 인용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엔아동권리 위원회는 난민 아동, 난민 신청 아동 그리고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이 국가의 출입국관리법에 의해 쉽게 구금될 수 있다는 점을 심히 우려한다. 또한 위원회는 아동이 부적당한 시설에 수용되고 구금의 상한이 없이 퇴거명령이 집행될 때까지 구금이 되고, 구금에 대한 정기적이고 시기적절한 사법심사를 보장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다(제66항). 위원회는 한국이 난민, 난민 신청 아동,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의 구금을 삼가 할 것을 촉구한다… (제67항) … 구금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자유 박탈에 대한 대안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하고… (제81항).

6. 그러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위와 같은 권고는 얼마나 이행이 되었을까요? 위 권고가 나온 이후에 이주아동구금과 관련해 어느 정도 진보가 있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2013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화성과 청구 외국인보호소와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 구금되었던 아동이 총 8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11월에 정보공개를 통해 2012년과 2013년 이주아동구금에 관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 구금된 이주 아동의 구금일 수〉

2013년 총 11명의 아동(남자 6명, 여자 5명)이 구금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는 만 4개월의 아동(19일 동안 구금)도 있었고, 최대 27일까지 구금된 아동(17세)도 있었습니다.

나이(만)	성별	구금일수
4개월	남	19
1	여	2
12	여	2
17	여	3

나이(만)	성별	구금일수
17	남	11
17	남	6
17	남	1
17	남	25
17	여	16
17	남	27
17	여	6

〈2013년 구금된 이주 아동의 구금일 수〉

2012년에는 총 15명의 아동(남자 6명, 여자 9명)이 구금되었는데, 그 가운데는 1세 아동(5일 동안 구금)과 4세 아동(2일 동안 구금)도 있었고, 최대 22일까지 구금된 아동(17세 여자)도 있었습니다.

나이(만)	성별	구금일수
1	여	5
4	나	2
5	여	2
7	여	5
16	여	4
16	남	7
16	남	6
16	남	14
17	여	5
17	여	4
17	여	22
17	여	15
17	여	3
17	남	8
17	남	4

7. 위 통계에는 나오지 않지만, 2012년 7월 4일부터 약 1달 동안 공항의 송환대기실에 갇혀서 삼시세끼 치킨버거만을 먹으면서 대기실 의자에서 잠을 잤던 소말리아 출신의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난민신청자자인 아동이 있었습니다. 또한 2014년 초 대한변호사 협회에서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을 방문하다가 몽고 아동이 구금 화성의외국인보호소에 구금이 되었고, 아쿠피라는 미동반 아동이 공항 출국대기실에 (성인들과 같이)구금이 되었으며, 2014년 초 대한변호사협회의 방문 조사를 통해 화성의외국인보호소에는 생후 26개월도 되지 않은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아동이 6일 동안 구금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에는 생후 10개월 된 베트남 출신의 아동이 2개월 동안 구금되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8. 2개월 동안 구금되었다면 그리 긴것도 아니지 않나요라고 반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구금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무리 짧은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무시할 수 없지만, 가장 취약한 사람들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아동들에게는 그들의 정신건강과 성장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많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2011년 청주 보호소에서 만난 5살 짜리 여자 아이도 23일을 어머니와 갇혀 있으면서 많은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Mares, S. & Jureidini, J. (2004). Psychiatric assessment of children and families in immigration detention: Clinical, administrative and ethical issues.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ublic Health, 28(6), 520-6; Lorek, A. et al. (2009). The mental and physical difficulties of children held within a British immigration detention centre: A pilot study. Child Abuse and Neglect, 33(9), 573-85).

9. 혼자 구금된 아동 뿐 아니라 부모와 같이 구금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들은 어른 보다 예민하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부모가 구금시설 안에서 겪는 공포와 불확실함과 불안을 이해하기 위해 애쓰게 되고 그러한 어려움이 쉽게 아동에게 전가 됩니다. 또한 구금 시설에서의 엄격하게 짜여진 매일의 일과는 아동이 나름대로 먹고, 자고, 쉬는 리듬을 방해 합니다. 장기간 구금될수록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크지만, 아동들은 짧은 구금 기간에도 우울증, 식욕부진, 불안증세, 불면증과 악몽

시달리고, 심한 경우 PTSD나 자살 충동, 정신이상에 이르기도 합니다. 특히 난민의 경우에는 출신국에서 이미 박해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보호를 구하려고 찾아 온 나라에서 또 다른 박해에 해당하는 구금을 당하게 되면 그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건강은 크게 위협을 받게 됩니다.

10. 그렇기 때문에 아동을 구금하거나 부모의 체류자격을 이유로 혼자 또는 부모와 함께 구금하는 것을 유엔아동권리협약 뿐 아니라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여러 인권규약이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주아동구금시에 위반의 문제 제기가 되는 관련 국제인권규범들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1. 무엇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인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주구금 분야에서는 어른의 기준으로 아동을 구금을 하거나, 이주아동을 아동이 아닌 주로 이주자의 관점에서 보거나, 아동 개인의 취약성에 대한 고려 없이 형식적으로 부모나 아동 자신의 체류자격만을 가지고 구금하는 것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부모를 아동과 분리시켜 부모만 구금하거나, 부모와 함께 아동을 구금하는 것 역시 아동의 최선 이익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6호의 제61항에서도 “동 협약 제37조 및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동반되지 않거나 분리된 아동은 일반적인 규칙으로서 구금되어서는 안 된다. 구금은 단순히 아동이 동반되지 않았거나 분리되었다는 이유 혹은 그들이 이민 또는 거주지위, 혹은 그러한 것이 없다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2. 세계인권선언 제3조와 자유권 규약 제3조는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구금과 관련해서 세계인권 선언 제9조와 자유권 규약 제9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 (b)는 자의적 구금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의적 구금이 의미에 대해서는 2014년 10월에 개정된 자유권위원회 일반논평 제35호를 보면 자세히 나

오는데, 이것을 이주구금의 맥락에서 살펴보면, 자의적인 구금이란 불법구금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부적절, 부정의, 예측가능성 결여, 적법절차 부재, 합리성 결여, 필요성 부존재, 비례성 위반과 같은 개념과 연결되어 있어(제12항), 이주구금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합리성, 필요성, 비례성을 갖추어야 하고, 구금이 장기화 되면 구금이 자의적인지 여부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주구금의 경우 구금보다 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법(보증금 제출, 정기적인 보고 등)으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고려해야 하고, 구금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평가와 사법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제18항).

14.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b) 후단에는 아동에 대한 구금은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 꼭 필요한 최단기간 동안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6호 제61항에서는 “구금이 예외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 구금은 구금이 관련국의 법률에 부합할 것과 최후의 수단으로서 적절한 최단 기간 동안만 사용될 것을 요구하는 등 협약 제37조 (b)에 일치하도록 행해져야 한다… 동반되지 않거나 분리된 아동은 구금으로부터 즉시 석방되거나 및 다른 형태의 적절한 거주시설로 옮겨져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4. 처우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8조와 제29조에서는 아동의 교육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주아동이 구금되는 동안에는 그 아동에 맞는 교육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제6호 제63항은 구금된 아동의 처우와 관련해서 “예외적인 구금의 경우, 구금의 조건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의해 규율되어야 하며 동 협약 제37조 (a) 및 (c), 그리고 기타 국제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아닌 이상… 아동에게 적합한 주거 처소로 특별한 배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실제로 그러한 프로그램의 근원적인 접근방식은 “양육”이어야지 “구금”이어서는 안 된다… 아동은 또한 모든 기초적 필수품뿐만 아니라 필요한 적절한 의학적 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만 한다. 구금기간동안 아동은 석방 후에 그들의 교육이 지속되도록 촉진하기 위해 이상적으로는 구금시설 외부에서

행해지는 교육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아동은 또한 동 협약 제31조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오락활동과 놀이의 권리를 보유한다. 동 협약 제37조 (d)에 제시된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자유를 박탈당한 동반되지 않고 분리된 아동은 법적 대리인의 배정을 포함한 즉각적이고 무료의 법적 및 기타 적절한 조력에의 접근을 제공받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6. 구금과 관련해서 아동을 범주화 하면, 부모를 동반한 아동과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또는 부모와 동반 하지는 않았지만 친척 등과 동반하는 소위 분리된) 아동이 있고, 여기에는 다시 일반 이주 아동과 난민신청자인 아동이 있습니다. 부모 동반 여부에 따라 그리고 난민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처우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아동과 관련한 난민신청자의 구금은 공항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입국한 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2년 소말리아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난민신청자인 아동으로 공항에서 구금된 경우이고, 2011년 중국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를 동반한 난민신청자의 아동으로 입국 후에 외국인 구금시설에서 구금된 경우입니다. 2014년 베트남 아동은 부모를 동반한 일반 이주아동이고, 앞의 통계에서 구금된 16세 내지 17세의 아동들은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일반 이주아동이 많을 것입니다.
17. 따라서 난민 아동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이주자 일반의 구금과 관련된 규정 이외에도 난민협약상 구금에 관한 규정(제31조)이 적용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제6호 제62항)과 유엔난민기구의 지침 등이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18. 그렇다면 이주아동 어떻게 해야 합니다. 그냥 구금하지 않고 풀어주면 되나요? 이주 아동을 구금하는 것도 국제인권규범위반이지만, 이주아동을 구금 하지는 않지만 그냥 방치하는 것도 국제인권규범에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회권 규약 뿐 아니라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도 적절한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때 논의 되는 것이 구금의 대안입니다. 그런데 구금의 대안과 관련해서는 크게 3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치명적인 오해는 구금

대안을 대안적 구금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외국인 구금 시설이 아닌 다른 장소에 아동을 이동시켜 놓고 그곳에서 다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그것은 대안적 구금이 아닌 구금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구금 대안을 시설의 측면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개방적인 내지 지역사회와 연계된 시설 자체를 구금 대안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금 대안은 이주아동이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체류를 하거나 혹은 돌아갈 때까지 이주아동이 이동의 자유를 누리면서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정책과 관행을 총체적으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구금 대안이 지역사회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민간에서 이 역할을 모두 감당해야 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역할이 있고, 시민사회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주아동의 구금대안은 결국 국가가 책임지고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구금 대안이 법과 정책과 관행의 총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 국제인권규범이 규정하고 있는 구금과 관련된 이주아동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는 국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19. 구금 대안이 위와 같은 의미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몇 가지 단계를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법과 정책 그리고 관행에 있어서 이주아동구금이 일반적으로는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그것도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기간 동안만 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 뿐 아니라 정책과 관행으로도 이렇게 되어야 하므로 법이 바뀌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정지적이고 심층적인 교육 등을 통해 법집행 공무원의 의식과 행동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람에 대한 신체적인 구금 자체가 원래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사람에는 당연하게도 이주자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너무 나도 당연한 그러나 애석하게도 간과되는 사실이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20. 두 번째로는 케이스워커라고 하는 사회복지전문가와 후견인의 문제입니다. 부모를 동반하지 않은 이주/난민 아동의 경우 신청이든 소송이든 스스로 법적인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후견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난민신청과 난민소송을 하든 구금의 불법성을 다투기 위해 신청이나 소송을 하든 후견인이 없으면 할 수가 없

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아동에게 국가에서 후견인이 선임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를 동반한 아동이든 그렇지 않은 아동이든, 아동의 다양한 필요에 주목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고, 포괄적이고, 인권적인 관점에서 코디네이팅을 하는 케이스워커를 국가에서 이주아동 마다 선임해야 합니다.

21. 세 번째는 구금대안과 관련된 여러 절차입니다. 여기에는 아동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그에 관한 절차, 난민인정과 관련된 절차, 출국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절차, 난민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취약성을 보이는 아동을 위한 의료 서비스 절차,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절차, 지역사회에 거주하는데 필요한 절차 그리고 이러한 절차들을 밟는데 있어서 아동의 목소리를 듣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 결정(Best Interest of child Determination: BID)하는 절차, 그리고 이러한 절차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이루어 졌는지 심사하는 절차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2.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 거주하도록 할 때 중요한 것 역시 아동의 최선 이익 원칙입니다. 특히 아동의 나이와 성별과 문화를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아동의 성장과 안녕 위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의식주는 물론이고 의료나 교육과 법률서비스도 포함이 됩니다.
23. 그런데 구금 대안과 관련해 한국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주구금 일반에 대해서 보자면 출입국관리법상의 이주구금은 필요성 심사도 없고, 구금의 상한도 없어서 비례적이지 않고, 최소침해의 원칙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유일한 구금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 보호일시해제이는 높은 보증금과 출입국공무원의 폭넓은 재량으로 대안이 전혀 못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사법심사도 없어서 이주아동구금을 포함한 이주구금 일반은 앞에서 말한 국제인권규범이 금지하는 자의적 구금 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4. 이주아동 내지 난민 아동에 대한 구금과 관련해서는 법이 아니고 행정규칙인 외국인보호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외국인보호소) 소장은 보호외국인이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부양하고 있고 보호외국인 외에는 그 어린이를 부양하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어린이가 보호대상이 아니더라도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3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외국인 외에 그 어린이를 부양하려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도 그 친부모인 보호외국인과 함께 생활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아동비구금 원칙이 아니라 아동이 체류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모와 함께 구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25. 또 외국인보호규칙 제4조 제4항에서는 “소장은 1개월 이상 보호하는 14세 미만의 어린이에 대하여 그 어린이의 나이와 능력에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부의 전문복지시설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제5항과 제6항은 “소장은 17세 미만의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특별보호를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지명된 전담공무원은 17세 미만의 보호외국인을 2주일에 1회 이상 면담하여야 하며, 면담 결과 방배정, 교육, 운동, 급식 등에 있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문서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은 조치가 구금이 이주아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상쇄시켜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이러한 최소한의 규정도 실제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는 상당히 의문이라고 할 것입니다.
26. 이렇게 이주아동구금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내용의 법과 정책과 관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구금 대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머지 내용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후견인과 케이스워커 선임도 없을 뿐 아니라(앞에서 2012년에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한 소말리아 출신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서울시에 후견인 선임 절차를 밟아 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을 당한 적이 있음), 모든 절차는 민간의 도움으로 아동 스스로 밟아야 하며, 지역사회에 거주할 수 있는 서비스도 없습니다.
27. 그런데 이런 구금대안을 하는 나라가 실제로 있나요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헝가리, 체코, 아일랜드, 베네수엘라,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에서 이주아동과 관련해서 구금대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벨기에에는 18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구금이 금지되어 있었고 나이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6일 동안만 구금할 수 있고, 보통은 observation and orientation centre에서 지내게 됩니다. 2009년부터 아동을 동반한 미등록 이주자에 대해서도 국가에서 파견한 케이스워커가 있는 개방시설에 지낼 수 있도록 구금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케이스워커의 역할은 가족이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킬 뿐 아니라 벨기에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난민신청자 등의 리셉션에 관한 법 제41조에서는 미동반 난민 아동이 공항만에서 발견될 경우 구금 대안인 specific observation and orientation centre로 가게 됩니다.

28. 또 체코와, 헝가리, 아일랜드와 이탈리아와 포르투갈에서는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구금은 금지되어 있고, 독일에서는 1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구금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또는 스웨덴의 경우 아동에 대한 구금 금지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일반적인 구금 보다는 더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구금을 할 수 있고, 네덜란드의 경우 12세 미만은 구금을 할 수 없고, 12~16세의 아동들은 청소년 custodial institution으로 가게 됩니다. 사이프러스는 아동에 대한 구금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29. 그런데 이러한 이주아동에 대한 구금대안은 앞으로 더 확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제적인 일종의 경향이 형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2012년 일반토론의 날 권고를 통해 이주아동 구금 금지와 구금 대안에 관해서 구체화 했고, 이주아동구금과 관련해서는 아동의 인권의 측면에서 유럽인권재판소에서 여러 건의 판결이 나왔고, 미주인권법원(IACtHR)도 2014년 이와 관련된 권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유럽평의회의원회의에서도 2014년 10월 3일 관련 결의를 채택해서 회원국들의 변화를 권고하고 있는데 벨기에, 덴마크, 헝가리, 이탈리아, 아일랜드, 프랑스와 영국

등에서 그러한 권고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30. 그런데 한국의 경우 이주아동 구금과 관련해서는 아동이 가족결합원칙상 구금되어 있는 부모와 함께 구금될 수 있도록 외국인 구금시설에 가족방을 만드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당국에서 이주아동구금과 관련된 국제인권규범과 국제적인 흐름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구금 대안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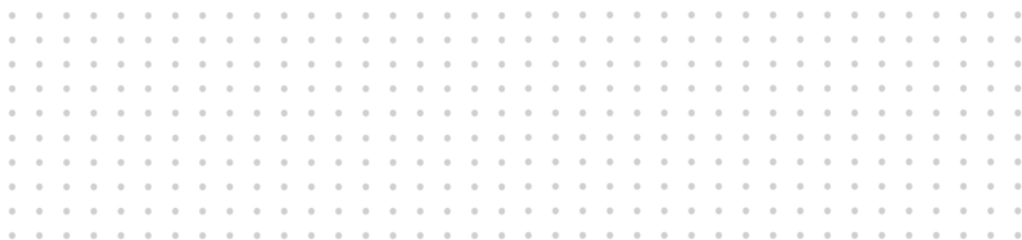
■ 세션 4: 토론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구금적 대안(Alternative to detention)의 모색과 적용 토론문

이하룡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센터장)

정병수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구금적 대안의 모색과 적용



Ⅰ 이하룡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센터장)

발표자는 아동 구금에 대한 문제점을 잘 적시해 주었고, 특히 대안까지 제시하여 대부분 의견에 찬성한다. 토론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려고 한다.

1. 외국인 보호소의 이주아동 구금

부모를 구금할 때, 특히 엄마가 외국인보호소에 보호될 때 유아를 동반 보호하는 문제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이주 아동을 구금하는 경우 구금 대안 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 아동의 취약성이 고려된 대안적인 방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금이 '최초의 유일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여기에서 토론자는 그 대안을 모색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고 싶다. 우선 0~3세 정도로 엄마가 없으면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엄마와 동반하여 보호하는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주 여성을 구금할 때 친권이 있는 18개월 이내의 유아를 데려올 수 있도록 허가하고 필요한 설비와 물품도 제공한다.

다만 해당 유아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엄마와 생활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구금 여성이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유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을 때, 구금 시설에 감염에 감염병이 유행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유아의 대동이 여의치 않을 때에는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거주 장소에서 생활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2. 구금기간과 복지

외국인 구금제도에 상한이 없는 현 출입국관리법 하에서 아동 역시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구금은 ‘최소기간’동안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이주 구금의 자의적 실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조항은 출입국관리법 제63조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이다. <개정 2014.3.18.>

영국의 이민규칙은 미성년자 보호법에 따라 아동은 최대 10일 동안 구금할 수 있고,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미성년자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구금이 가능하며 하루를 넘길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구금된 외국인이 정신적인 장애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구금시설의 의료진들은 보호외국인의 눈에 나타나는 질병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치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들을 초빙하여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주민의 아동

아동을 동반한 이주민이 형사범이 아니고 체류기간 도과, 체류자격 위반 활동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인 경우에는, 차후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주거시설에 머물도록 인도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금 시설에 있는 아동이 어른과 분리되어 지낼 수 있도록 보장한 후에는 그 아동들이 생활하는 장소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 장소는 안전해야 하며 아동을 배려하는 환경(a safe, child-sensitive environment)이어야 한다. 또한 그들의 가족과 정기적인 연락을 유지하게 하며 음식,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주거시설은 정부가 설립하든가 지자체 또는 NGO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발표자가 적절하게 적시하였듯이 이들의 주거시설은 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예산 상 인력 상 정부가 직접 관할할 수 없다면 지자체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후견인에게 아동을 맡기는 방법은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우리 정부도 이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4. 공항의 송환대기실

공항의 송환대기실은 입국을 거부당했거나 비행기를 갈아타려는 외국인이 머물도록 조치하는 장소다. 송환대기실에 부모 없는 어린 아이만 한 달씩 머물게 하는 일은 여간 비인도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입국을 시킬 수 없는 사안이 있거나 갈아탈 비행기가 없는 경우 또는 좌석이 없는 경우 등에 발생한다.

즉시 퇴거할 수 없는 대상자는 항공편, 항공권 마련 등 본국 또는 출발지로 되돌아 갈 수 있을 때까지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가정집 또는 시설에 머물도록 조치해야 한다.

5. 난민 아동의 구금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RC)의 제 3조, 37조 그리고 제 22조는 구금을 ‘최소기간’ 동안 ‘최후의 조치’로 이행할 것과 난민 지위를 원하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적합한 보호와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¹⁾

정부는 난민신청자와 그 아동들이 난민신청 후 판정을 기다리는 동안 3개월 정도 난민 시설(인천 영종도 소재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머물도록 조치하고 있다. 난민시설은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건립한 시설이기 때문에 거주환경이 훌륭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아동들이 지내기 적합한 시설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정부는 난민신청자 아동들이 학교에 입학하고 생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여러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도 국가가 비호신청자와 인도적 지위 상태에 있는 가정에 충분한 재정적,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아동에게 자국의 아동

1) 또한 UNHCR 지침서는 ‘난민을 신청하기 원하는 미성년자는 억류되지 말아야 하며, 억류에서 풀려나 적당한 숙박 시설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만일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입증되면, 아동과 가족을 위한 적당한 거처 마련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망명 구금자에 관한 적합한 기준과 표준에 대한 UNHCR 개정 지침서)

들과 동일한 교육 접근 기회 제공을 보장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6. 마치는 말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적절하게 권고하였듯이, 한국 정부는 비호신청자의 이동과 동반자가 없는 아동들을 구금하지 않아야 한다. 수많은 난민신청자들이 몰려들어 그들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호주 정부가 지난 10여 년간 외국인 아동을 구금하지 않은 사실을 우리 정부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벨기에, 필리핀, 아르헨티나, 스웨덴, 일본과 같은 국가에서 도입한 커뮤니티 모델의 구금 대안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하여 조속히 도입하여야 한다.

송환이 되는 경우, 한국은 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존중하는 시설에 수용하고, 시의 적절한 정기적 사법심사와 명백한 시간제한 하에 수용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공익법센터를 위시한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조치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

외국인 아동을 구금하는 조치를 취할 때 인도적인 고려를 최우선 시 해야 한다는 발표자의 의견에도 적극 공감한다. 만일 필요하다면 오늘 이 세미나를 공동 주관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수시로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러한 모든 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절차가 가장 기본적인 사항임은 재삼 거론할 필요가 없다.

미등록 이주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구금적 대안의 모색과 적용



▮ 정병수 (국제아동인권센터 사무국장)

미등록 이주 아동의 인권증진을 위한 구금대안의 모색과 적용에 대한 김종철 변호사님의 발제문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발제자이신 김종철 변호사님을 처음 뵈었던 때가 생각납니다. 2011년 9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3, 4차 심의를 위해 방문한 제네바였습니다. 당시 김종철 변호사님의 노력으로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의 아동권리 이행 중 일종의 숨은 이슈였던 이주아동, 난민, 아동구금이 논의되었고, 노력의 결과로 관련된 내용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3, 4차 권고사항에 반영되었습니다.

오늘 포럼의 본 세션을 위한 초석을 마련한 분이래 해도 과언이 아닐까 생각되며, 함께 본 세션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에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발제자께서는 난민, 이주민을 위한 법조인으로서의 견해를 말씀해주셨다면, 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아동권리의 측면에서 첨언을 해보려 합니다.

우선 미등록 이주 아동이 단지 부모의 체류자격 만으로도 구금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발제문에 제시된 통계수치는 이러한 조항을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내용 중 가장 먼저 언급되어야 할 것은 제2조 비차별의 원칙일 것입니다. 특히 제2조 2항에서는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신분 에 따라 기본적 의료나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다는 것도 명백한 인권침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구금을 당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아동인권침해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발제문에 언급되었듯이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7조 (b)는 아동의 체포, 억류, 구금은 법에 의해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꼭 필요한 최단기간 동안만 행해져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발제문에 제시된 구금일수가 최단기간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생후 10개월 된 아동이 2개월 동안 구금된 것은 정말 구금이 최후의 수단이며, 최단 기간 동안인 것일까요?

다음으로는 과연 이러한 결정이 아동의 입장을 고려한 아동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조는 아동과 관련된 사안은 아동 최상의 이익(Best Interest of the Child)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아동최상의 이익은 공공, 민간, 행정, 입법, 사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활동 중 아동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있어 아동이 가장 우선적인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동의 구금, 체류, 망명, 송환 등의 모든 사안은 아동 최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발제자께서는 아동에 대한 구금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여러 나라의 사례와 함께 우리나라의 현 수준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인권의 측면에서 아동에 대한 구금의 대안은 어떤 것일까요?

유엔난민기구는 아동최상의 이익을 결정하는 가이드라인(UNHCR Guidelines on Determining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을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기반으로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¹⁾ 가이드라인에서는 아동최상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동최상의 이익을 고려한 결정(Best Interests Determination, BID)과 아동최상의 이익을 고려한 평가(Best Interests Assessment, BIA)가 필요하며, 상황에 따른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²⁾

1) UNHCR(2008), UNHCR Guidelines on Determining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2) UNHCR(2011), Field Handbook for the Implementation of UNHCR BID Guidelines

BID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중요한 결정을 위해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엄격하고 공식적인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는 체계적인 참여적 평가를 통한 아동과의 협의, 연령 적합성과 성 인지(gender sensitive), 성별과 연령에 의한 자료 수집, 자원배분에 있어 아동최상의 이익을 우선적 고려, 가이드라인, 정책, 국가운영계획, 프로젝트의 계약 및 운영절차에 있어 아동에 대한 구체적 특성을 고려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의 적절한 참여와 관련된 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의사 결정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BID를 위해서는 아동 최상의 이익을 고려한 평가(BIA)가 전제되어야 하며, 위험상황에 처한 아동을 위한 아동보호평가(아동학대, 노동착취 등)나 대안돌봄 배치 이전, 가족 추적(family tracing)이나 가족 재결합 이전에 BIA를 실시해야 합니다.

유엔난민기구 뿐 아니라 ENOC(European Network of Ombudspersons for children)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이주아동을 위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³⁾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은 단지 불법입국으로 인하여 구금될 수 없다.
- 아동의 이민, 망명 등의 절차 및 결정에 관련된 모든 사람은 아동이 특별한 돌봄과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명확한 규칙, 관리시스템, 아동 친화적인 태도와 아동친화적 방식으로 아동을 인터뷰할 수 있어야 한다.
- 아동의 연령평가는 체계적으로 아동의 연령이 심각하게 의심스러운 경우 실시되어야 한다. 연령평가는 가능한 빠르게 실시되는 것이 좋다.
- 아동의 개인정보 및 배경을 조사하기 위한 인터뷰는 국제아동인권규범을 존중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직원에 의해, 아동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가능한 외상에 대한 경험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 아동의 모국어, 혹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의 권리와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개별적으로, 훈련받은 사람에 의해, 대리인(보호자)를 동반한 가운데 설명되

3) ENOC(2006). ENOC Statement on State Obligations for the Treatment of Unaccompanied Children, Approved in the Annual Meeting in Athens on 26-28 September 2006.

어야 한다.

- 아동의 견해는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적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 국가는 아동의 문화, 성별 등을 고려하여 무료로 통역과 법률조력인을 제공해야 한다.
- 아동은 성인이 될 때까지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행정적 결정에 대하여 유엔아동권리 협약과 유럽인권협약에 의해 항소할 수 있다.
- 아동이 도착하면 즉시 준비된 보호자를 임명해야 하며, 보호자는 아동인권, 복지 등의 필요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은 자발적 송환인 경우를 제외하고 추방해서는 안된다.
- 안전한 송환과 가족상봉과 재결합이 아동 최상의 이익에 적절하다면 국제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가족을 찾고 아동의 사회적 배경을 조사해야 한다.
- 아동이 본국으로 송환되지 못하는 상황일 경우, 특별한 장기체류허가가 제공되어야 하며 적절한 교육과 복지를 통한 사회통합을 지원해야 한다.
- 이들은 당사국 관할권 내의 다른 아동들과 동등하게 교육, 보건, 직업훈련 등이 제공되어야 한다.
- 이들 아동과 관련된 직원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의 두려움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징후를 발견하고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우리 사회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반 하여 이주아동의 구금에 대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찾아보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서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률 및 정책을 통한 규제와 감독, 기준설정 등이 필요하며, 이와 동시에 이러한 구금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와 법률, 보건, 교육 등의 서비스와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서비스와 관련된 종사자와 시민사회의 역량강화,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아동인권옹호와 인식증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아동에 대한 징벌적 구금은 결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동을 위한 보다 나은 구금시설이 아닌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붙임자료

1. 세계인권선언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3.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국문, 영문)
4. 아동복지법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6.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세계인권선언*

1948. 12. 10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를 결과하였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세계의 도래가 일반인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었으며, 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지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며, 국가 간의 친선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 긴요하며, 국제연합의 여러 국민들은 그 현장에서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더욱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개선을 촉진할 것을 다짐하였으며,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의 증진을 달성할 것을 서약하였으며, 이들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러한 서약의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따라서 이제 국제연합 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세계인권선언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한 채, 교육과 학업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점진적인 국내적 및 국제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 및 회원국 관할하의 영토의 국민들 양자 모두에게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인정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힘쓰도록, 모든 국민들과 국가에 대한 공통의 기준으로서 본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 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 출처: 『국제인권조약집』(정인섭 서울대 교수 편역, 경인문화사, 2008) 자료를 이용함.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나아가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는 그 밖의 다른 주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든, 그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제3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

제4조

어느 누구도 노예나 예속상태에 놓이지 아니한다. 모든 형태의 노예제도 및 노예매매는 금지된다.

제5조

어느 누구도 고문이나,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취급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7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차별적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담당 국가 법원에 의하여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의 혐의를 결정함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편견 없는 법정에서 공정하고도 공개적인 심문을 전적으로 평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1조

1. 형사범죄로 소추당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장치를 갖춘 공개된 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로 되지 아니한다. 또한 범죄가 행하여진 때에 적용될 수 있는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하여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과 공격에 대하여 법률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조

1.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과 거주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출국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제14조

1.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타국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비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이 권리는 비정치적인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만으로 인하여 제기된 소추의 경우에는 활용될 수 없다.

제15조

1.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그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제16조

1.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혼인 기간 중 및 그 해소시 혼인에 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2. 결혼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도 완전한 합의에 의하여만 성립된다.
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구성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는 물론 타인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20조

1.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소속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21조

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국의 공무에 취임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3. 국민의 의사는 정부의 권위의 기초가 된다. 이 의사는 보통 및 평등 선거권에 의거하며, 또한 비밀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를 통하여 표현된다.

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 자신의 존엄성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실현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제23조

1. 모든 사람은 근로의 권리, 자유로운 직업 선택권, 공정하고 유리한 근로조건에 관한 권리 및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모든 근로자는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적 존엄에 합당한 생활을 보장하여 주며, 필요할 경우 다른 사회적 보호의 수단에 의하여 보완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

모든 사람은 근로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일을 포함한 휴식과 여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제25조

1. 모든 사람은 식량, 의복, 주택, 의료, 필수적인 사회역무를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지며, 실업, 질병, 불구,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다른 생계 결핍의 경우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2. 모지는 특별한 보살핌과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어린이는 부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등한 사회적 보호를 향유한다.

제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3.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진다.

제27조

1.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예술을 감상하며, 과학의 진보와 그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과학적, 문학적, 예술적 창작물에서 생기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28조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제시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및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제29조

1.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게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에서의 도덕심, 공공질서, 일반의 복지를 위하여 정당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만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다.
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될 수 없다.

제30조

이 선언의 그 어떠한 조항도 특정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할 목적의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행위를 행할 어떠한 권리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채택일 1989. 11. 20/발효일 1990. 9. 2/당사국 수 193/
대한민국 적용일 1991. 12. 20 단, 제43조제2항 개정(채택일 1995.12.12/발효일 2002.11.18)¹⁾

전 문

이 협약의 당사국은,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원칙에 따라, 인류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고유의 존엄성 및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정의 및 평화의 기초가 됨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체제하의 모든 국민들은 기본적인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신념을 헌장에서 재확인하였고, 확대된 자유 속에서 사회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로 결의하였음에 유념하며,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서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 구분에 의한 차별 없이 동 선언 및 규약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음을 선언하고 동의 하였음을 인정하고,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에서 아동기에는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선언하였음을 상기하며, 사회의 기초집단이며 모든 구성원 특히 아동의 성장과 복지를 위한 자연적 환경으로서 가족에게는 공동체안에서 그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와 원조가 부여되어야 함을 확신하며,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가족적 환경과 행복, 사랑 및 이해의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여야 함을 인정하고, 아동은 사회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되어야 하며, 국제연합헌장에 선언된 이상의 정신과 특히 평화·존엄·관용·자유·평등·연대의 정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함을 고려하고, 아동에게 특별한 보호를 제공하여야 할 필요성은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과 1959년 11월 20일 총회에 의하여 채택된 아동권리선언에 명시되어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1) 유보 : 대한민국 정부는 이 협약을 심의한 후, 이 협약의 제9조제3항, 제21조 가항 및 제40조제2항 나호(5)의 규정을 유보하면서 이 협약을 비준한다.

유보철회 : 상기 유보선언에 대해 대한민국은 동 협약 제9조제3항을 2008년 10월 16일 유보철회 하였음(조약 제1913호).

국제규약 (특히 제23조 및 제24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특히 제10조) 및 아동의 복지와 관련된 전문기구와 국제기구의 규정 및 관련문서에서 인정되었음을 유념하고, 아동권리선언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아동은 신체적·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 유념하고, “국내적 또는 국제적 양육위탁과 입양을 별도로 규정하는 아동의 보호와 복지에 관한 사회적 및 법적 원칙에 관한 선언”의 제규정, “소년법 운영을 위한 국제연합 최소 표준규칙”(베이징규칙) 및 “비상시 및 무력 충돌시 부녀자와 아동의 보호에 관한 선언”을 상기하고, 세계 모든 국가에 예외적으로 어려운 여건하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있으며, 이 아동들은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함을 인정하고, 아동의 보호와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각 민족의 전통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모든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가 아동의 생활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부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상, “아동”이라함은 아동에게 적용되는 법에 의하여 보다 조기에 성인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는 한 18세미만의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에 대한 배려와 보호에 책임 있는 기관, 편의 및 시설이 관계당국이 설정한 기준, 특히 안전과 위생분야 그리고 직원의 수 및 적격성은 물론 충분한 감독 면에서 기준에 따를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및 여타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하여 당사국은 가용 자원의 최대한도까지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제협력의 테두리 안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아동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부모 또는 적용가능한 경우 현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대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2. 당사국은 이 분야의 국내법 및 관련국제문서상의 의무에 따라 이러한 권리가 실행 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권리가 실행되지 아니하여 아동이 무국적으로 되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제8조

1. 당사국은 위법한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국적, 성명 및 가족관계를 포함하여 법률에 의하여 인정된 신분을 보존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
2. 아동이 그의 신분요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불법적으로 박탈당한 경우, 당사국은 그의 신분을 신속하게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원조와 보호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1.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적용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 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 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위의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또는 유기에 경우나 부모의 별거로 인하여 아동의 거소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떠한 절차에서도 모든 이해당사자는 그 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
4. 그러한 분리가 부모의 일방이나 쌍방 또는 아동의 감금, 투옥, 망명, 강제퇴거 또는 사망(국가가 억류하고 있는 동안 어떠한 원인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등과 같이 당사국에 의하여 취하여진 어떠한 조치의 결과인 경우에는, 당사국은 그 정보의 제공이 아동의 복지에 해롭지 아니하는 한, 요청이 있는 경우, 부모, 아동 또는 적

절한 경우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부재중인 가족구성원의 소재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의 제출이 그 자체로 관계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0조

1.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가족의 재결합을 위하여 아동 또는 그 부모가 당사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하기 위한 신청은 당사국에 의하여 긍정적이며 인도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취급 되어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이러한 요청의 제출이 신청자와 그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수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부모가 타국에 거주하는 아동은 예외적 상황 외에는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목적에 비추어 그리고 제9조제2항에 규정된 당사국의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아동과 그의 부모가 본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고 또한 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어떠한 국가로부터 출국할 수 있는 권리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이 협약에서 인정된 그 밖의 권리에 부합되는 제한에 의하여만 구속된다.

제11조

1. 당사국은 아동의 불법 해외이송 및 미귀환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양자 또는 다자협정의 체결이나 기존 협정에의 가입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동에게는 특히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법적·행정적 절차에 있어서도 직접 또는 대표자나 적절한 기관을 통하여 진술할 기회가 국내법적 절차에 합치되는 방법으로 주어져야 한다.

제13조

1. 아동은 표현에 대한 자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구두, 필기 또는 인쇄, 예술의 형태 또는 아동이 선택하는 기타의 매체를 통하여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국경에 관계없이 추구하고 접수하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2. 이 권리의 행사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한은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 가. 타인의 권리 또는 신망의 존중
 - 나.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

제14조

1.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부모 및 경우에 따라서는, 후견인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그를 감독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여야 한다.
3. 종교와 신념을 표현하는 자유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고 공공의 안전, 질서, 보건이나 도덕 또는 타인의 기본권적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제15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결사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다.
2. 이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는 법률에 따라 부과되고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 공공질서, 공중보건이나 도덕의 보호 또는 타인의 권리와 자유의 보호를 위하여 민주사회에서 필요한 것 외의 어떠한 제한도 과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1. 어떠한 아동도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 이거나 위법적인 간섭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명예나 신상에 대한 위법적인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2. 아동은 이러한 간섭 또는 비난으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당사국은 대중매체가 수행하는 중요한 기능을 인정하며, 아동이 다양한 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 특히 아동의 사회적·정신적·도덕적 복지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와 자료에 대한 접근권을 가짐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 가. 대중매체가 아동에게 사회적·문화적으로 유익하고 제29조의 정신에 부합되는 정보와 자료를 보급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나. 다양한 문화적·국내적 및 국제적 정보원으로부터의 정보와 자료를 제작·교환 및 보급하는데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장려하여야 한다.
- 다. 아동도서 제작과 보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 라. 대중매체로 하여금 소수집단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의 언어상의 곤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 마. 제13조와 제18조의 규정을 유념하며 아동 복지에 해로운 정보와 자료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지침의 개발을 장려 하여야 한다.

제18조

1. 당사국은 부모 쌍방이 아동의 양육과 발전에 공동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모 또는 경우에 따라서 후견인은 아동의 양육과 발달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그들의 기본적 관심이 된다.
2.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보장하고 촉진시키기 위하여, 당사국은 아동의 양육책임 이행에 있어서 부모와 후견인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하며, 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시설 및 편의의 개발을 보장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취업부모의 아동들이 이용할 자격이 있는 아동보호를 위한 편의 및 시설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다른 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보고·조회·조사·처리 및 추적 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

1. 일시적 또는 항구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하거나 가정환경에 있는 것이 스스로의 최선의 이익을 위하여 허용될 수 없는 아동은 국가로부터 특별한 보호와 원조를 부여받을 권리가 있다.
2.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러한 아동을 위한 보호의 대안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이러한 보호는 특히 양육위탁, 회교법의 카팔라, 입양, 또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아동 양육기관에 두는 것을 포함한다.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우에는 아동 양육에 있어 계속성의 보장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아동의 인종적·종교적·문화적 및 언어적 배경에 대하여 정당한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

제21조

-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 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국은
- 가. 아동의 입양은, 적용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 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친척 및 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의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결정하는 관계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나. 국제입양은, 아동이 위탁양육자나 입양가족에 두어질 수 없거나 또는 어떠한 적절한 방법으로도 출신국에서 양육되어질 수 없는 경우, 아동 양육의 대체수단으로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야 한다.
- 다. 국제입양에 관계되는 아동이 국내입양의 경우와 대등한 보호와 기준을 향유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라. 국제입양에 있어서 양육지정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재정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아니하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마. 적절한 경우에는 양자 또는 다자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조의 목적을 촉진시키며,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아동의 타국내 양육지정이 관계당국이나 기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1. 당사국은 난민으로서의 지위를 구하거나 또는 적용가능한 국제법 및 국내법과 절차에 따라 난민으로 취급되는 아동이, 부모나 기타 다른 사람과의 동반 여부에 관계없이, 이 협약 및 당해 국가가 당사국인 다른 국제 인권 또는 인도주의 관련 문서에 규정된 적용가능한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적절한 보호와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국제연합 및 국제연합과 협력하는 그 밖의 권한 있는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기구들이 그러한 아동을 보호, 원조하고 가족재결합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난민 아동의 부모나 다른 가족 구성원을 추적하는데 기울이는 모든 노력에 대하여도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협조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모나 다른 가족구성원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그 아동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을 박탈당한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이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은 보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제23조

1. 당사국은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아동이 존엄성이 보장되고 자립이 촉진되며 적극적 사회참여가 조장되는 여건 속에서 충분히 품위 있는 생활을 누려야 함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신청에 의하여 그리고 아동의 여건과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사정에 적합한 지원이, 활용가능한 재원의 범위안에서, 이를 받을만한 아동과 그의 양육 책임자에게 제공될 것을 장려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3. 장애아동의 특별한 어려움을 인식하며,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지원은 부모나 다른 아동양육자의 재산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장애아동의 가능한 한 전면적인 사회참여와 문화적·정신적 발전을 포함한 개인적 발전의 달성에 이바지하는 방법으로 그 아동이 교육, 훈련, 건강관리지원, 재활지원, 취업준비 및 오락기회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4. 당사국은 국제협력의 정신에 입각하여, 그리고 당해 분야에서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경험을 확대하기 위하여 재활, 교육 및 직업보도 방법에 관한 정보의 보급 및 이용을 포함하여, 예방의학분야 및 장애아동에 대한 의학적·심리적·기능적 처치분야에 있어서의 적절한 정보의 교환을 촉진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

제24조

1. 당사국은 도달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유아와 아동의 사망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 나.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
 - 다. 환경오염의 위험과 손해를 감안하면서, 기초건강관리 체계 안에서 무엇보다도

쉽게 이용가능한 기술의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라.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마.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은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수유의 이익, 위생 및 환경정화 그리고 사고예방에 관한 기초 지식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을 받으며 지원을 받을 것을 확보하는 조치

바. 예방적 건강관리, 부모를 위한 지도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과 편의를 발전시키는 조치

3. 당사국은 아동의 건강을 해치는 전통관습을 폐지하기 위하여 모든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이 조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배풀어져야 한다.

제25조

당사국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관리, 보호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관계당국에 의하여 양육지정 조치된 아동이, 제공되는 치료 및 양육지정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정기적으로 심사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제2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하며,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이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혜택은 아동 및 아동에 대한 부양책임자의 자력과 주변 사정은 물론 아동에 의하여 직접 행하여지거나 또는 아동을 대신하여 행하여지는 혜택의 신청과 관련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한 경우에 부여되어야 한다.

제27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및 사회적 발달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는 능력과 재산의 범위안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여건을 확보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3. 당사국은 국내 여건과 재정의 범위안에서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책임있는 자가 이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영양, 의복 및 주거에 대하여 물질적 보조 및 지원계획을 제공하여야 한다.
4. 당사국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기타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있는 자로부터 아동양육비의 회부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하여 재정적으로 책임있는 자가 아동이 거주하는 국가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 당사국은 국제협약의 가입이나 그러한 협약의 체결은 물론 다른 적절한 조치의 강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2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 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 나.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다.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라.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마.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률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

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특히 전 세계의 무지와 문맹의 퇴치에 이바지하고, 과학적·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

제29조

1. 당사국은 아동교육이 다음의 목표를 지향하여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 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개발
 - 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 다. 자신의 부모, 문화적 주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 라.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性)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 마.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2. 이 조 또는 제28조의 어떠한 부분도 개인 및 단체가, 언제나 제1항에 규정된 원칙들을 준수하고 당해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교육이 국가에 의하여 설정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0조

인종적·종교적 또는 언어적 소수자나 원주민이 존재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소수자에 속하거나 원주민인 아동은 자기 집단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고유문화를 향유하고, 고유의 종교를 신앙하고 실천하며, 고유의 언어를 사용할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

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32조

1.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협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지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이 조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그 밖의 국제 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단일 또는 복수의 최저 고용연령의 규정
 - 나. 고용시간 및 조건에 관한 적절한 규정의 마련
 - 다. 이 조의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처벌 또는 기타 제재수단의 규정

제33조

당사국은 관련 국제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적 사용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이러한 물질의 불법적 생산과 거래에 아동이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행정적·사회적·교육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특히 다음의 사항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양국간·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가. 아동을 모든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 나. 아동을 매음이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다.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제35조

당사국은 모든 목적과 형태의 아동의 약취유인이나 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국내적, 양국간, 다국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

당사국은 아동복지의 어떠한 측면에 대하여라도 해로운 기타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37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 된다.
- 나.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 한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 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합치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 라.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지며, 법원이나 기타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앞에서 자신이 당한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8조

1. 당사국은 아동과 관련이 있는 무력분쟁에 있어서, 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국제인도법의 규칙을 존중하고 동 존중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가야 한다. 15세에 달하였으나 18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징병하는 경우, 당사국은 최연장자에게 우선순위를 두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무력분쟁에 있어 민간인 보호를 위한 국제인도법상 의무에 따라서, 당사국은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을 보호 및 배려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0조

1.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지각을 촉진시키는데 부합하도록 처우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2.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문서의 관련규정을 고려하며,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 가. 모든 아동은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형사피의자가 되거나 형사기소되거나 유죄로 인정받지 아니한다.

- 나.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받는다.
- (1)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받는다.
 - (2)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후견인을 통하여 통지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 (3) 권한 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기타 적당한 지원하에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지체없이 사건이 판결되어야 하며,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 환경, 부모 또는 후견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4)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하며, 대등한 조건하에 자신을 위한 증인의 출석과 신문을 확보한다.
 - (5)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판결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한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 (6) 아동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원의 지원을 받는다.
 - (7)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형사피의자,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아동에게 특별히 적용될 수 있는 법률, 절차, 기관 및 기구의 설립을 촉진하도록 노력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 가. 형법위반능력이 없다고 추정되는 최저 연령의 설정
- 나. 적절하고 바람직스러운 경우, 인권과 법적 보장이 완전히 존중된다는 조건하에 이러한 아동을 사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루기 위한 조치
4. 아동이 그들의 복지에 적절하고 그들의 여건 및 범행에 비례하여 취급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 지도 및 감독명령, 상담, 보호관찰, 보호양육, 교육과 직업훈련계획 및 제도적 보호에 대한 그 밖의 대체방안 등 여러 가지 처분이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제41조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아동권리의 실현에 보다 공헌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가. 당사국의 법
- 나.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가지는 국제법

제2부

제42조

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통하여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진다.

제43조

1. 이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달성함에 있어서 당사국이 이룩한 진전 상황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하에 규정된 기능을 수행하는 아동권리위원회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 능력이 인정된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형평한 지리적 배분과 주요 법체계를 고려하여 당사국의 국민 중에서 선출되며, 개인적 자격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 자의 명단 중에서 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각 당사국은 자국민 중에서 1인을 지명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최초의 선거는 이 협약의 발효 일부터 6월 이내에 실시되며, 그 이후는 매 2년마다 실시된다. 각 선거일의 최소 4월 이전에 국제 연합 사무총장은 당사국에 대하여 2월 이내에 후보자 지명을 제출하라는 서한을 발송하여야 한다. 사무총장은 지명한 당사국의 표시와 함께 알파벳순으로 지명된 후보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를 이 협약의 당사국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5. 선거는 국제연합 본부에서 사무총장에 의하여 소집된 당사국 회의에서 실시된다. 이 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 2를 의사정족수로 하고, 출석하고 투표한 당사국 대표의 최대다수표 및 절대다수표를 얻는 자가 위원으로 선출된다.

6. 위원회의 위원은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위원은 재지명된 경우에는 재선될 수 있다. 최초의 선거에서 선출된 위원 중 5인의 임기는 2년 후에 종료된다. 이들 5인 위원의 명단은 최초선거후 즉시 동 회의의 의장에 의하여 추첨으로 선정된다.
7. 위원회 위원이 사망, 사퇴 또는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임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경우, 그 위원을 지명한 당사국은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자국민중에서 잔여 임기를 수행할 다른 전문가를 임명한다.
8. 위원회는 자체의 절차규정을 제정한다.
9. 위원회는 2년 임기의 임원을 선출한다.
10. 위원회의 회의는 통상 국제연합 본부나 위원회가 결정하는 그 밖의 편리한 장소에서 개최된다. 위원회는 통상 매년 회의를 한다. 위원회의 회의기간은 필요한 경우 총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이 협약 당사국 회의에 의하여 결정되고 재검토된다.
1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효과적인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12. 이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위원회의 위원은 총회의 승인을 얻고 총회가 결정하는 기간과 조건에 따라 국제연합의 재원으로부터 보수를 받는다.

제44조

1. 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그들이 채택한 조치와 동 권리의 향유와 관련하여 이룩한 진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 가. 관계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약이 발효한 후 2년 이내
 - 나. 그 후 5년마다
2. 이 조에 따라 제출되는 보고서는 이 협약상 의무의 이행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가 있을 경우 이를 적시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또한 관계국에서의 협약이행에 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3. 위원회에 포괄적인 최초의 보고서를 제출한 당사국은, 제1항 나호에 의하여 제출하는 후속보고서에 이미 제출된 기초적 정보를 반복할 필요는 없다.
4. 위원회는 당사국으로부터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2년마다 경제사회 이사회를 통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6. 당사국은 자국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자국내 일반에게 널리 활용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

이 협약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이 협약이 대상으로 하는 분야에서의 국제협력 을 장려하기 위하여

- 가.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그 밖의 기관은 이 협약 중 그들의 권한 범위 안에 속하는 규정의 이행에 관한 논의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가진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 아동기금 및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구에 대하여 각 기구의 권한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국제연합의 그 밖의 기관에게 그들의 활동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의 이 협약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나. 위원회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적 자문이나 지원을 요청하거나 그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당사국의 모든 보고서를 그러한 요청이나 지적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면 동 의견이나 제안과 함께 전문기구, 국제연합아동기금 및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구에 전달하여야 한다.
- 다. 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위원회를 대신하여 아동권리와 관련이 있는 특정 문제를 조사하도록 요청할 것을 총회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
- 라. 위원회는 이 협약 제44조 및 제45조에 의하여 접수한 정보에 기초하여 제안과 일반적 권고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과 일반적 권고는 당사국의 논평이 있으면 그 논평과 함께 모든 관계 당사국에 전달되고 총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제3부

제46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47조

이 협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8조

이 협약은 모든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어야 한다.

제49조

1. 이 협약은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이후에 이 협약을 비준하거나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국가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 기탁 후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제50조

1. 모든 당사국은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동 제출에 의하여 사무총장은 당사국에게 동 제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붙이기 위한 당사국회의 개최에 대한 찬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과 함께 개정안을 당사국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이러한 통보일부터 4월 이내에 당사국 중 최소 3분의 1이 회의 개최에 찬성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주관하에 동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동 회의에 출석하고 표결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 개정안은 그 승인을 위하여 국제연합 총회에 제출된다.
2.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개정안은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승인되고, 당사국의 3분

의 2이상의 다수가 수락하는 때에 발효한다.

3. 개정안은 발효한 때에 이를 수락한 당사국을 구속하며, 그 밖의 당사국은 계속하여 이 협약의 규정 및 이미 수락한 그 이전의 모든 개정에 구속된다.

제51조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비준 또는 가입시 각국이 행한 유보문을 접수하고 모든 국가에게 이를 배포하여야 한다.
2. 이 협약의 대상 및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유보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발송된 통고를 통하여 언제든지 철회될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국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한 통고는 사무총장에게 접수된 날부터 발효한다.

제52조

당사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서면통고를 통하여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 후에 발효한다.

제53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 협약의 수탁자로 지명된다.

제54조

아랍어·중국어·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서반어본이 동등하게 정본인 이 협약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 전권대표들은 각국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서 명하였다.

제5부 난민 및 무국적자의 보호

Protection of Refugee and Statelessness

15.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채택일 1954. 9. 28 / 발효일 1960. 6. 6 / 당사국 수 52 / 대한민국 적용일 1962. 11. 20

모든 계약국들은

국제연합 헌장과 1948년 12월 28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이 인류가 차별 없이 기본권리와 자유를 향유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음을 고려하고,

국제연합이 수차에 걸쳐서 무국적자에 대한 심심한 관심을 표명하였고 또한 이들 무국적자가 기본권리와 자유를 가능한 최대한도로 행사하도록 확보하는 데 노력하여 왔음을 고려하고 피난민이기도 한 무국적자들만이 1951년 7월 28일의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과 당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무국적자들이 다수임을 고려하고,

국제적 협정에 의하여 무국적자의 지위를 규제 개선할 것이 요망됨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일반 규칙

제1조 (“무국적자”라는 용어의 정의)

1. 본 협약의 적용상 “무국적자”라는 용어는 어떠한 국가에 의하여도 그의 법률의 시행상 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는 자를 말한다.
2. 본 협약은 다음과 같은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i) 국제연합 난민규제 고등판무관 이외의 국제연합의 기관 및 단체로부터 보호 또는 원조를 받고 있는 자로서 그러한 보호와 원조를 받는 한에 있어서
 - (ii) 그들이 거주를 정한 국가의 관할당국에 의하여 그 국민에게 부여되는 의무를 향유하는 것으로 인정된 자
 - (iii) 그들에 관하여 하기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자
 - (a) 그들이 평화에 대한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반한 범죄를 규제하기 위하여 작성된 국제문서에 정의된 바의 그러한 범죄를 범한 사실
 - (b) 그들이 그 거주하는 국가에 입국하기 전에 당해국 외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범한 사실
 - (c) 그들이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범한 사실

제2조(일반적 의무) 모든 무국적자는 그가 거주하는 국가에 대하여 특히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취하는 조치뿐만 아니라 그 법령에도 복종할 의무를 진다.

제3조(불차별) 체약국은 인종, 종교 또는 출신국의 차별 없이 본 협약의 규정을 무국적자에 적용한다.

제4조(종교) 체약국은 그 영토 내에서 신앙의 자유 및 자녀의 종교, 교육의 자유에 관하여 그 국민에게 허용하는 바와 적어도 동등한 대우를 무국적자에게 허용한다.

제5조(본 협약과는 별도로 부여된 권리) 본 협약의 어느 규정도 당사국이 본 협약과는 별도로 무국적자에게 부여한 권리와 권익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못한다.

제6조(“동일한 사정하에(서)”라는 용어) 본 협약의 적용상 “동일한 사정하에(서)”라는 용어는 특정의 개인이 만약 그가 무국적자가 아니라면 문제의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하는 제 요구조건(체류 또는 거주 기간과 조건에 관한 요건을 포함)이 무국적자에 의하여 충족되어야 하며 그 성질상 무국적자가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은 제외함을 의미한다.

제7조(상호주의의 면제)

1. 협약이 더욱 적절한 규정을 둔 경우를 제외하고 체약국은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허용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무국적자에게 허용한다.
2. 모든 무국적자는 3년 간의 거주 후에 체약국 영토 내에서 입법상의 상호주의의 면제를 받는다.
3. 각 체약국은 본 협약이 그 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에 상호주의 없이 무국적자에게 부여한 권리와 이익을 계속해서 부여한다.
4. 체약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무국적자들이 부여받은 바 이상의 권리와 이익을 상호주의 없이 무국적자에게 부여할 가능성과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무국적자에게 상호주의로부터의 면제를 인정할 가능성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5.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본 협약 제13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및 제22조에 서 말한 권리와 이익 및 본 협약이 규정하지 않는 권리와 이익에 공히 적용된다.

제8조(예외적 조치의 면제) 외국인 또는 국민이었던 자의 신체나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취하여지는 예외적 조치에 관하여 체약국은 무국적자가 문제된 외국의 국적을 전에 가졌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 자국의 법률로 인하여 본조에 표현된 일반원칙의 적용이 금지되는 체약국은 적당한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무국적자를 위하여 면제를 허용한다.

제9조(잠정적 조치) 본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전시 또는 기타의 중대하고 예외적인 상황

에 처하여 어떤 특정인의 경우에 있어서 그가 사실상 무국적자이며 또한 그에 관하여 국가의 안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잠정적 조치의 존속이 필요하다고 체약국이 결정할 때까지 국가안전에 필요하다고 고려하는 잠정적 조치를 체약국이 취함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제10조(거주의 계속)

1. 무국적자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강제로 추방되고, 체약국 영토로 이전되어 현재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그러한 강제체류기간은 그 영토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2. 무국적자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체약국 영토로부터 강제로 추방되고 본 협약의 발효일자 이전에 거주의 목적으로 당해국에 귀환한 경우에 그러한 강제추방 전후의 거주기간은, 연속적 거주가 요구되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하나의 연속적 기간으로 간주한다.

제11조(무국적 선원) 체약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의 선원으로서 정식으로 근무하는 무국적자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체약국은 그 영토 내의 그들의 정착 특히 타국에 있어서의 그들의 정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증명서 또는 임시 입국허가서의 발급에 관하여 동정적인 고려를 행한다.

제 2 장 법적 지위

제12조(신분)

1. 무국적자의 신분은 그 주소지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또는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 국가의 법률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신분에 종속하는 무국적자의 기득 권리 특히 결혼에 부속되는 권리는 필요하다면 체약국의 법률이 요구하는 정식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당해국에 의하여 존중된다. 단, 문제의 권리는 만일 그가 무국적자가 되지 않았다면 당해국 법률에 의하여 인정을 받는 권리에야 한다.

제13조(동산 및 부동산) 체약국은 동산 및 부동산의 취득과 이에 관한 기타의 권리 및 동산과 부동산의 차용 및 기타의 계약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무국적자에게 가능한 한 유리하며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하여되는 바보다 불리하지 않는 대우를 하여한다.

제14조(예술상의 권리와 공업소유권) 발명, 의장이나 설계, 상표 및 상호와 같은 공업소유권 및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에 대한 권리 등의 보호에 관하여 무국적자는 그가

평소에 거주하는 국가에서 그 국가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등한 보호를 부여 받는다. 다른 체약국 영토에 있어서 그는 그가 평소에 거주하는 국가의 국민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보호를 부여받는다.

제15조(단체의 권리) 비정치적이며 비영리적인 단체와 노동조합에 관하여 체약국은 그 영토 내에 합법적으로 체재하는 무국적자에게 가능한 한 유리하며 또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든지 동일한 사정하에서 일반적으로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허여한다.

제16조(제소권)

1. 무국적자는 모든 체약국 영토에 있어서 법원에 자유로이 제소할 수 있다.
2. 무국적자는 그가 평소에 거주하는 체약국 내에서 법률상의 원조와 소송비용보증금(Cautio Judicatum solvi)의 면제를 포함하여 제소권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그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3. 무국적자는 그가 평소에 거주하는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의 평소의 거주지 국가의 국민에게 허여되는 대우를 허여받는다.

제 3 장 유급 고용

제17조(유임직업)

1.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토 내에 체재하는 무국적자에게 유임직업에 종사할 권리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리하며 또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허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허여한다.
2. 체약국은 유임직업에 관하여 모든 무국적자의 권리 특히 노동보충계획이나 이민 계획에 의거하여 그 영토에 들어온 무국적자의 권리를 국민의 권리와 동일하게 할 것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18조(자가영업) 체약국은 자신을 위하여 농업, 공업, 수예업 및 상업에 종사하며 또한 상업 및 공업회사를 설립할 권리에 관하여 그 영토 내에 합법적으로 체재하는 무국적자에게 가능한 한 유리하며 또는 여하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허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허여한다.

제19조(자유직업) 각 체약국은 그 영토 내에 합법적으로 체재하며 그 국가의 관할 당국이 인정하는 면허장을 소지하고 또한 자유직업에 종사할 것을 희망하는 무국적자에게 가능한 한 유리하며 또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허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허여한다.

제 4 장 복지

제20조(배급) 주인 전반에 적용되며 공급이 부족한 생산품의 전반적 분배를 규제하는 배급제도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무국적자는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하여받는다.

제21조(주택) 체약국은 주택에 관하여 그 문제가 법령에 의하여 규제되거나 또는 공공당국의 통제에 복종하는 한에 있어서 그 영토 내에 합법적으로 체재하는 무국적자에게 가능한 한 유리하며 또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하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여한다.

제22조(학교교육)

1. 체약국은 초등교육에 관하여 국민에게 하여한 것과 동등한 대우를 무국적자에게 하여한다.
2. 체약국은 초등교육 이외의 다른 교육에 관하여 특히 연구의 편의, 외국학교증명서,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등의 인정, 학비면제 및 장학금의 급여에 관하여 가능한 한 유리하며 또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하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무국적자에게 하여한다.

제23조(공공구호)

체약국은 자국영토 내에 합법적으로 체재하는 무국적자에게 공공구호의 원조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하여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하여한다.

제24조(노동법률과 사회보장)

1. 체약국은 아래의 사항에 관하여 그 영토 내에 합법적으로 체재하는 무국적자에게 국민에게 하여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하여한다.
 - (a) 그러한 사항이 법령에 의하여 규제되거나 행정당국의 통제에 복종하는 한에 있어서 보상(보상의 일부를 형성하는 가족수당을 포함), 작업시간, 초과근무, 유급공휴일, 가내작업의 제한, 최저고용연령, 견습과 훈련, 부인노동과 유년노동 및 단체교섭 이익의 향유
 - (b) 사회보장(취업중의 부상, 취업과 관련된 질병, 산모, 와병, 불구, 노령, 사망, 실업가족의 책임 및 국내법령에 의하여 사회보장계획의 보호를 받는 기타의 불의의 사고 등), 단 아래의 제한에 따라야 한다.
 - (i) 취득한 권리와 취득 수속 중에 있는 권리의 유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 (ii) 거주지국의 국내 법령은 공공기금에서 전적으로 지불하는 급부나 또는 급부의 부분에 관하여 또한 통상연금의 지급에 대하여 규정된 기여조건을 충족

- 하지 않는 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
2. 취업 중의 상해나 직업과 관련된 질병에 기인되는 무국적자의 사망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수혜자의 거주지가 체약국 영토 외부에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3. 체약국은 사회보장에 관하여 취득한 권리 또는 취득 수속 중에 있는 권리의 유지에 관하여 그들 사이에 체결된 또는 장차에 체결될 협정의 이익을 무국적자에게 부여한다. 단, 다만 문제의 협정에 대한 서명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요건에만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
 4. 체약국은 어느 때에라도 전기의 체약국과 비체약국간에 시행될 유사한 협정의 이익을 가능한 한 무국적자에게 부여할 것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 5 장 행정적 조치

제25조(행정적 원조)

1. 무국적자의 권리행사가 그가 의뢰할 수 없는 외국당국의 원조를 통상적으로 필요 할 경우에는 그 영토에 그가 거주하는 체약국은 그 자체의 당국이 그러한 원조를 그에게 부여하도록 조치한다.
2. 제1항에서 말한 당국은 통상적으로 외국인의 국가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를 통하여 그들에게 교부되는 문서 또는 증명서를 무국적자에게 발급하거나 또는 그 감독하에 발급되도록 한다.
3. 전기와 같이 교부한 문서 또는 증명서는 외국인의 국가당국에 의하여 또는 이를 통하여 그들에게 교부되는 정식문서에 대신하여 효력을 가지며 또한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신빙성을 갖는다.
4. 궁핍한 자에게 허용할 수 있는 특별대우를 조건으로 하여 본 규정에서 말한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수료는 적절한 금액이며 또한 유사한 사무에 대하여 국민에게 과하는 그것과 동액이어야 한다.
5. 본 조의 제규정은 제27조 및 제28조를 해하지 못한다.

제26조(이전의 자유) 각 체약국은 그 영토 내에 합법적으로 체재하는 무국적자에게 동일한 사정하에서 외국인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영토 내에서 그 거주지를 선택하며 또한 자유로이 이전할 권리를 부여한다.

제27조(신원증명서) 체약국은 유효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그 영토 내의 무국적자에게 신원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8조(여행증명서) 체약국은 그 영토 내에 합법적으로 체재하는 무국적자에게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상당한 이유로 인하여 별도의 조치가 요구되지 않는 한 그 영토 외로의 여행목적을 위하여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며 또한 본 협정 부속서의 제규정은 이러한 문서에 관하여 적용된다. 체약국은 그 영토 내의 다른 어떠한 무국적자에게도 이러한 여행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또한 체약국은 특히 그들의 합법적인 거주지국가로부터 여행증명서를 받지 못하는 그 영토 내의 무국적자에 대한 이러한 여행증명서의 발급에 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행한다.

제29조(재정상의 부과금)

1. 체약국은 유사한 사정하에 국민에게 부과하는 또는 장차에 부과할 것 이외의 또는 그보다 고율의 관세, 수수료 또는 조세 등 여하한 명목의 것이라도 이를 무국적자에게 부과하지 않는다.
2. 전항의 어떠한 규정도 신원증명서를 포함한 행정적 문서를 외국인에게 발급하는데 대한 수수료에 관한 법령을 무국적자에게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제30조(재산의 이전)

1. 체약국은 무국적자가 그 영토 내에 반입한 재산을 정착의 목적으로 입국허가를 받은 다른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그 법령에 따라서 허가한다.
2. 체약국은 무국적자가 그 위치 여하를 불문하며 또한 그들의 입국이 허가된 타국에 있어서 그들의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의 이전허가를 신청하는 데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

제31조(추방)

1. 체약국은 합법적으로 그 영토에 체재하는 무국적자를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이유 이외에는 추방하지 못한다.
2. 이러한 무국적자의 추방은 타당한 법률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결정에 의하여서만 행하여진다. 상당한 국가안전상의 이유가 다른 조치를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국적자는 자신을 소명할 증거를 제시하며 또한 관할당국 또는 관할당국이 특별히 지정한 자에게 상소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그 대리인을 세우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3. 체약국은 이러한 무국적자가 타국가에의 합법적인 입국 허가를 구할 수 있는 합당한 기간을 허여한다. 체약국은 그 기간 동안 동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적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32조(귀화) 체약국은 무국적자의 동화 및 귀화를 위하여 가능한 한 편의를 도모한다. 특히 체약국은 귀화절차를 신속화하며 또한 이러한 절차의 수수료 및 비용은 가능

한 한 인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제 6 장 최종 조항

제33조(국내 법령의 통고)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체약국이 본 협정의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택할 법령을 통고한다.

제34조(분쟁의 해결) 본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으로서 다른 방법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분쟁당사국 중 일국의 요청에 의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

제35조(서명, 비준, 가입)

1. 본 협약은 서명을 위하여 국제연합본부에 1955년 12월 31일까지 개방한다.
2. 본 협약은 하기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 (a) 국제연합 회원국가
 - (b)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국제연합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된 국가 및
 - (c) 국제연합 총회가 서명 또는 가입초청을 발송한 국가
3. 본 협약은 비준되어야 하며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4. 본 협약은 본조 제2항에 열거한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한다. 가입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가입서를 기탁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36조(지역적 적용 조항)

1. 어느 국가나,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국제관계상 당해 국가가 그 국제관계에 책임을 지는 전체 또는 그 일부에 본 협약이 적용됨을 선언할 수 있다. 이러한 선언은 본 협약이 관계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할 때에 발효한다.
2. 그 후에는 언제든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통고함으로써 그러한 적용을 행하며 또한 이러한 적용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이 통고 접수일의 90일 후 또는 관계국에 대하여 본 협약이 발효하는 일자의 양자 중 낮은 쪽을 취한다.
3. 본 협약이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적용되지 않는 영토에 관하여는 관계 각 국가는 헌법상의 이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러한 영토국 정부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여 그러한 영토에 대하여 본 협약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고려한다.

제37조(연방 조항) 연방 또는 비단일국가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래의 규정을 적용한다.

- (a) 연방 입법당국의 입법권에 속하는 본 협약 조문에 관하여 연방정부의 의무는 그 정도까지 연방국가 아닌 당사국의 의무와 동일하다.

- (b) 연방의 헌법제도상 입법행위를 취할 채무가 없는 하방(下邦)주 또는 현의 입법권 내에 속하는 본 협약의 제조항에 관하여 연방정부는 가능한 한 단시일 내에 그러한 조항을 국가의 관계당국에 호의적인 권고와 함께 통고한다.
- (c) 본 협약의 연방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통하여 발송된 다른 체약국의 요청이 있을 때에 본 협약의 특정규정에 관하여 동 규정이 입법 또는 기타의 행위에 의하여 효력이 부여된 범위를 표시하는 연방국의 법률 및 관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38조(유보)

1. 체약국은 서명, 비준 또는 가입시에 본 협약의 제1조, 제3조, 제4조, 제16조 제1항과 제33조 내지 제42조 이외의 조항에 대하여 유보를 행할 수 있다.
2. 본조 제1항에 의거하여 유보를 행하는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유보의 철회에 관한 통고를 행함으로써 언제든지 유보를 철회할 수 있다.

제39조(효력의 발생)

1. 본 협약은 여섯 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일자의 9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여섯 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후 본 협약을 비준 또는 이에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는 본 협약은 그러한 국가가 비준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일자의 9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40조(폐기)

1.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에 의하여 언제든지 본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2. 이러한 폐기통고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이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1년 후에 관계 체약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3. 제36조에 의하여 선언 또는 통고를 행한 체약국은 그 후 언제든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본 협약이 동 사무총장에 의하여 통고기 접수된 일자의 1년 후에 모든 영토에 적용함을 중지한다는 선언을 행할 수 있다.

제41조(개정)

1. 체약국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통고로써 언제든지 본 협약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2. 국제연합 총회는 전기의 요청에 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할 때에는 이를 권고한다.

제42조(국제연합 사무총장의 통고)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국제연합의 모든 가맹국과 제35조에 규정한 비가맹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통고한다.

- (a) 제35조에 의거한 서명 비준 및 가입
- (b) 제36조에 의거한 선언 및 통고
- (c) 제38조에 의거한 유보 및 철회
- (d) 제39조에 의거한 본 협약의 발효일자
- (e) 제40조에 의거한 폐기 및 통고
- (f) 제41조에 의거한 개정의 요청

이상의 증거로써 하기의 서명자는 정당하게 위임을 받아 각자의 정부를 위하여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1954년 9월 28일 뉴욕에서 단일본으로 작성되었으며 그의 영어, 불어 및 서반아이어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또한 국제연합 문서보관소에 기탁되고 그 인증등본은 모든 국제연합가맹국과 제35조에 규정된 비가맹국에 교부한다.

부속서

- 제1항 1. 본 협약 제28조에 규정한 여행증명서는 1954년 9월 28일 협약의 규정에 의거하여 그 소지자가 무국적자임을 표시한다.
2. 동 증명서는 적어도 2개 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중 하나가 영어나 불어이어야 한다.
3. 채약국은 본 부속서에 첨부된 여행증명서 양식의 채택이 요망됨을 고려한다.
- 제2항 교부국의 통용되는 규정에 의거하여 아동은 부모 또는 특별한 경우에 다른 성인의 여행증명서에 포함할 수 있다.
- 제3항 증명서의 교부에 대하여 과하는 수수료는 내국민의 여권에 대한 최저수수료를 초과하지 못한다.
- 제4항 특별 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증명서는 가능한 한 최다수의 국가에 대하여 유효하도록 작성한다.
- 제5항 증명서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유효기간을 갖도록 한다.
- 제6항 1. 증명서의 유효기간의 갱신 또는 연장은 그 소지자가 다른 영토에 합법적인 거주를 정하지 않고 증명서 교부당국이 있는 영토 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한 전 기한 교부당국이 처리할 사무이다. 신 증명서의 교부는 동일한 조건하에서 구 증명서를 교부한 당국이 처리할 사무이다.
2. 외교 또는 영사 당국은 자국의 정부가 교부한 여행증명서의 효력을 6개월을 초

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다.

3. 체약국은 자국 영토 내의 합법적인 거주가 아니며 그 합법적인 거주지 국가로부터 여행증명서를 취득할 수 없는 무국적자에 대하여 여행증명서의 효력의 갱신 또는 연장 또는 신 증명서의 교부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

제7항 체약국은 본 협약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교부된 증명서의 효력을 인정한다.

제8항 무국적자가 가려고 원하는 국가의 관할당국은 그의 입국을 허가한 경우 및 사증을 요하는 경우에 동 무국적자가 그 소지자인 증명서에 사증을 첨부한다.

- 제9항 1. 체약국은 최종행선지 영토까지의 사증을 취득한 무국적자에게 통과사증을 교부할 것을 약속한다.
2. 전기 사증의 교부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의 거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로써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10항 출국사증, 입국사증 또는 통과사증에 대한 수수료는 외국인 여권사증에 대한 수수료의 최저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1항 무국적자가 다른 체약국 영토에 합법적으로 거주를 정한 경우에 신 증명서의 교부에 대한 책임은 제28조의 규정과 조건에 의거하여 무국적자가 신청할 권리가 있는 영토의 관할당국에 있다.

제12항 신 증명서를 교부하는 당국은 구 증명서를 회수하여 동 증명서를 반환하도록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부국에 이를 반환한다. 기타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 증명서를 회수 파기한다.

- 제13항 1. 본 협약 제28조에 의거하여 교부된 여행증명서는 반대되는 기재사항이 없는 한 그 유효기간 동안 언제든지 교부국 영토 내에 재입국할 권리를 소지자에게 허여한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소지자가 증명서를 교부하는 국가에 귀환하는 기간은 무국적자가 여행할 것을 신청한 국가가 재입국할 권리를 부여하는 여행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2. 전기 1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체약국은 증명서 소지자에게 그 영토로부터의 출국 또는 영토에의 귀환에 관하여 규정될 절차에 따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항 오직 제13항의 규정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본 부속서의 제 규정은 체약국 영토에의 입국, 통과, 거주 및 정주와 동 영토로부터의 출국에 대한 조건을 규제하는 법령에 결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5항 증명서의 교부 또는 이의 기재는 소지자의 신분(특히 국적에 관하여)을 결정하거나 변경하지 않는다.

제16항 증명서의 교부는 소지자에게 교부국의 외교 또는 영사당국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결코 부여하지 않으며 또한 전기의 당국에 대하여 보호의 권리를 사실상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여행 증명서의 양식 증명서는 소책자형(약 15×10센티미터의 크기)으로 하며 화학적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한 말소 또는 변경을 용이하게 간취(看取)할 수 있도록 인쇄하고 각 면마다 연속적으로 교부국의 국어로써 “1954년 9월 28일자 협약”이라는 말을 인쇄할 것을 권고한다.

소책자의 표지

여행증명서
 (“1954년 9월 28일자 협약”)

제 호

(1)

여행증명서

(1954년 9월 28일 협약)

본 증명서는 그 효력을 연장 또는 갱신하지 않는 한에 효력을 상실한다.

성명

세례명

동반 소아의 수

1. 본 증명서는 소지자에게 내국민 여권 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행증명서를 소지하게 할 목적으로써만 교부되며 또한 결코 소지자의 국적을 변경하지 않는다.
2. 소지자는 후부(後部)에 더 늦은 일자가 명기되지 않는 한년월일 또는전에국(증명서 교부당국의 국가)으로 귀환할 것을 허가한다(소지자가 귀환하도록 허가된 기간은 소지자가 여행할 것을 요청한 국가가 재입국의 권리를 부여하는 여행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3. 소지자가 이 증명서를 교부한 국가 이외의 국가에 거주를 정하는 경우에 다시 여행할 것을 원하면 그는 거주지국가의 관할당국에 신 증명서의 교부를 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구 여행증명서는 신 증명서를 교부하는 당국에 의하여 회수되며 그것을 교부한 당국에 반환한다)(주 1).

(본 증명서는 표지를 제외하고 32면으로 되어 있음)

주 1) 팔호 안의 구절은 정부가 원하는 바에 따라서 이를 삽입한다.

(2)

출생지 및 생년월일

직업

현주소

* 처의 본명 및 세례명

*부(夫)의 성명 및 세례명

신원사항

신장

모발

안색(眼色)

코

안면의 형상

안색(顔色)

특징

소지자와 동반 자녀

성명	세례명	출생지 및 생년월일	성별
.....
.....
.....
.....

* 적용되지 않는 것은 말소한다.
(본 증명서는 표지를 제외하고 32면으로 되어 있음)

(3)

소지자의 사진 및 교부당국의 소인(消印)

소지자의 지문(필요한 경우)

소지자의 서명

(본 증명서는 표지를 제외하고 32면으로 되어 있음)

(4)

1. 본 증명서는 하기 국가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다:

.....

2 이 증명서를 교부하는 데 증거가 되는 서류:

.....

교부지

일자

증명서 교부당국의 서명 및 소인:

지불수수료 :

(본 증명서는 표지를 제외하고 32면으로 되어 있음)

(5~6)

효력의 연장 또는 갱신

지불수수료 :

..... 부터

..... 까지

조처지(措處地) :

일자

증명서의 효력을 연장 또는 갱신하는 당국의 서명 및 소인

(본 증명서는 표지를 제외하고 32면으로 되어 있음)

(7~32)

(사증)

본 증명서 소지자의 성명을 각 사증마다 기재하여야 한다.

(본 증명서는 표지를 제외하고 32면으로 되어 있음)

15.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PREAMBLE

The High Contracting Parties,

Considering that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pproved on 10 December 1948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have affirmed the principle that human beings shall enjoy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without discrimination,

Considering that the United Nations has, on various occasions, manifested its profound concern for stateless persons and endeavoured to assure stateless persons the widest possible exercise of these fundamental rights and freedoms,

Considering that only those stateless persons who are also refugees are covered by the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of 28 July 1951, and that there are many stateless persons who are not covered by that Convention,

Considering that it is desirable to regulate and improve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by an international agreement,

Have agreed as follows: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Definition of the term "stateless person"

1.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the term "stateless person" means a person who is not considered as a national by any State under the operation of its law.
2. This Convention shall not apply:
 - (i) To persons who are at present receiving from organs or agencies of the United Nations other than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protection or assistance so long as they are receiving such protection or assistance;
 - (ii) To persons who are recogniz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untry in which they have taken residence as having the rights and obligations which are attached to the possession of the nationality of that country;
 - (iii) To persons with respect to whom there are serious reasons for considering that:
 - (a) They have committed a crime against peace, a war crime, or a crime against humanity, as defined in the international instruments drawn up to make provisions in respect of such crimes;
 - (b) They have committed a serious non-political crime outside the country of their residence prior to their admission to that country;
 - (c) They have been guilty of acts contrary to the purposes and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2. General obligations

Every stateless person has duties to the country in which he finds himself, which require in particular that he conform to its laws and regulations as well as to measures taken for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Article 3. Non-discrimination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apply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to stateless persons without discrimination as to race, religion or country of origin.

Article 4. Religion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accord to stateless persons within their territories treatment at least as favourable as that accorded to their nationals with respect to freedom to practise their religion and freedom as regards the religious education of their children.

Article 5. Rights granted apart from this Convention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be deemed to impair any rights and benefits granted by a Contracting State to stateless persons apart from this Convention.

Article 6. The term "in the same circumstances"

For the purpose of this Convention, the term "in the same circumstances" implies that any requirements (including requirements as to length and conditions of sojourn or residence) which the particular individual would have to fulfil for the enjoyment of the right in question, if he were not a stateless person, must be fulfilled by him, with the exception of requirements which by their nature a stateless person is incapable of fulfilling.

Article 7. Exemption from reciprocity

1. Except where this Convention contains more favourable provisions, a Contracting State shall accord to stateless persons the same treatment as is accorded to aliens generally.
2. After a period of three years' residence, all stateless persons shall enjoy exemption from legislative reciprocity in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States.
3.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continue to accord to stateless persons the rights and benefits to which they were already entitled, in the absence of reciprocity, at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for that State.
4.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consider favourably the possibility of according to stateless persons, in the absence of reciprocity, rights and benefits beyond those to which they are entitled according to paragraphs 2 and 3, and to extending exemption from reciprocity to stateless persons who do not fulfil the conditions provided for in paragraphs 2 and 3.
5.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2 and 3 apply both to the rights and benefits referred to in articles 13, 18, 19, 21 and 22 of this Convention and to rights and benefits for which this Convention does not provide.

Article 8. Exemption from exceptional measures

With regard to exceptional measures which may be taken against the person, property or interests of nationals or former nationals of a foreign State,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 apply such measures to a stateless person solely on account of his having previously possessed the nationality of the foreign State in question. Contracting States which, under their legislation, are prevented from applying the general principle expressed in this article shall, in appropriate cases, grant exemptions in favour of such stateless persons.

Article 9. Provisional measures

Nothing in this Convention shall prevent a Contracting State, in time of war or other grave and exceptional circumstances, from taking provisionally measures which it considers to be essential to the national security in the case of a particular person, pending a determination by the Contracting State that that person is in fact a stateless person and that the continuance of such measures is necessary in his

case in the interests of national security.

Article 10. Continuity of residence

1. Where a stateless person has been forcibly displaced during the Second World War and removed to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State, and is resident there, the period of such enforced sojourn shall be considered to have been lawful residence within that territory.
2. Where a stateless person has been forcibly displaced during the Second World War from the territory of a Contracting State and has, prior to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Convention, returned there for the purpose of taking up residence, the period of residence before and after such enforced displacement shall be regarded as one uninterrupted period for any purposes for which uninterrupted residence is required.

Article 11. Stateless seamen

In the case of stateless persons regularly serving as crew members on board a ship flying the flag of a Contracting State, that State shall give sympathetic consideration to their establishment on its territory and the issue of travel documents to them or their temporary admission to its territory particularly with a view to facilitating their establishment in another country.

CHAPTER II JURIDICAL STATUS

Article 12. Personal status

1. The personal status of a stateless person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country of his domicile or, if he has no domicile, by the law of the country of his residence.
2. Rights previously acquired by a stateless person and dependent on personal status, more particularly rights attaching to marriage, shall be respected by a Contracting State, subject to compliance, if this be necessary, with the formalities required by the law of that State, provided that the right in question is one which would have been recognized by the law of that State had he not become stateless.

Article 13. Movable and immovable property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accord to a stateless person treatment as favourable as possible and, in any event, not less favourable than that accorded to aliens generally in the same circumstances, as regards the acquisition of movable and immovable property and other rights pertaining thereto, and to leases and other contracts relating to movable and immovable property.

Article 14. Artistic rights and industrial property

In respect of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such as inventions, designs or models, trade marks, trade names, and of rights in literary, artistic and scientific works, a stateless person shall be accorded in the country in which he has his habitual residence the same protection as is accorded to nationals of that country. In the territory of any other Contracting State, he shall be accorded the same protection as is accorded in that territory to nationals of the country in which he has his habitual residence.

Article 15. Right of association

As regards non-political and non-profit-making associations and trade unions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accord to stateless persons lawfully staying in their

territory treatment as favourable as possible, and in any event, not less favourable than that accorded to aliens generally in the same circumstances.

Article 16. Access to courts

1. A stateless person shall have free access to the courts of law on the territory of all Contracting States.
2. A stateless person shall enjoy in the Contracting State in which he has his habitual residence the same treatment as a national in matters pertaining to access to the courts, including legal assistance and exemption from *cautio judicatum solvi*.
3. A stateless person shall be accorded in the matters referred to in paragraph 2 in countries other than that in which he has his habitual residence the treatment granted to a national of the country of his habitual residence.

CHAPTER III GAINFUL EMPLOYMENT

Article 17. Wage-earning employment

1.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accord to stateless persons lawfully staying in their territory treatment as favourable as possible and, in any event, not less favourable than that accorded to aliens generally in the same circumstances, as regards the right to engage in wage-earning employment.
2.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give sympathetic consideration to assimilating the rights of all stateless persons with regard to wage-earning employment to those of nationals, and in particular of those stateless persons who have entered their territory pursuant to programmes of labour recruitment or under immigration schemes.

Article 18. Self-employment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accord to a stateless person lawfully in their territory treatment as favourable as possible and, in any event, not less favourable than that accorded to aliens generally in the same circumstances, as regards the right to engage on his own account in agriculture, industry, handicrafts and commerce and to establish commercial and industrial companies.

Article 19. Liberal professions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accord to stateless persons lawfully staying in their territory who hold diplomas recogniz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at State, and who are desirous of practising a liberal profession, treatment as favourable as possible and, in any event, not less favourable than that accorded to aliens generally in the same circumstances.

CHAPTER IV WELFARE

Article 20. Rationing

Where a rationing system exists, which applies to the population at large and regulates the general distribution of products in short supply, stateless persons shall be accorded the same treatment as nationals.

Article 21. Housing

As regards housing, the Contracting States, in so far as the matter is regulated by laws or regulations or is subject to the control of public authorities, shall accord to

stateless persons lawfully staying in their territory treatment as favourable as possible and, in any event, not less favourable than that accorded to aliens generally in the same circumstances.

Article 22. Public education

1.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accord to stateless persons the same treatment as is accorded to nationals with respect to elementary education.
2.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accord to stateless persons treatment as favourable as possible and, in any event, not less favourable than that accorded to aliens generally in the same circumstances, with respect to education other than elementary education and, in particular, as regards access to studies, the recognition of foreign school certificates, diplomas and degrees, the remission of fees and charges and the award of scholarships.

Article 23. Public relief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accord to stateless persons lawfully staying in their territory the same treatment with respect to public relief and assistance as is accorded to their nationals.

Article 24. Labour legislation and social security

1.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accord to stateless persons lawfully staying in their territory the same treatment as is accorded to nationals in respect of the following matters:
 - (a) In so far as such matters are governed by laws or regulations or are subject to the control of administrative authorities; remuneration, including family allowances where these form part of remuneration, hours of work, overtime arrangements, holidays with pay, restrictions on home work, minimum age of employment, apprenticeship and training, women's work and the work of young persons, and the enjoyment of the benefits of collective bargaining;
 - (b) Social security (legal provisions in respect of employment injury, occupational diseases, maternity, sickness, disability, old age, death, unemployment, family responsibilities and any other contingency which, according to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is covered by a social security scheme), subject to the following limitations:
 - (i) There may be appropriate arrangements for the maintenance of acquired rights and rights in course of acquisition;
 - (ii) National laws or regulations of the country of residence may prescribe special arrangements concerning benefits or portions of benefits which are payable wholly out of public funds, and concerning allowances paid to persons who do not fulfil the contribution conditions prescribed for the award of a normal pension.
2. The right to compensation for the death of a stateless person resulting from employment injury or from occupational disease shall not be affected by the fact that the residence of the beneficiary is outside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State.
3.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extend to stateless persons the benefits of agreements concluded between them, or which may be concluded between them in the future, concerning the maintenance of acquired rights and rights in the process of acquisition in regard to social security, subject only to the conditions

which apply to nationals of the States signatory to the agreements in question.

4. The Contracting States will give sympathetic consideration to extending to stateless persons so far as possible the benefits of similar agreements which may at any time be in force between such Contracting States and non-contracting States.

CHAPTER V ADMINISTRATIVE MEASURES

Article 25. Administrative assistance

1. When the exercise of a right by a stateless person would normally require the assistance of authorities of a foreign country to whom he cannot have recourse, the Contracting State in whose territory he is residing shall arrange that such assistance be afforded to him by their own authorities.
2. The authority or authorities mentioned in paragraph 1 shall deliver or cause to be delivered under their supervision to stateless persons such documents or certifications as would normally be delivered to aliens by or through their national authorities.
3. Documents or certifications so delivered shall stand in the stead of the official instruments delivered to aliens by or through their national authorities and shall be given credence in the absence of proof to the contrary.
4. Subject to such exceptional treatment as may be granted to indigent persons, fees may be charged for the services mentioned herein, but such fees shall be moderate and commensurate with those charged to nationals for similar services.
5. The provisions of this article shall be without prejudice to articles 27 and 28.

Article 26. Freedom of movement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accord to stateless persons lawfully in its territory the right to choose their place of residence and to move freely within its territory, subject to any regulations applicable to aliens generally in the same circumstances.

Article 27. Identity papers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issue identity papers to any stateless person in their territory who does not possess a valid travel document.

Article 28. Travel documents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issue to stateless persons lawfully staying in their territory travel documents for the purpose of travel outside their territory, unless compelling reasons of national security or public order otherwise require, and the provisions of the schedule to this Convention shall apply with respect to such documents. The Contracting States may issue such a travel document to any other stateless person in their territory; they shall in particular give sympathetic consideration to the issue of such a travel document to stateless persons in their territory who are unable to obtain a travel document from the country of their lawful residence.

Article 29. Fiscal charges

1.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 impose upon stateless persons duties, charges or taxes, of any description whatsoever, other or higher than those which are or may be levied on their nationals in similar situations .
2. Nothing in the above paragraph shall prevent the application to stateless persons of the laws and regulations concerning charges in respect of the issue to aliens of administrative documents including identity papers.

Article 30. Transfer of assets

1. A Contracting State shall, in conformity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permit stateless persons to transfer assets which they have brought into its territory, to another country where they have been admitted for the purposes of resettlement.
2. A Contracting State shall give sympathetic consideration to the application of stateless persons for permission to transfer assets wherever they may be and which are necessary for their resettlement in another country to which they have been admitted.

Article 31. Expulsion

1.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not expel a stateless person lawfully in their territory save on grounds of national security or public order.
2. The expulsion of such a stateless person shall be only in pursuance of a decision reached in accordance with due process of law. Except where compelling reasons of national security otherwise require, the stateless person shall be allowed to submit evidence to clear himself, and to appeal to and be represented for the purpose before competent authority or a person or persons specially designated by the competent authority.
3.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allow such a stateless person a reasonable period within which to seek legal admission into another country. The Contracting States reserve the right to apply during that period such internal measures as they may deem necessary.

Article 32. Naturalization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as far as possible facilitate the assimilation and naturalization of stateless persons. They shall in particular make every effort to expedite naturalization proceedings and to reduce as far as possible the charges and costs of such proceedings.

CHAPTER VI FINAL CLAUSES

Article 33. Information on national legislation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communicate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laws and regulations which they may adopt to ensure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Article 34. Settlement of disputes

Any dispute between Parties to this Convention relating to its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which cannot be settled by other means, shall be referred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at the request of any one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Article 35. Signature, ratification and accession

1. This Convention shall be open for signature at the Headquarters of the United Nations until 31 December 1955.
2. It shall be open for signature on behalf of:
 - (a) Any State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 (b) Any other State invited to attend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he Status of Stateless Persons; and
 - (c) Any State to which an invitation to sign or to accede may be addressed by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3. It shall be ratified and the instruments of ratification shall be deposited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4. It shall be open for accession by the States referred to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Accession shall be effected by the deposit of an instrument of accession wit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36. Territorial application clause

1. Any State may, at the time of signature, ratification or accession, declare that this Convention shall extend to all or any of the territories for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which it is responsible. Such a declaration shall take effect when the Convention enters into force for the State concerned.
2. At any time thereafter any such extension shall be made by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nd shall take effect as from the ninetieth day after the day of receipt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of this notification, or as from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e Convention for the State concerned, whichever is the later.
3. With respect to those territories to which this Convention is not extended at the time of signature, ratification or accession, each State concerned shall consider the possibility of taking the necessary steps in order to extend the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to such territories, subject, where necessary for constitutional reasons, to the consent of the Governments of such territories.

Article 37. Federal clause

In the case of a Federal or non-unitary State,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apply

- (a) With respect to those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at come within the legislative jurisdiction of the federal legislative authority, the obligations of the Federal Government shall to this extent be the same as those of Parties which are not Federal States;
- (b) With respect to those articles of this Convention that come within the legislative jurisdiction of constituent States, provinces or cantons which are not, under the constitutional system of the Federation, bound to take legislative action, the Federal Government shall bring such articles with a favourable recommendation to the notice of the appropriate authorities of States, provinces or cantons at the earliest possible moment;
- (c) A Federal State Party to this Convention shall, at the request of any other Contracting State transmitted through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upply a statement of the law and practice of the Federation and its constituent units in regard to any particular provision of the Convention showing the extent to which effect has been given to that provision by legislative or other action.

Article 38. Reservations

1. At the time of signature, ratification or accession, any State may make reservations to articles of the Convention other than to articles 1, 3, 4, 16 (1) and 33 to 42 inclusive.
2. Any State making a reservat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 of this article may at any time withdraw the reservation by a communication to that effect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rticle 39. Entry into force

1. This Convention shall come into force on the ninetieth day following the day of

- deposit of the six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2. For each State ratifying or acceding to the Convention after the deposit of the sixth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on the ninetieth day following the date of deposit by such State of its instrument of ratification or accession.

Article 40. Denunciation

1. Any Contracting State may denounce this Convention at any time by a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2. Such denunciation shall take effect for the Contracting State concerned one year from the date upon which it is received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3. Any State which has made a declaration or notification under article 36 may, at any time thereafter, by a notification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declare that the Convention shall cease to extend to such territory one year after the date of receipt of the notification by the Secretary-General.

Article 41. Revision

1. Any Contracting State may request revision of this Convention at any time by a notification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2.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shall recommend the steps, if any, to be taken in respect of such request.

Article 42. Notifications by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The Secretary-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shall inform all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nd non-member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 35:

- (a) Of signatures, ratifications and access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5;
- (b) Of declarations and notifica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6;
- (c) Of reservations and withdrawals in accordance with article 38;
- (d) Of the date on which this Convention will come into for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9;
- (e) Of denunciations and notification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0;
- (f) Of request for revis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

In faith whereof the undersigned, duly authorized, have signed this Convention on behalf of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Done at New York, this twenty-eighth day of September, one thousand nine hundred and fifty-four, in a single copy, of which the English, French and Spanis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and which shall remain deposited in the archives of the United Nations, and certified true copies of which shall be delivered to all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and to the non-member States referred to in article 35.

Schedule

Paragraph 1

1. The travel document referred to in article 28 of this Convention shall indicate that the holder is a stateless person under the terms of the Convention of 28 September 1954.
2. The document shall be made out in at least two languages, one of which shall be

English or French.

3. The Contracting States will consider the desirability of adopting the model travel document attached hereto.

Paragraph 2

Subject to the regulations obtaining in the country of issue, children may be included in the travel document of a parent or,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of another adult.

Paragraph 3

The fees charged for issue of the document shall not exceed the lowest scale of charges for national passports.

Paragraph 4

Save in special or exceptional cases, the document shall be made valid for the largest possible number of countries.

Paragraph 5

The document shall have a validity of not less than three months and not more than two years.

Paragraph 6

1. The renewal or extension of the validity of the document is a matter for the authority which issued it, so long as the holder has not established lawful residence in another territory and resides lawfully in the territory of the said authority. The issue of a new document is, under the same conditions, a matter for the authority which issued the former document.
2. Diplomatic or consular authorities may be authorized to extend, for a period not exceeding six months, the validity of travel documents issued by their Governments.
3.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give sympathetic consideration to renewing or extending the validity of travel documents or issuing new documents to stateless persons no longer lawfully resident in their territory who are unable to obtain a travel document from the country of their lawful residence.

Paragraph 7

The Contracting States shall recognize the validity of the documents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28 of this Convention.

Paragraph 8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the country to which the stateless person desires to proceed shall, if they are prepared to admit him and if a visa is required, affix a visa on the document of which he is the holder.

Paragraph 9

1. The Contracting States undertake to issue transit visas to stateless persons who have obtained visas for a territory of final destination.
2. The issue of such visas may be refused on grounds which would justify refusal of a visa to any alien.

Paragraph 10

The fees for the issue of exit, entry or transit visas shall not exceed the lowest scale of charges for visas on foreign passports.

Paragraph 11

When a stateless person has lawfully taken up residence in the territory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the responsibility for the issue of a new document,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rticle 28 shall be that of the competent authority of that territory, to which the stateless person shall be entitled to apply.

Paragraph 12

The authority issuing a new document shall withdraw the old document and shall return it to the country of issue, if it is stated in the document that it should be so returned; otherwise it shall withdraw and cancel the document.

Paragraph 13

1. A travel document issu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28 of this Convention shall, unless it contains a statement to the contrary, entitle the holder to re-enter the territory of the issuing State at any time during the period of its validity. In any case the period during which the holder may return to the country issuing the document shall not be less than three months, except when the country to which the stateless person proposes to travel does not insist on the travel document according the right of re-entry.
2.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ceding sub-paragraph, a Contracting State may require the holder of the document to comply with such formalities as may be prescribed in regard to exit from or return to its territory.

Paragraph 14

Subject only to the terms of paragraph 13, the provisions of this Schedule in no way affect the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the conditions of admission to, transit through, residence and establishment in, and departure from, the territories of the Contracting States.

Paragraph 15

Neither the issue of the document nor the entries made thereon determine or affect the status of the holder, particularly as regards nationality.

Paragraph 16

The issue of the document does not in any way entitle the holder to the protection of the diplomatic or consular authorities of the country of issue, and does not ipso facto confer on these authorities a right of protection.

MODEL TRAVEL DOCUMENT

It is recommended that the document be in booklet form (approximately 15×10 centimetres), that it be so printed that any erasure or alteration by chemical or other means can be readily detected, and that the words "Convention of 28 September 1954" be printed in continuous repetition on each page, in the language of the issuing country.

(COVER OF BOOKLET)

TRAVEL DOCUMENT

(Convention of 28 September 1954)

No

(1)

TRAVEL DOCUMENT
(Convention of 28 of 1954)

This document expires on unless its validity is extended or renewed.

Name

Forename(s)

Accompanied by..... child (children).

1. This document is issued solely with a view to providing the holder with a travel document which can serve in lieu of a national passport. It is without prejudice to and in no way affects the holder's nationality.
2. The holder is authorized to return to [state here the country whose authorities are issuing the document] on or before..... unless some later date is hereafter specified. [The period during which the holder is allowed to return must not be less than three months except when the country to which the holder proposes to travel does not insist on the travel document according the right of re-entry.]
3. Should the holder take up residence in a country other than that which issued the present document, he must, if he wishes to travel again, apply to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his country of residence for a new document. [The old travel document shall be withdrawn by the authority issuing the new document and returned to the authority which issued it]¹

(This document contains 32 pages, exclusive of cover)

¹ The sentence in brackets to be inserted by Governments which so desire.

(2)

Place and date of birth

Occupation

Present residence

* Maiden name and forename(s) of wife

* Name and forename(s) of husband

Description

Height



Hair

Colour of eyes

Nose

Shape of face

Complexion

Special peculiarities

Children accompanying holder

Name	Forename(s)	Place and date of birth	Sex
.....
.....
.....

* strike out whichever does not apply

(This document contains 32 pages, exclusive of cover)

(3)

Photograph of holder and stamp of issuing authority

Finger-prints of holder (if required)

Signature of holder

.....

(This document contains 32 pages, exclusive of cover)

(4)

1. This document is valid for the following countries :

.....

.....

.....

.....

2. Document or documents on the basis of which the present document is issued.

.....

.....

Issued at

Date

Signature and stamp of authority
 issuing the document :

Fee paid :

(This document contains 32 pages, exclusive of cover)

(5-6)

Extension or renewal of validity

Fee paid : From

To

Done at Date

Signature and stamp of authority
 extending or renewing the validity
 of the document :

(This document contains 32 pages, exclusive of cover)

(7-32)

Visas

The name of the holder of the document must be repeated in each visa.

(This document contains 32 pages, exclusive of cover)

아동복지법

[법률 제12361호 일부개정 2014. 01. 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9.29]]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

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아동복지전담기관”이란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과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시행일 2014.9.29]]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옹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매년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를 어린이주간으로 한다.

제2장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제7조(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재원조달방안

5. 그 밖에 아동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나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아동정책조정위원회)

①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아동정책의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5.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부장관·법무부장관·안전행정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2. 아동 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

④ 위원회는 제2항제4호에 따른 국제조약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아동종합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 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 ①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②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③ 전담공무원은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확인 및 지도·감독 등 지역 단위에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 ④ 관계 행정기관, 아동복지전담기관,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단체(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아동위원)

- ①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 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제1절 아동보호서비스

제15조(보호조치)

-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9.29]]
 1.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하게 하는 것
 2.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3.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가정위탁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보호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개별 보호·관리 계획을 세워 보호하여야 하며, 그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함에 있어서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보호자가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의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9.29]]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필요하면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에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일시 위탁하여 보호하게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등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가정에 대하여 예방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그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종사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의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범죄경력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⑧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은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사람, 위탁아동의 부모 등의 신원확인 등의 조치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 제7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및 제8항에 따른 신원확인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9.29]]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시행일 2014.9.29]]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제18조(친권상실 신고의 청구 등)

-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하 “학교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에게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신고 청구를 할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신고 청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청구 여부를 결정한 후 해당 요청기관에 청구 또는 미청구 요지 및 이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그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9.29]]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또는 검사는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후견인의 선임 및 제2항에 따른 후견인의 변경 청구를 할 때에는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④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보호대상아동에 대하여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20조(아동의 후견인 선임)

- ① 법원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할 경우 「민법」 제932조 및 제93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의 후견에 적합한 사람을 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그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1조(보조인의 선임 등)

- ① 법원의 심리과정에서 변호사, 법정대리인, 직계 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은 학대아동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원은 피해아동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 피해아동과 그 보호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 ③ 수사기관이 피해아동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제2절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9.29]]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피해아동의 보호, 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해아동, 그 보호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신분조회 등 필요한 조치의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따라야 한다.
- ④ 제3항의 신분조회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시행일 2014.9.29]]

제2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 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범국민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위반행위자의 계도를 위한 교육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인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

삭제 [2014.1.28] [[시행일 2014.9.29]]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9.2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삭제 [2014.1.28] [[시행일 2014.9.29]]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① 사법경찰관리는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

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 [[시행일 2014.9.29]]

제27조의3(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피해아동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4.1.28] [[시행일 2014.9.29]]

제28조(사후관리 등)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시스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피해아동, 그 가족 및 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8] [[시행일 2014.9.29]]

제2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 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지원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 ④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 여부의 결정 및 지원의 제공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8] [[시행일 2014.9.29]]
- ⑥ 제5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8] [[시행일 2014.9.29]]

제29조의2(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교육 등의 권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8] [[시행일 2014.9.29]]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①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라 한다)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까지의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1.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제45조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제48조의 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의 긴급전화센터, 같은 법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3.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성매매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8.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9.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에 한정한다)
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11. 「정신보건법」 제3조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13조의2의 정신보건센터
12.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업무 종사자에 한정한다)
13.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14.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은 법 제30조의 이주 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 각 호의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6.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1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18.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중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학원과 교습소로서 교육부장관

이 지정하는 학원·교습소

2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② 제1항 각 호(제1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의 요청 절차·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시행일 2014.9.29]]

제29조의4(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의 점검·확인)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1. 교육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8호·제18호·제19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7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3. 보건복지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호·제7호·제9호·제10호·제11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4. 여성가족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13호·제14호·제15호·제16호·제20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5. 국토교통부장관: 제29조의3제1항제12호에 따른 아동관련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8] [[시행일 2014.9.29]]

제29조의5(취업자의 해임요구 등)

①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9조의4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아동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그 등록·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8] [[시행일 2014.9.29]]

제4장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제1절 아동 안전 및 건강지원

제30조(안전기준의 설정)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정하고 아동용품을 제작·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3. 약물의 오남용 예방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아동보호구역에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의 주변구역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시행일 2013.1.23]]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도시공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2.10.22] [[시행일 2013.1.23]]

④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

호법』에 따른다. [개정 2012.10.22] [[시행일 2013.1.23]]

[본조제목개정 2012.10.22] [[시행일 2013.1.23]]

제33조(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순찰 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을 배치·활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순찰활동 및 아동지도 업무 등을 수행하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 배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활용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

- ① 경찰청장은 유괴 등의 위험에 처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긴급보호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 및 운영,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보건소)

보건소는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아동의 전염병 예방조치
2. 아동의 건강상담, 신체검사와 보건위생에 관한 지도
3. 아동의 영양개선

제2절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등

제37조(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선정하여 그 가정의 지원대상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의 대상 선정, 통합서비스의 내용 및 수행기관·수행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서비스지원사업의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8조(자립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

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이하 “자산형성지원”이라 한다)
 3.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5. 그 밖에 자립지원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절차와 방법,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 ①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1조(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아동의 자립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하여야 할 아동의 범위와 해당 아동의 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 아동의 관리
 2.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후원자 발굴 및 관리
 3.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평가
 5. 그 밖에 자산형성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관리
 2.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4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3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장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제1절 아동복지전담기관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①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둔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9.29]]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 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9.29]]
 1.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제 구축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 상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6의2. 제28조의2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②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9.29]]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3.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4.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5.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설치·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제47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성과평가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실적에 대하여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

- ① 국가는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가정위탁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둔다. 다만, 시·도지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정위탁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및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업무)

①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2.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3.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4.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5. 상담원에 대한 교육 등 가정위탁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정보제공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업무

②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가정위탁사업의 홍보 및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의 발굴
2.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가정에 대한 조사 및 가정위탁 대상 아동에 대한 상담
3. 가정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람과 위탁가정 부모에 대한 교육
4. 위탁가정의 사례관리
5. 친부모 가정으로의 복귀 지원
6. 가정위탁 아동의 자립계획 및 사례 관리
7. 관할 구역 내 가정위탁 관련 정보 제공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정위탁과 관련된 업무

제2절 아동복지시설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③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제50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아동복지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
 2. 아동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아동보호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제53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오락 시설, 교통시설, 그 밖의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익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① 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 그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아동복지단체나 그 밖의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아동복지전담 기관과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 6개월 이내의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9.29]]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설치목적의 달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6. 아동복지시설의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나 시설의 폐쇄 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관리·처분 등

제57조(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여야 한다.

제58조(아동복지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단체를 지도·육성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대상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4.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필요한 비용
6. 제38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
7.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8. 제58조에 따른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비용

제60조(비용 징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그 아동의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61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대리양육자 및 아동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아동복지전담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는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62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와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63조(면세)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64조(압류 금지)

이 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제65조(비밀 유지의 의무)

아동복지사업 또는 아동복지전담기관을 포함하여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6조(조사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거소, 아동의 고용장소 또는 제17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담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7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6조에 따른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4, 제29조의5, 제75조에 따른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8] [[시행일 2014.9.29]]

제6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기관이나 아동복지시설이 아니면 아동복지전담기관이나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 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제 11572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4.1.28] [[시행일 2014.9.29]]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9.29]]

1. 삭제 [2014.1.28] [[시행일 2014.9.29]]

2. 삭제 [2014.1.28] [[시행일 2014.9.29]]

3. 제5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54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5.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
6. 제6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7.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제72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73조(미수범)

제71조제1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7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1.28] [[시행일 2014.9.29]]

1. 제27조의3을 위반하여 피해아동의 인수를 거부한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의 장
2. 제29조의5제1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

행하지 아니한 아동관련기관의 장

②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제2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4.1.28] [[시행일 2014.9.2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10.22, 2014.1.28] [[시행일 2014.9.29]]

1. 삭제 [2014.1.28] [[시행일 2014.9.29]]

2. 제31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1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휴업·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9조를 위반하여 아동복지전담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및 도의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10.22, 2014.1.28] [[시행일 2014.9.29]]

부칙 [2000. 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아동복지시설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아동복지시설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보호기간의 연장을 받은 자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장으로부터 보호기간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제1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재개신고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휴지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차목중 “아동복지법 제18조제2호”를 “아동복지법 제29조제8호”로 한다.

②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요보호아동”을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으로, “아동복지법 제2조제3호”를 “아동복지법 제2조제2호”로 하고, 제14조제2항중 “아동복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호조치”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①항 내지 ③항 생략

④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모·부자복지법 제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부자복지시설의 종사자

⑤항,⑥항 생략

부칙 [2004.1.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22. 법률 제7212호(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생략

② 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이나 그 종사자

③ 이하생략

부칙 [2005.3.24 제7413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6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 후 3월 이내에 제4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⑩ 내지 ⑭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5.7.13 제7591호]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27 제8006호]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친권상실 신고 등 청구의 요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친권행사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청구사유에 대하여도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7.10.17 제8655호(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0호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부자복지상담소”를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로, “모·부자복지시설”을 “한부모가족복지시설”로 한다.

⑦ 내지 ⑬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3> 까지 생략

〈474〉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노동부장관·여성부장관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30조제1항 및 제39조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의2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7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6.13 제912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지정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본다.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4조제3항, 제28조의2제3항, 제30조제1항 및 제39조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79〉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3.26 제10191호(국민영양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영양개선”을 “영양관리”로 한다.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 까지 생략

〈52〉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 중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53〉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3.29 제10465호(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3항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⑦부터 ⑭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1.4.12 제10582호(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③ 및 ④ 생략

부 칙[2011.6.7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영유아어린이집”으로 하고, 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제26조제2항제5호 중 “보육시설의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19〉부터 〈32〉까지 생략

부 칙[2011.8.4 제1100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아동복지법」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이나 그 밖에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아동보호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아동복지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본다.

제4조(아동복지시설 및 직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직업훈련시설의 직원(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5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직원(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직업훈련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아동은 제5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아동으로 본다.

제5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아동복지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②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6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③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위탁받은 가정

④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73조의 죄

⑤ 법률구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⑥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아동복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을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로 한다.

⑦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 중 “「아동복지법」 제40조 또는 제41조”를 “「아동복지법」 제71조”로 한다.

⑧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아동복지법」 제4조의2”를 “「아동복지법」 제10조”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 제4호의 죄

제1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제17조 중 “「아동복지법」 제2조제3호”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로 한다.

제2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제44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⑩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하여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⑪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0조 중 “「아동복지법」 제9조제2항·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1조제2항제3호, 제14조제3항, 제15조, 제17조제2항·제3항,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4항”을 “「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제3호, 제30조, 제31조, 제32조제2항, 제45조제5항, 제50조제3항, 제51조, 제53조제2항·제3항 및 제54조제2항”으로 한다.

⑫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5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⑬ 법률 제10850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를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아동복지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을 “「아동복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3호 중 “「아동복지법」 제4조의2제3항제2호”를 “「아동복지법」 제10조제3항제2호”로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아동복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10.22 제1152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보호구역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당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아동보호구역에 2017년 6월 30일까지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 칙[2012.12.18 제11572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1호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73>까지 생략

<474>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75>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28 제1236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관련기관 중 사회복지시설의 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3부터 제29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 법 제71조제1항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의 아동관련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라목 중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 제4호의 죄”를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로 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2341호 신규제정 2014. 01. 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하.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5.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한다.
 6.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7.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하 “보호처분”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9. “아동복지전담기관”이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과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이하

“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8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①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 ②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 ③ 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아동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2. 보호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3. 그 밖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⑦ 형벌과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9조(친권상실청구 등)

- ① 아동학대행위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는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 상실의 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그 처리 결과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3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0. 「소방기본법」 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1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의료기사
 15.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현장출동)

-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그 소속 직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 ②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피해아동을 분리·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아동을 인도받은 보호 시설·의료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검사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연장된다.
- ④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응급조치결과보고서에는 피해사실의 요지,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⑥ 누구든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응급조치를 저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 ① 사법경찰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임시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 ① 사법경찰관이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하였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졌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때에는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4항에 따라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형사절차”는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

제17조(준용)

아동학대범죄의 조사·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

제4장 아동보호사건

제18조(관할)

- ① 아동보호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 ② 아동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이하 “판사”라 한다)가 한다.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への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 ③ 판사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임시조치가 청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⑤ 제1항제6호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 ⑥ 제1항제6호에 따라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⑦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 및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⑧ 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 및 교육을 행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은 그 결과보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⑨ 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상담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제7항에 따른 통지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임시조치의 고지)

법원은 제1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아동학대행위자의 보조인(제44조에서 준용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제7호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임시조치의 집행)

- ① 판사는 제1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 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임시조치의 변경)

- ① 아동학대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②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 ③ 판사는 임시조치를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제19조제5호 및 제6호의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 또는 제19조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그 임시조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

- ① 판사는 제19조제1항제4호의 임시조치로 인하여 피해아동에게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경우 그 임시조치의 기간 동안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판사는 해당 피해아동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피해아동, 변호사 및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그 선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③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해아동, 변호사 또는 아동복

지전담기관의 장 등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해아동 소유 재산의 보존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⑤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민법」 제940조를 준용한다.
- ⑥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선임, 사임 및 변경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5조(검사의 결정 전 조사)

-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동학대행위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의 경력, 생활환경, 양육능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에게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그 인권을 존중하며,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④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 대하여 제1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 결과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등을 참고하여 피해아동 보호와 아동학대행위자의 교화·개선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26조(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치료 또는 교육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1.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2.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性行) 및 개선 가능성
4.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5.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제27조(아동보호사건의 처리)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로서 제26조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28조(검사의 송치)

- ① 검사는 제27조에 따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할 법원(이하 “관할 법원”이라 한다)에 송치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제29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제30조(송치 시의 아동학대행위자 처리)

- ①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부터 관할 법원이 있는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

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그 밖의 시·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아동학대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와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203조 또는 제205조의 구속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효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 때에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31조(송치서)

①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를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송치서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업, 피해아동과의 관계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 상황을 적고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이송)

① 아동보호사건을 송치 받은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적정한 조사·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사건을 즉시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송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첨부하여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보호처분의 효력)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1조제1호에 따라 송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범

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진행 된다.

1. 해당 아동보호사건에 대하여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확정된 때
 2.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제41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송치된 때
- ③ 공범 중 1명에 대한 제2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①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그 기관장,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③ 피해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아동학대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 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을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인도할 수 있다.

④ 판사가 제1항제3호의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 보호처분의 기간 동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의 선임 등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⑤ 법원은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상담소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⑦ 제1항제6호의 감호위탁기관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7조(보호처분의 기간)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8조(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 ①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의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보건법」을 준용한다.

제39조(보고와 의견 제출 등)

- ① 법원은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집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 ②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아동학대행위자가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처분의 이행 실태에 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보호처분의 변경)

- ①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1회에 한정하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은 2년을,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봉사·수감명령의 시간은 4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1조(보호처분의 취소)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제28조에 따라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
2. 제29조에 따라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제42조(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제43조(비용의 부담)

- ①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시조치 또는 제3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는 위탁 또는 보호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아동학대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 ② 판사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의 예납(豫納)을 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가 부담할 비용의 계산, 청구 및 지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준용)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보호처분 및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등에 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의2, 제19조 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 부터 제39조까지, 제42조, 제56조 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폭력행위자”는 “아동학대행위자”로, “피해자”는 “피해

아동”으로, “가정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본다.

제45조(항고와 재항고)

- ① 제19조의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36조의 보호 처분, 제40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41조의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이 제44조가 준용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할 때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 ③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④ 임시조치·보호처분의 항고·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본다.

제5장 피해아동보호명령

제46조(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

- ①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아동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 ②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청구

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판사가 제1항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관할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판사가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동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자의 선임 등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8조(보조인)

①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 대하여 각자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6조에 따른 변호사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③ 변호사(「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제49조에서 같다)가 아닌 사람

을 보조인으로 선임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이 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판사는 언제든지 제3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피해아동·아동학대행위자 사이의 신분관계 또는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직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보조인은 독립하여 절차행위를 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해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절차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9조(국선보조인)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직계친족·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 1.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 2.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호사를 아동학대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50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 ①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 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 ②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2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 ①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3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2조(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 ①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임시로 제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보호명령”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판사가 제4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임시보호명령을 한 경우 그 임시보호명령의 기간 동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자의 선임 등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 ④ 임시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에 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제53조(이행실태의 조사)

- ① 관할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관할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54조(병합심리)

법원은 사건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병합하여 심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 보호명령사건과 아동보호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제55조(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교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6조(준용)

①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조사·심리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부터 제22조까지, 제30조 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4조 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폭력행위자”는 “아동학대행위자”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가정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보호처분”은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본다.

제57조(항고와 재항고)

①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제51조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제50조에 따른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제52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 법정대리인,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②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 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8조(위임규정)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59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학대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2.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3.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제52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의 실행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1조(업무수행 등의 방해죄)

- ①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또는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 ① 제35조제1항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그 기관장,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보조인인 변호사에 대하여는 「형법」 제317조제1항을 적용한다.
- ②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35조제2항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3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판사의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한 소환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제64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직원 및 진술조력인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2014.1.28 제12341호]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미등록 이주아동의 중학교 과정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

주 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을 중학교 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관련 지침 등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I. 권고배경

정부는 2008. 2. 22.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학교의 장은…생략…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던 기존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을 “…생략…다만, 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였다.

이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할 수 없어 초등학교에 취학하지 못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을 위한 것으로서, 이들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 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을 개정한 것이다.

그러나 국내의 중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 할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중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중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학습권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하였다.

II. 판단기준

「헌법」 제6조, 제31조, 「교육기본법」 제4조, 제8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 1, 제28조1,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3조1,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4조1,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제30조

III. 판 단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2008. 8. 현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총 이주아동은 69,987명이며, 이중 미등록 이주아동은 8,259명으로 추계되고 있다. 한편 2009. 7.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다문화가정학생교육지원계획」에 따르면 2008년 현재 1,402명의 이주노동자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들 중 초등학교 재학생은 981명이었고 중학생은 314명, 고등학생은 107명의 순이었다.

국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아동 중 미등록 이주아동은 2005년도의 경우 148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재학 중인 이주아동의 약 10%정도가 미등록 이주아동

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체 미등록 이주아동이 8,259명(2008년)인 것을 고려하면 미등록 이주아동의 취학률이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미등록 이주아동의 취학률이 낮은 이유는 일반적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가정은 거주지의 불안정, 경제적 어려움, 신분노출 우려 등의 이유로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경향이 있고 취학에 필요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08. 2. 2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할 수 없어 초등학교에 취학하지 못하고 있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을 위해, 이들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 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을 개정하였다. 그러나 국내의 중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 할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중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미등록 이주아동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제1항은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제도는 교육의 기회균등사상에 입각한 것으로서 국가가 개인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 없이 모두에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각 나라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따라 의무교육 기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최소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의 과정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고 국가가 이를 보장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1. 11. 20.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였다. 따라서 동 협약에서 규정한 내용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우리 정부는 위 협약의 내용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동 협약 제2조는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

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8조는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대하여 “모든 외국인 어린이에게도 한국 어린이들과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위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미등록 이주아동이라 할지라도 교육받을 권리를 인정함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우리나라 의무교육 제도의 현황에 비추어 최소한 중학교 과정까지는 어떤 사유로도 취학을 원하는 아동이 취학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제1항을 중학교 과정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할 수 없어 중학교에 취학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Ⅳ.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09. 12. 3.

위 원 장 현 병 철

위 원 최 경 숙

위 원 유 남 영

위 원 문 경 란<불참>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강화하고 안정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 가. 이주아동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교육시스템을 강화할 것,
- 나. 전·입학과정 및 학교생활에서 이주아동과 학부모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국어 정보 제공시스템을 강화할 것,
- 다. 학교장이 이주아동의 전·입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거나 행정지도,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라. 장기결석 요인에 대한 검토에 기초하여 이주아동의 공교육 이탈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마. 이주아동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합한 다문화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아동을 구제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바. 이주아동의 나이, 학습능력, 본국학제 등을 고려한 적절한 학년배정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2. 법무부 장관에게

- 가. 외국인에 대한 단속·보호·강제퇴거 시 아동의 처우에 대한 내용을 관련 법령에 별도로 규정하고, 이주아동의 부모에 대한 강제퇴거 조치를 일정 기간 동안 일시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나. 이주민의 권리보호나 구제를 업무로 하는 공무원(교육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교육공무원, 보건소 의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에 대한 공무원통보의 무의 적용을 유보 혹은 면제 한다는 내용을 관련 법령에 규정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I. 권고배경

우리나라가 1991년 가입·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아동이 자신과 그 부모의 인종, 피부색, 언어, 사회적 출신, 신분에 관계없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동 협약은 모든 가입국이 아동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야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사회 이주아동은 체류자격의 소유여부와 무관하게 교육받을 기회와 교육현장에서 차별과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음에도, 이주아동의 상당수가 경제적 형편, 한국어를 포함한 학습능력 부족, 학교 측의 전·입학 거부, 체류 자격의 불안정성 등 여러 가지 제약 요인으로 인해 공교육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주아동은 학교에 입학한 후에도 발음, 피부색, 문화 등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으며, 수업료 부담, 따라가기 어려운 학습진도,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등을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2010년 외부 연구용역을 통해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를 시행하였고, 조사결과 국내외 인권규범에 기초하여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관련부처의 장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하였다.

II. 판단기준

「헌법」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31조, 「교육기본법」 제4조,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8조, 「아동권리협약」 제2조, 제9조, 제28조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고, 세계인권선언 제26조, 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제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에 관한 제13차, 제1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견해,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4 등을 참고하였다.(별지 참조)

III. 판단

1. 공공시스템에 의한 한국어 교육을 강화할 것

이주아동의 한국어 구사능력은 그들의 공교육 기관에의 입학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적응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공교육에 접하기 이전에 이주아동의 한국어를 교육하기 위한 공공시스템이 취약한 상황에서 한국어 구사능력이 부족한 이주아동의 상당수는 그들의 부모에 의하여 공교육 기관이 아닌 민간단체의 한국어 교실·유치원·대안 교육기관 등에 보내지기도 하고, 공교육에 입학하더라도 학습능력의 부족으로 교과과정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등으로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이주아동에게 한국어 구사능력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이주아동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전문성, 체계성, 장기성, 안정성 등에서 충분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현재 학교에서의 이주아동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각 급 학교의 역량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 밖에서도 이들을 위한 별도의 한국어 교육기관이 부재하고 한국어 교육과정, 교재, 교사의 양성이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한국 공교육에 접하기 이전 이주아동의 한국어교육을 담당하는 공공시스템이 취약하여 대부분의 이주아동은 개인과 민간단체에 의한 한국어 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주아동의 공교육 진입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서 거점학교를 확보하고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강사를 배치하는 등으로 이주아동에게 교과과정과 별도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을 제공하고, 교육에 적합한 한국어 교육교재, 교수법,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2. 전·입학절차와 학교생활에 대한 모국어 정보 제공시스템을 강화할 것

이주아동의 전·입학 절차에 대한 정보를 모국어로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주아동의 부모 중에는 모국어 안내와 통역서비스 제공이 부족하여 자녀의 입학절차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거나 적지 않은 비용을 지출하면서 업무대행자에게 의뢰하여 처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어 이해 능력이 부족한 이주아동의 부모는 자녀가 학교에 입학한 이후에 학교생활에 대한 안내, 학교공부 보충지도, 경제적 지원, 생활상담, 비상시 후견인 역할 등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한국어로 제공되는 정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다국어로 제작된 학교생활 안내책자 등은 제공하고 있으나 이주아동의 전·입학을 지원하기 위한 모국어 안내와 통역서비스, 그리고 가정통신문 등의 번역서비스는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개별 교육청에서 지역의 이주민 관련 단체들이나 통번역기관들과 협력하여 통역과 번역 서비스를 일부 지원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현재 이주민에게 제공되고 있는 교육제도와 관련된 모국어서비스의 내용과 전달체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번역과 통역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각 지역 교육청과 민간단체 및 통번역기관과의 상시적 연계에 기반을 둔 통·번역서비스 안정화, 2·3월과 8·9월 등 입학 및 새 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이주아동 입학 및 학교생활 관련 상담인력 배치 지원프로그램 운영, 가정통신문 번역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을 통하여 이주아동의 학부모가 모국어로 된 안내문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3. 학교의 이주아동 전·입학 거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이주아동이 전·입학을 하고자 할 때 일선 학교가 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제반시설이나 프로그램의 미비, 미등록 지위의 학생을 입학시키는 것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이들의 전·입학을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이주아동의 전·입학에 대한 일선 학교의 소극적 또는 부정적 행위는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제한하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2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의 취지를 반영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을 포함

한 모든 이주아동의 초등학교 입학에 보장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미등록 이주아동이 국내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고자 할 때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신 임대차계약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강화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2010년 12월 이주노동자 자녀 등이 기본적인 의무교육 단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중학교 취학 절차시 초등학교 입학 등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이처럼 정부는 이주아동이 공교육을 받고자 할 때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만으로도 입학에 장애를 받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여전히 학교규정, 상부의 요청 등을 이유로 이주아동이 전·입학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비자를 확인하고 있고, 심한 경우 학교사정을 이유로 그들의 전·입학을 거부하는 관행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초등교육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차별 없는 교육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이주아동이 전학 또는 입학을 하고자 할 때 학교장이 학교의 여건과 기자재 부족 등을 이유로 이들의 전·입학을 거부하거나 본인의 동의 없이 비자 등을 확인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관련 법적 조항 정비 또는 행정지도와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4. 이주아동의 공교육 이탈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화할 것

이주아동의 상당수는 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도 다양한 이유로 학교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고 공교육을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들이 학교를 떠나는 이유는 따라가기 어려운 학교교육 수준, 비자 없는 외국인에 대한 단속, 학교문화의 차이, 낮은 학년배정, 한국학생들의 무시, 수업료 부담, 상급학교 진학의 어려움, 불투명한 미래, 경제적 이유로 인한 취업, 학교를 이탈한 모국친구와 어울리고 싶은 마음 등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부는 이주아동의 장기결석 원인과 그로 인한 공교육 이탈의 원인을 대체로 파악하고 있지만 이주아동의 공교육 중도탈락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는 아직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평소 생활지도, 멘토링, 상담 등을 병행하면

서 이주아동의 중도탈락을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장기결석을 하는 이주아동이 중도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별도의 조치가 사실상 부재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주아동의 공교육 이탈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는 장기결석 요인에 대한 검토에 기초하여 이주아동이 학업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이주아동의 학교생활에 대한 상담 강화, 학교생활을 위한 비용부담 최소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5. 이주아동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의 예방 및 구제 조치를 강화할 것

적지 않은 이주아동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 내에서 한국학생들로부터 무시와 소외·발음 놀림·피부색 놀림·모국 비하 등의 차별을 당하고, 헐박·소지품 강탈·구타 등의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인 예로 이주아동은 ‘너희 나라에는 이런 것 없지’ 등의 모국 비하, 다른 아이들에게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거나 뒤에서 수군거리는 행위로 인한 무시와 소외, ‘너희 나라로 돌아가’, ‘(불법체류 등을) 신고하겠다’는 등의 헐박을 당하기도 하고, 일부는 ‘돈이나 소지품을 빼앗긴’ 경험과 ‘손이나 주먹으로 맞거나 발로 걷어차인’ 직접적인 폭행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에서 이주아동이 차별받는 직접적인 배경과 이유가 피부색과 언어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교육에서 올바른 다문화 교육을 위한 지향점과 내용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의 다문화 교육은 타국의 문화를 어떤 방식으로 인정하고 수용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내용 보다는 얼마나 많은 타국의 문화를 이해하는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의 이주아동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는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이주아동을 비롯한 우리사회 소수자를 존중하는 인권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의 지향점과 방향을 정립하고, 이주아동에 대한 차별 및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아동 지원 등에 관하여 지도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도 매뉴얼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6. 이주아동의 적절한 학년배정을 위한 기준 및 원칙을 마련할 것

한국어가 미숙한 상태에서 학교에 입학한 이주아동들은 학습수행능력을 고려하는 학교 측에 의해서 대부분 자기 나이보다 낮은 학년에 배정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이주아동이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이유 중의 하나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학년 배정 관행이 이주아동의 학교 부적응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낮은 학년으로 배정된 이주아동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이주아동의 상당수도 적절한 기준에 의해서 학년 배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한국어가 되지 않는 아동을 어느 학년에 넣어야 할지에 대해 판단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정부는 각 급 학교의 학력심의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으나, 대부분의 초등·중등·고등 학교는 이주아동의 학년배정 시 이주아동의 한국어 실력과 학습능력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이주아동의 나이와 본국학제를 후순위로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이주아동의 나이와 학년의 차이를 가능한 최소화 한다는 원칙 하에서 이주아동의 나이, 학습능력, 본국학제 등을 고려한 적절한 학년배정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7. 이주아동과 그 부모의 단속 및 강제퇴거 제도를 개선할 것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단속은, 부모와 이주아동 모두 비자가 없는 경우 뿐 아니라 아동은 비자가 있지만 부모의 비자가 없는 경우에도 이주아동의 학교생활을 크게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교육권 보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주아동의 부모들 중에는 외국인 단속이 있는 경우에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외출을 금하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등록 이주아동 대부분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부모 등 보호자의 결정에 의해 한국으로 이주해왔거나 이주한 부모들에 의해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으로, 기본적인 생계보장, 학업, 의료 및 보건, 문화 및 여가, 사회관계 형성 등의 권리를 지니고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단속 및 강제퇴거 과정에서 부모인

미등록 외국인이 자녀의 보호와 교육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때문에 이주아동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거나 아동의 교육과정이 중단되는 상황도 초래될 수 있다.

미등록 외국인에 대한 단속, 보호, 강제퇴거 관련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은 성인과 아동에 대한 동일한 법 적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별도의 처우규정이나 단속된 미등록 외국인에게 보호 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면접을 포함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아동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하여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이 인도주의에 비추어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특별체류허가를 할 수 있으나, 단순히 재학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체류를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아동의 부모에 대하여는 입국경위, 불법체류 기간, 체류실태, 타 법령위반 여부 및 그 중대성, 아동 양육·보호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체류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보호·강제퇴거 시 아동 처우에 대한 부분을 「출입국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추가하고, 미등록 외국인이 단속되어 강제퇴거 대상자로 분류되었더라도 그 자녀가 초·중·고 재학 중인 경우 그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해당학기 또는 해당학년 수업을 완료하는 시점까지는 강제퇴거의 집행을 유예하는 방안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8. 공무원통보의무제도를 개선할 것

「출입국관리법」 제84조에 의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강제퇴거대상자이거나 「출입국관리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알려야 하는 공무원통보의무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법질서 준수 의식 확립, 정부의 불법에 대한 무관용 의지 표명,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문제 방지 등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여 공무원 통보의무 제도가 존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이주인권 관련 단체들은 그동안 합법적 체류자격을 지니고 있지 않는 외국인이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인권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에 공무원통보의무제

도로 인해서 공적 시스템 내에서 인권침해구제나 인권보호를 요청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무원통보의무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과 관련해서, 공무원통보의무제도는 합법적 체류자격을 지니지 못한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 자신의 체류자격 미비 사실과 소재지 등이 노출되는 것을 염려하여 자신의 아동의 취학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법무부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공무원통보의무제도 적용 유예를 결정하고 2010. 9. 3. 이러한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한 바 있다. 이는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진전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무원통보의무 조항 자체로 이주아동의 공교육 기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부정적 효과가 적지 않은 만큼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방법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이주아동의 교육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교육공무원뿐만 아니라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구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유보 또는 면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보건소 의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 이주민의 권리구제나 인권침해 구제를 업무로 하는 공무원에게는 외국인에 대한 공무원통보의무의 적용을 유보 혹은 면제한다는 내용으로 출입국관리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및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0. 12. 30.

위원장 현 병 철

위원 장 향 숙

위원 김 영 혜

별지

판 단 기 준

1. 헌법

- 가.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 나.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라.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교육기본법

-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3.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 가. 제10조(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나.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다.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

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라. 제18조(다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역사·문화 및 제도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아동권리협약

가.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제9조

1. 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위의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또는 유기에의 경우나 부모의 별거로 인하여 아동의 거소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떠한 절차에서도 모든 이해당사자는 그 절차에 참가하

여 자신의 견해를 표시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3.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외에는,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으로부터 분리된 아동이 정기적으로 부모와 개인적 관계 및 직접적인 면접교섭을 유지할 권리를 가짐을 존중하여야 한다.
4. 그러한 분리가 부모의 일방이나 쌍방 또는 아동의 감금, 투옥, 망명, 강제퇴거 또는 사망(국가가 억류하고 있는 동안 어떠한 원인에 기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등과 같이 당사국에 의하여 취하여진 어떠한 조치의 결과인 경우에는, 당사국은 그 정보의 제공이 아동의 복지에 해롭지 아니하는 한, 요청이 있는 경우, 부모, 아동 또는 적절한 경우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부재중인 가족구성원의 소재에 관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의 제출이 그 자체로 관계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다. 제28조

1. 당사국은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 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a)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 (b)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c)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d)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e)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률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세계인권선언

제26조

1.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한다.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한다. 기술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2.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들과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 간에 있어서 이해, 관용 및 친선을 증진시키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시켜야 한다.

6. 제2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2003)

위원회는 “협약 2조에서 나열하고 있는 모든 근거를 포함할 수 있도록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원회는 사회적 차별, 특히 한부모가정 아동, 혼외출생아동, 장애아동, 이주노동자의 자녀, 여아에 대한 차별과 싸우기 위해, 특히 대중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포함하여 모든 필요한 혁신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를 포함하여 모든 외국인 아동에게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하도록 국내법, 특히 교육과 사회보장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다”고 하였음.

7. 제13, 14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견해(2007)

위원회는 “고용, 결혼, 주거, 교육 및 인간관계를 포함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주 노동자, 다민족간 출생 자녀 등의 외국인에 대하여 만연한 차별이 지속되는 데 대하여 여전히 우려한다”고 하면서 “이 협약의 제 2조와 제 5조에 따라 대한민국이 이주노동자와 다민족간 출생자녀를 포함한 외국인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철폐하며, 다른 민족 혹은 국적자가 이 조약의 제 5조에 명시된 권리를 동등하고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이 협약 제 2조와 제 5조에 따라 법률 제정을 포함한 추가 조치를 채택할 것

을 권고한다”고 하였음.

8.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4: 아동권리협약의 맥락에서의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2003)

빈곤, 무력충돌, 모든 형태의 부정의, 가정 파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불안정과 여
하한 형태의 이주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특히 취약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들은 청소년의
건강과 발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예방적 정책과 조치들에 대한 막대한 투
자를 통해 당사국들은 취약성과 위험성의 요소의 수준을 극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 당
사국들은 또한 자유로운 사회 내에서 청소년들이 조화롭게 발달할 수 있게 할 비용 효율
적 방법들을 사회에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접근권 개선방안 권고

주 문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접근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미등록 이주아동이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절차를 개선하고 의료비 지원범위 및 진료기관 수 확대, 안정적 예산 확보 등의 조치를 할 것, 미등록 이주아동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함되도록 「의료급여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인권위원회의 2010. 12. 30.자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권고’에 대한 법무부의 회신(외국인정책과-801, 2011. 4. 6. 시행) 내용 중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 공무원의 통보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보건복지부 및 공공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에게 널리 전파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I. 권고배경

국내 거주 미등록 이주아동은 국내에 미등록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하거나, 외국인 부모가 국내 입국 후 이동을 초청해 미등록이 되는 등의 경로로 발생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2010년 이주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거주 미등록 이주아동의 규모는 약 17,000명으로 추산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 한다) 제24조는 당사국이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아동은 『의료급여법』이나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공 및 일반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사적 공제회, 인권단체, 민간의료지원단체 등의 지원을 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재원이 충분하지 않아 사실상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위원회는 미등록 이주아동의 의료접근권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관련부처의 장에게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하였다.

II. 판단기준

『헌법』 제6조 및 제10조, 『아동권리협약』 제24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2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5조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였고, 『세계인권선언』 제25조를 참고하였다.(별지 참조)

Ⅲ. 판단

1. 외국인근로자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의 절차 관련

보건복지부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의거하여 2005년부터 미등록 이주민을 보건의료의 우선 제공대상자로 보고 일정범위 내에서 무료진료를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서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동 부처의 ‘외국인근로자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국비 70%와 지방비 30%를 재원으로 하여 총 48억원의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그 지원 대상자는 ①노숙인, ②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③국적취득 전 여성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④난민 및 그 자녀 등이고, 지원 범위는 입원 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에 한하며, 전국 77개 병원이 사업수행 의료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주아동이 지원사업의 의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총 다섯 단계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①외국인 부모와의 가족관계 확인, ②신원 확인(여권, 외국인등록증, 여행자증), ③국내체류기간 90일 경과, 질병의 국내 발병여부 확인, ④부모의 전·현직 근로여부 확인, ⑤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여부 확인 등이 해당 절차이다.

이상의 절차에서 네 번째 단계인 ‘부모의 전·현직 근로여부 확인’은 사업장에서 발행한 근로확인서 또는 미등록 이주아동 부모의 본인진술서로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미등록 이주아동의 부모가 근로를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고 있고, 또한 근로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전·현직 고용주가 근로확인을 해주지 않거나 자신의 미등록 상태가 노출되어 단속될 수 있음을 우려하는 미등록 이주아동 부모의 진술서 미제출로 미등록 이주아동이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2009년부터 지원사업의 예산집행률이 떨어지고 있고, 2009년에는 국비 예산 33억6천만원 중 21억8천만원 만이 집행되었다.

소외계층의 의료비 지원사업의 취지 및 인도주의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의료비 지원 여부가 그 부모의 근로 여부와 반드시 연관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지원사업에서 절차적 문제로 인해 미등록 이주아동이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부모의 전·현직 근로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면제 또는 간소화하고, 그 부모가 근로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범위를 일반 진료, 예방 접종, 건강검진, 의료정보 제공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및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진료기관의 수를 늘리고 의료비 지원사업을 위한 안정적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의료급여 실시 관련

「의료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국가재정으로 의료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부조제도이며, 동 법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제5조의2 외국인에 대한 특례에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은 제5조의2에서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를,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①대한민국 국민과 결혼 중인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나, ②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미등록 이주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어 「의료급여법」 상의 수급권자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 거주 미등록 이주아동은 대개의 경우 그 부모의 경제적·사회적 지위가 취약하여 국가가 이들을 공적 의료서비스의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

으며, 이는 체류자격의 적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 관리의 제공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아동권리협약」 제24조의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의료급여법」 상 수급권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미등록 이주아동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기초건강을 보호하고 사회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3. 출입국관리법 상 공무원의 통보의무 관련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출입국사범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도 진료를 담당한 이주아동의 불법체류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 조항으로 인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부모는 자녀가 아프거나 다친 경우에도 미등록 신분의 노출 및 단속을 우려하여 보건소 등 공공 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2010. 12. 30. 위원회의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개선방안 권고’에 대한 회신(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결정에 대한 의견, 외국 인정책과-801, 2011. 4. 6. 시행)에서, 교육공무원 외에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 보건소 의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에 대해서도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의 통보의무 적용을 유보 혹은 면제하도록 조치한다는 통보를 한 바 있으나, 해당 공문의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에는 아직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동권리협약」이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건강에 대한 권리의 측면에서 볼 때, 미등록 이주아동이 체류자격의 합법 여부와 무관하게, 그리고 미등록 신분의 노출 및 단속에 대한 우려 없이 필요한 경우 실질적으로 공공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 및 그 관련자에게 「출입국관리법」 상 공무원의 통보의무를 면제하도록 조치한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그 실효적 집행을 위해 관계자들에게 널리 공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무부는 2011. 4. 6.자 회신에 따른 공무원의 통보의무 면제 내용이 보건복지부 및 공공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에게 널리 전파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IV.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한다.

2011. 11. 10.

위원장 현 병 철

위원 장 향 숙

위원 김 영 혜

위원 홍 진 표

별지

판 단 기 준

1. 헌법

제6조(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외국인의 법적 지위)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4조 1. 당사국은 도달 가능한 최상의 건강수준을 향유하고,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 당사국은 건강관리지원의 이용에 관한 아동의 권리가 박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이 권리의 완전한 이행을 추구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가. 유아와 아동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

나. 기초건강관리의 발전에 중점을 두면서 모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지원과 건강관리의 제공을 보장하는 조치

다. 환경오염의 위협과 손해를 감안하면서, 기초건강관리 체계 안에서 무엇보다도 쉽게 이용가능한 기술의 적용과 충분한 영양식 및 깨끗한 음료수의 제공 등을 통하여 질병과 영양실조를 퇴치하기 위한 조치

라. 산모를 위하여 출산 전후의 적절한 건강관리를 보장하는 조치

마. 모든 사회구성원 특히 부모와 아동은 아동의 건강과 영양, 모유, 수유의 이익, 위생 및 환경정화 그리고 사고예방에 관한 기초 지식의 활용에 있어서 정보를 제공받고 교육을 받으며 지원을 받을 것을 확보하는 조치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25주년,
우리사회 모든 아동의 인권상황과
그 실천적 조치를 위한 정책방향

| 인 쇄 | 2014년 11월

| 발 행 | 2014년 11월

| 발행인 | **현 병 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침해조사과**

| 주 소 | (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
금세기B/D (을지로1가 16번지)

| 전 화 | (02) 2125-9922 | F A X | (02) 2125-0922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 ISBN | 978-89-6114-376-9 93330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재산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변경, 복제, 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